

KP 연구 2023-02

해외 저작권 보호 협력 및 글로벌 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Overseas Copyright Protection Cooperation
and Establishment of a Global Foundation)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명수

2023. 12.



한국저작권보호원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제 출 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정책연구 용역과제인 “해외 저작권 보호 협력 및 글로벌 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 연구수행기관명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 강명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동연구원 : 백승희(예명대학원대학교 교수)
- 공동연구원 : 박운정(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동연구원 : 김형지(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연구원 : 이에리(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 사무원)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정책연구 용역과제 수행사의 의견으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보고서 초록

관리번호	KP 연구 2023-02		연구기간	2023년 8월 31일 ~ 2023년 12월 15일	
정책과제명	(한글) 해외 저작권 보호 협력 및 글로벌 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영문) A Study on Overseas Copyright Protection Cooperation and Establishment of a Global Foundation				
연구책임자 (연구수행기관)	강명수	참여 연구원수	총 5 명	연구 용역비	40,000천원
요약				면수	126 면
<p>해외 저작권 보호 협력 전략 및 글로벌 환경 구축을 위해 다음의 내용들을 검토 및 정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저작권 침해 발생 사례 및 현황 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 기준,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 관련 사례 및 대응 현황 검토 - 해외 소재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사점(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및 저작권 보호 글로벌 기반 구축의 필요성) 도출 ■ 해외 저작권 보호 협력 전략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국제기구, (2)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 (3) 외국 권리자단체의 저작권 보호 업무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저작권보호원과의 협력방안을 기관별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 ■ 글로벌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지원전략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보호체계 전략을 적용하기 위한 지원 대상 국가 선정 기준 제시 - 우리나라와의 활발한 교류 및 디지털 경제 사회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 등을 고려하여 베트남을 지원사업 추진 대상 우선국으로 판단 - 해외에서의 K-콘텐츠 보호를 위한 효과적 방안으로, 저작권 분석시스템 수출 모델 사업 추진을 제안하며, 그 내용과 전략을 간략히 제시함 					
색인어	한글	저작권, 보호체계, 글로벌 기반구축, 협력전략			
	영어	Copyright, Protection System, Establishment of a Global Foundation, Cooperation strategy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내용	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제2장 해외 저작권 침해 발생 사례 및 현황	5
제1절 주요 저작권 침해 사례 및 대응 현황(최근 3년)	5
1. 해외에서 발생한 주요 저작권 침해 및 대응 사례	6
2. 해외 정부 및 기관의 저작권 보호 활동	13
제2절 해외 진출 유관기관 설문조사	20
1. 설문조사 개요	20
2. 설문조사 결과	23
제3절 현황 분석 및 시사점	26
제3장 해외 저작권 보호 협력 전략	30
제1절 국제기구	30
1.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기구의 현황 및 역할	30
2.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	41

제2절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	45
1. 주요국의 저작권 보호 관련 정부·공공기관 현황 및 전략	45
2.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	50
제3절 외국 권리자단체	52
1. 저작권 관련 현황 및 사례	52
2.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	62
제4장 글로벌 저작권 보호 지원 전략	66
제1절 해외 저작권 보호 지원 필요성	66
1. 글로벌 저작권 보호 기반 구축의 필요성	66
2. 글로벌 저작권 보호 기반 구축 사업의 필요성	69
3. 지식재산 관련 개발협력사업 우수 사례	74
제2절 추진 전략	78
1. 지원 대상국 선정	78
2. 후보국별 기반 구축 필요 사항	87
3. 사업 추진 내용 및 방안	95
제5장 결론	106
부록1 유관기관 대상 배포 설문지	109
부록2 지원대상 후보국 저작권 관련 일반현황	112
참고문헌	124

〈표 차례〉

〈표 2-1〉 브라질 정부 ‘Operation 404’ 작전 실행 현황	18
〈표 2-2〉 콘텐츠진흥원 해외 비즈니스센터 현황	20
〈표 2-3〉 IP-DESK 현황	20
〈표 2-4〉 해외문화홍보원 현황	21
〈표 2-5〉 외교부 재외공관 현황	21
〈표 2-6〉 설문지 구성	22
〈표 3-1〉 APEC 연도별 가입국 현황	33
〈표 3-2〉 국가별 신탁기금 규모	43
〈표 4-1〉 KOICA 문화분야 ODA 사업 현황	72
〈표 4-2〉 2022 전자상거래 매출 증가율 상위 5개국	81
〈표 4-3〉 베트남 국가의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 개요	99
〈표 4-4〉 디지털 국가 전환에 대한 베트남 정보통신부 발표 내용	100
〈표 4-5〉 KOICA 문화분야 ODA 사업 현황	101
〈표 4-6〉 KOICA 사업 개요안	104

〈그림 차례〉

[그림 3-1] WIPO 조직 구조	31
[그림 3-2] APEC에서 지식재산 관련 논의 계획	34
[그림 3-3] WIPO 조직도	38
[그림 4-1] 국가별 ISD, 불법 스트리밍 이용자 현황	70
[그림 4-2] 지식재산권 정보화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사업 프로세스	75
[그림 4-3] 국제 지식재산 나눔 프로세스	75
[그림 4-4] 특허청의 적정기술 보급사례	77
[그림 4-5] 해외 저작권 보호 협력 국가 선정 기준	79
[그림 4-6] 국가별 한국 문화콘텐츠 선호 현황	80
[그림 4-7] 해외 저작권 보호 필요성 국가	80
[그림 4-8] 해외 저작권 보호 협력 국가 후보국 도출	87
[그림 4-9] 베트남 IP-DESK 연간 추진실적	88
[그림 4-10] 2022 마닐라 IP-DESK 연간 추진실적	91
[그림 4-11] 뉴델리 IP-DESK 연간 추진실적	93
[그림 4-12] 침해대응 업무 시스템화 기술	98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배경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지적 창작에 대한 보호로서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간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권리 보호가 특정 국가의 지역적 범위로 한정되고 그 보호 범위와 기준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일반 재산권과는 달리 지식재산권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보호 범위와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는 소위 국제적 통일화 경향이 강하다. 이 점이 저작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가 중요한 이유이며, 국내 우수 콘텐츠나 저작물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K-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관심이 높아진 지금의 상황에서 지식재산권의 특수성에 기초한 장점과 문제점이 함께 부각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류 콘텐츠의 지속적인 해외 확산과 이에 따른 열풍으로 전 세계에서 K-문화의 소비가 상승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조사한 ‘한류 확산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5%가 한류 확산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답변하였다. 국민들은 지난 20년간 해외국가에서의 한류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생각했으며, 전문가들은 향후 해외에서의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¹⁾²⁾

그러나 K-콘텐츠의 국제적 확산은 국내 우수 콘텐츠의 해외에서의 저작권 등 침해 사례의 증가라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의 K-콘텐츠 불법유통 문제는 관련 기관 및 K-문화 내의 이슈³⁾에서 최근 3년간 상위 이슈로 꼽히고 있는 바, 해외국가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관한 예방이 필요하다.

1) 전국경제인연합회, “국민 과반(58.2%) 한류 열풍, 20여년 간 40배 이상 커졌다 인식”, 2023. 4. 17. 보도자료(https://www.fki.or.kr/main/news/statement_detail.do?bbs_id=00034958&category=ST).

2) 참고로 한국 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이 발표한 ‘2021 글로벌 한류 트렌드’에 따르면, 한류 콘텐츠의 소비가 한국제품 및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에 프랑스인의 43.8%가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Kotra, “K-콘텐츠의 프랑스 현지 반응과 비즈니스 기회”, 2021. 12. 27.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192476).

3) 한국저작권보호원, 「2022 저작권 보호 이슈 전망 보고서」, 2022. 1., 14면, 53면 참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에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내 우수 콘텐츠의 해외 침해 사례를 방지하고 권리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예를 들어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 중이며, 대표적인 사업이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지원' 사업과 '해외 진출기업 대상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 사업이다.⁴⁾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지원사업	해외 진출기업 대상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국내 콘텐츠 제작·유통사(중소기업 우선 지원) • 지원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온라인 공연 등 콘텐츠 분야 • 지원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터마킹, 포렌식마킹, DRM, 필터링 등 외부기술 도입·적용 또는 자체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 등 지원 • 지원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운금(90%) + 지원업체 부담금(10%)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조사	합법 유통 시장조사 불법 시장 및 침해현황 조사(오프라인)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온라인)
	저작물 보호전략 컨설팅	법제조사 및 대응전략 수립 저작물 수출계약서 검토 침해대응 기술 적용 방안 검토
	저작권 침해감정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침해대응 지원	경고장 발송
		소송(민형사, 행정)
		소송의 대응

또한, 2023년 3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의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발족하고 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⁵⁾

다만, 이와 같은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충분히 억제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 차원에서의 해외 저작권 보호 전략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조사 서비스의 일환으로 '해외 한류콘텐츠의 불법유통환경 및 침해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인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해외 현지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적 규제 및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응하고자 하는 국가의 저작권 현황에 대한 분석 후, 이에 따른 전략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별 제도와 상황이 상이하므로 대응하고자 하는 국가의 저작권 현

4)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410419).

5) 문화체육관광부, "K-콘텐츠 불법유통멈춰! 정부부처 똘똘 뭉친다", 2023. 3. 28. 보도자료 참고.

황에 대한 분석 후 이에 따른 전략 제시가 있어야 한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배경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첫째,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 발생 사례 및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해외 소재 유관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최근 3년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사례 및 대응 현황을 조사하였다. 구체적 사례로 중국 내 일본 망가사이트 운영자 검거, Z-라이브러리 분쟁 등 해외에서 발생한 주요 저작권 침해 및 대응 관련 사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비즈니스센터, KOTRA IP-DESK, 한국문화원, 외교부의 지재권 중점공관과 같은 해외 소재 유관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국내 저작권 침해 및 상담, 인지 등 현황을 설문조사의 형태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및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및 글로벌 기반 구축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둘째, 해외 저작권 보호 협력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 외국 권리자단체 및 해외진출 유관기관 등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유형별 기관의 저작권 관련 현황 및 사례를 조사하고, 그러한 현황 및 사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기관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저작권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면서 K-콘텐츠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국가를 선정하고, 그 국가를 대상으로 글로벌 저작권 보호 체계 구축 지원사업의 추진전략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국 저작권 보호 지원사업 추진의 목표와 방향성을 도출하고, 지원사업 우선 추진 대상국을 1개국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대상국을 중심으로 보호 체계 구축 지원 분야를 설정하고 지원 전략을 제시하였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에서의 국내 저작권 침해 현황을 파악하고, 그러한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 해외에서 발생한 주요 저작권 침해 및 대응 사례들에 대해 조사하고 그 내용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해외에 진출한 유관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 및 대응 현황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필요성 및 글로벌 저작권 보호 기반 구축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둘째, 해외 저작권 보호 협력 전략 제시를 위해 저작권 보호 관련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 외국 권리자단체, 해외진출 유관기관의 현황을 살펴보고, 각 기관들의 저작권 보호 관련 업무 현황 및 대응 사례들을 조사한다. 그리고 그러한 기관별 특징과 업무 내용을 토대로 한국저작권보호원과의 협력 방안들을 제시한다.

셋째, 글로벌 저작권 보호 기반 구축 사업의 필요성을 확인한 다음, 지식재산 관련 개발협력 사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협력 대상국 선정의 기준과 방향을 검토하고, 후보 대상국들의 저작권 관련 현황을 조사한 다음 이를 기초로 협력 대상국을 선정한다. 이후, 선정된 대상국과의 협력 전략으로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의 수출 모델을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프로젝트성 사업으로 준비하여 기술 전파를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해당 사업의 추진 방안과 주요 내용을 제시한다.

제2장 해외 저작권 침해 발생 사례 및 현황

제1절 주요 저작권 침해 사례 및 대응 현황(최근 3년)

각국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을 제정·시행하여 자국 내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국가별 저작권 보호 노력은 속지주의라는 원칙에 의해 자국의 영토를 벗어난 침해행위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전 세계가 글로벌화되면서, 무형의 지적 창작에 대한 권리인 지식재산권, 그중에서도 무방식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저작권은 더 이상 한 국가 내에서의 보호에 머무르지 않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한류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면서, 해외 현지에서의 저작권 보호가 주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국가들은 다양하다보니, 국가별 침해 현황이나 대응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K-콘텐츠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서는 먼저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 사례 및 대응 현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K-콘텐츠에 대한 해외에서의 침해 사례는 중국에서 자주 확인되었다. 네이버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넷플릭스의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은 ‘좀비교원(좀비학교)’라는 이름으로 중국 내 수십여 개의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해 불법 유통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한국 드라마가 타오바오(Taobao), 이베이(eBay) 등에서 클라우드를 통한 다운로드나 불법복제 DVD 판매 등으로 불법 유통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⁶⁾

이하에서는 최근 해외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저작권 침해 및 주요 대응 사례들을 살펴본다.

6) 백지영 기자, “K-좀비 열풍 ‘지금 우리 학교는’…또 중서 불법 유통 골머리”, 2022. 2. 4. 디지털데일리(<https://m.ddaily.co.kr/page/view/2022020413024337392>); Choi Moon-hee, “Copyright Infringement in China Becoming Increasingly Blatant”, 2022. 2. 9. Business Korea(<https://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238>).

1. 해외에서 발생한 주요 저작권 침해 및 대응 사례

가. 중국 내 일본 망가사이트 운영자 검거 사례

2023년 3월 28일 NHK에 따르면 일본의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인 CODA는 중국을 거점으로 운영하는 불법 해적판 사이트 'B9GOOD'에 대한 수사를 현지 공안당국에 요청했고 30대 남녀 4명이 검거되었다. 2022년에 중국 행정당국이 만화 해적판 사이트 운영자에게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있으나, 공안당국이 해적판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동 불법사이트는 2008년에 개설된 이후 일본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영화, 드라마 등 다수의 작품을 무단으로 배포했으며, 지난 2월까지 2년간의 접속자 수가 3억이 넘고, 많은 달에는 한 달에 약 1,580만에 달한다. CODA는 해당 사이트 측에 수차례 삭제요청을 했지만, 응답이 없자 사이버보안 전문가의 협조를 구해 조사한 결과 중국을 거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CODA가 그 해당 정보를 중국 당국에 제공했다.⁷⁾

한편, 2022년에도 일본 망가(漫画) 해적판 사이트를 운영하는 중국인이 충칭에서 적발된 사례 보도가 있었다. 즉, 2022년 7월 14일 일본의 출판사 슈에이샤(集英社)는 중국 충칭(重慶)시 당국이 일본인을 대상으로 망가 해적판 사이트 '망가뱅크'를 운영한 충칭시 거주 남성을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일본의 망가 작품을 스트리밍 형식으로 공짜로 볼 수 있는 해적판 사이트로, 운영된 2년간 피해액은 판매가격 환산으로 2,082억엔 상당으로 추산된다. 슈에이샤, 카도카와, 고단샤, 쇼가쿠칸 등 4개 출판사는 CODA의 중국사무소에 대처를 요청하였고, CODA의 행정처분 요청을 중국 당국이 받아들여 충칭시 문화시장종합집행총대가 2022년 6월 15일 해당 사이트 운영자를 정보네트워크전달권 보호조례 위반 혐의로 검거, 남성에 대해 범죄수익금 몰수와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⁸⁾

7) 신하림 기자, “中 공안당국, 日 요청에 해적판 사이트 운영자 4명 검거”, 2023. 3. 28. JK DAILY (<https://www.jk-daily.co.kr/news/view.php?bIdx=17430&cIdx=61>).

8) 야마카와 후유코 기자/ [번역] 이경, “[INNA] 日 망가 해적판 사이트 운영 中國人, 충칭에서 적발”, 2022. 7. 15. Aju Korea Daily(<https://www.ajudaily.com/view/20220715114149062>).

나. 전자도서 플랫폼 Z-Library에 대한 프랑스 및 미국의 침해 대응

2009년부터 운영되어 온 대규모 온라인 불법 도서 플랫폼인 Z-Library는 천만 권 이상으로 추정되는 E-Book을 무단으로 업로드하고 공중에 배포하여 작가 및 출판계에서 공적으로 여겨져 왔는데, 이에 대해 프랑스 파리 법원이 지난 2022년 8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5개 회사를 상대로 Z-Library 차단 명령을 내렸다.⁹⁾

그리고 Z-Library 차단 명령에 대한 프랑스 법원의 조치가 있는 이후 2022년 11월 3일 아르헨티나에서 Z-Library를 통한 러시아 국적 2명이 미국 FBI의 요청에 따라 체포되었다. 이들은 미국의 대배심을 통해 저작권침해죄 등 총 5가지 혐의로 기소가 되었으며, FBI는 그 이외에도 약 240개의 Z-Library 관련 도메인도 압수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주로 저작권자들이 저작권법(미국의 경우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MCA)에 따른 게시중단 요청(takedown notice)을 하면서 이뤄지는 조치들인데, 이러한 시도는 프랑스나 미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인도에서도 텍스맨 퍼블리싱 컴퍼니(Taxmann publishing company)는 Z-Library를 상대로 침해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하였고, Z-Library가 이에 불응하자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해 법원이 2022년 8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를 상대로 주요 도메인 중 일부를 차단하도록 명령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Z-Library의 도메인에 대하여 2021년 3월경 하버드 비즈니스 퍼블리싱(Harvard Business Publishing)의 침해 신고로 인해 중국 등록대행자(registrar)가 도메인 비활성화(clienthold) 조치가 있기도 하였다.¹⁰⁾

대규모 저작권 침해 사이트인 Z-Library에 대해 프랑스 법원에서의 차단 명령과 더불어 미국까지 FBI의 수사와 적극적인 기소를 타국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바 온라인 시대의 침해에 대해서는 국수주의적인 대응보다는 국가 간의 공조와 일관된 조치가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¹¹⁾

9) 김형지·김애리, “프랑스 파리 법원의 전자도서 플랫폼 Z-Library에 대한 차단 명령 등 저작권 침해 대응 동향”,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한국저작권보호원, 2022. 11. 30., 1면 이하.

10) 김형지·박운정, “미국의 전자도서 플랫폼 Z-Library에 대한 저작권 침해 대응 동향”,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한국저작권보호원, 2023. 1. 31., 1면, 6면.

11) 김형지·박운정, 각주 10, 8면.

다. 중국에서의 한국 저작권 침해 주요 사례 및 대응

먼저, 중국의 음반 제작사가 한국 음원을 무단으로 유튜브에 먼저 등록해 피해를 준 사례가 있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는 2021년 5월 18일 "정당한 권한이 없는 중국어 번안곡의 음반 제작사가 유튜브에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를 먼저 등록해 K팝 원곡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당시 아이유, 브라운아이즈 등의 원곡 영상에 리메이크곡을 등록한 중국 음반사들이 원작자 대신에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과 중국 음반사들이 한국 가수 곡을 번안해 유튜브에 올리고 원곡인 것처럼 등록한 상황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권리사에 안내하여 저작권자 정보가 정정되도록 유도하였다.¹²⁾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중국사무소를 통해 판권보호중심(CPCC) 등과 협력하여 저작권 침해 게시물 삭제 등 현지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도, 중국 내 저작권 집중단속 캠페인인 '검망행동'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신고하여 접속차단을 유도하고 있다.

방송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는 중국 내 60여 개 불법사이트에서 유통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 정부 차원에서 중국과 협력하여 대응한 바 있다. 이처럼, 외교부 또한 중국에서 한국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데 대하여 재외공관, 관계부처, 유관기관, 현지 당국이 협업하여 우리 기업의 저작권 침해 정보 모니터링, 침해 사례 접수, 침해 대응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주중대사관, 주상하이총영사관 등 중국 내 공관 6곳을 지식재산권 보호 중점공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중국 측과 협력하여 중국에서의 한국 콘텐츠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고 있다. 중국 측도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양국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하고 나름의 조치도 취하지만,

12) 김준역 기자, "문체부, 중국 음반사의 유튜브 저작권 도용에 적극 대응키로", 2021. 5. 21. 연합뉴스 기사(<https://www.yna.co.kr/view/AKR20210521032900005?input=1195m>).

근절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국에서의 한국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사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콘텐츠가 중국 법원에서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지를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 중국 법원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으로 지난 2021년 11월, 한국 유명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상표를 무단 도용한 중국 현지업체에 대하여 상표를 무단 도용하여 출원·등록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거둔 중국 현지 공장과 업자에게 수익금 전액 뿐만 아니라 변호사 비용까지 피해 한국 회사에게 전액 배상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¹³⁾ 재판부는 한국 완구기업인 A사가 중국 현지업체 B사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방지 및 부정경쟁 분쟁소송에서 원고전부승소 판결을 하였다. 당시 재판부는 중국 경영자(공장주)와 개인공사업자(자영업자)에게 공동 권리침해행위를 인정하면서, 1) 저작권 침해행위 즉시 중단, 2) 유사 캐릭터 및 제품 판매 즉시 중지, 3) 사과성명 발표, 4) 1억 20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하며,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도 합리적 지출로 인정하여 전액 배상하라고 명령하였다.¹⁴⁾

라. 태국에서의 불법 게임 사설서버 피해 대응¹⁵⁾

국내 게임회사 '제페토'는 지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불법 게임 서버 관련 피해 구제 신고를 접수하였다. 제페토는 '포인트 블랭크', '배틀 카니발' 등의 게임을 제작한 국내 개발사로, 불법 사설 서버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태국 내에서는 게임 지식재산권 대응 사례가 적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다.

이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태국사무소를 통하여 해당 게임의 불법 사설서버를 확인하고 태국지식재산국(DIP,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에 사법조치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제페토의 소 제기 절차를 지원하였다. 그 결과 불법 사설서버 2개를 폐쇄하였으며, 유사 침해 사례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

13)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 중급인민법원 민사재판부, 2020위01지민초1281.

14) 강한 기자, “‘오징어 게임’, ‘달고나 세트’ 등 중국 무단도용 막을 길 열렸다”, 2021. 11. 29. 법률신문 기사(<https://www.lawtimes.co.kr/news/174527?serial=174527&kind=AN>).

15) 박주연 기자, “저작권보호원, 제페토 저작권 침해 태국 불법게임서버 폐쇄”, 2022. 9. 14. 뉴스스 기사(<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417163?sid=103>).

하기 위해 2022년 10월 태국 지식재산국, 경제범죄억제경찰(ECD, Economic Crimes Suppression), 법원 등 태국 정부 기관 관계자를 국내에 초청해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마. 필리핀 당국과의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을 위한 협력 강화 사례

필리핀은 방송, 영화, 웹툰 등 한국의 IP 콘텐츠의 불법유통이 가장 많이 적발된 국가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콘텐츠 유형별 해외 저작권 침해 현황’ 조사에 따라 K-콘텐츠 불법유통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로 밝혀진 바 있다.¹⁶⁾

이와 관련하여 2022년 11월 25일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양국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필리핀 판매체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필리핀 판매체위원회는 컴퓨터 저장장치(DVD, 하드디스크, 메모리칩 등)의 제작과 유통 규제를 목적으로 1985년 10월 설립된 필리핀 대통령실 소속기관이며, 필리핀 판매체법에 의거하여 불법 복제·유통되는 모든 형태의 저장장치를 단속, 유통업자 체포 및 압수물품 파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판매체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1) 저작권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 현지 유통 불법 셋톱박스 단속 등에 상호 협력을 해나갈 방침이며, 판매체위원회가 세관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만큼, 필리핀 내 불법 셋톱박스의 유통망 뿐 아니라 필리핀으로 수입·통관되는 셋톱박스 단속을 진행하여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보다 내실있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¹⁷⁾

한편, 2023년 11월에는 필리핀 지식재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필리핀 내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등 저작권 침해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필리핀

16)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산 IP의 해외 불법 유통 적발 건수는 총 56만1029건이다. 지난 2020년 8만3733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2021년 15만3152건, 2022년 18만4025건으로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 1~8월 상반기에 적발된 사례만 14만119건으로, 2020년 적발 건수의 2배 가까이 기록했는데, 국가별로는 필리핀에서 방송·영화, 웹툰 등 국산 IP 콘텐츠 불법유통이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현 기자, “K-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매년 2배씩 증가…필리핀·베트남서 기승”, 2023. 9. 28. 뉴시스 기사(https://m.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30927_0002467528).

17)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필리핀 저작권 당국과 온/오프라인 침해 공동대응 강화한다”, 2022. 11. 28. 자 한국저작권보호원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kcopastory/222940468226>)

지식재산청은 필리핀의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을 전담하는 필리핀 통상산업부 소속 기관으로, 최근 저작권 침해사이트 제제를 위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와 접속차단 협력절차를 마련한 바 있다.

바. 미국 법원의 소환장 발부를 통한 불법 공유사이트 운영 중단 사례¹⁸⁾

네이버웹툰은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따라 대형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에 360여 개 불법 사이트 운영자의 개인정보 제출을 구하는 소환장(Subpoena) 발부를 신청해, 자사 웹툰 80여개를 무단으로 게시한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들의 활동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소환장을 송달받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피의자의 이메일부터 주소, 결제 정보까지 상세한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 검거에 꼭 필요한 정보라 할 수 있다.

2023년 7월 소환장 발부 이후 3개월 만에 아쿠○○○, 플레○○○○ 등 150여 개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가 완전히 삭제되거나 운영을 중단했다. 트래픽 통계사이트 '시밀러웹'에 따르면 이들 150개 웹사이트의 연간 이용자 방문 트래픽은 약 25억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네이버웹툰은 소환장을 통해 확보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하고 추적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는 업계의 오래된 골칫거리로 꼽힌다. 네이버웹툰은 올 5월부터 불법 웹툰 사이트에 대응하는 '웨이브' 프로젝트도 별도로 운영 중이다. 분기별로 규모가 큰 해외 불법 웹툰 사이트를 선별한 뒤 이를 도메인 관리 업체, 호스팅 제공 업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 등에 집중적으로 신고하는 방식이다.

18) 변지희 기자, “네이버웹툰, 불법 사이트와 전쟁…해외 150개 사이트 중단시켜”, 2023. 11. 2. 조선비즈 기사(<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3/11/02/4G3PUK7X7ZCIVLGPVD742RNTUM/>); Andy Maxwell, “Naver Webtoon: ‘150 Pirate Sites Shut Down’ After Cloudflare DMCA Subpoena”, 2023. 11. 6. Torrentfreak(<https://torrentfreak.com/naver-webtoon-150-pirate-sites-shut-down-after-cloudflare-dmca-subpoena-231106/>).

사. 인도네시아에서의 불법 IPTV 서비스 대응 사례19)

인도네시아에서 IP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이 사건 피의자들은 2015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정당한 저작권 계약 없이 국내외 7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영상파일 10만 8000여개를 인도네시아 서버로 불법 송출하여 현지 교민들에게 유료로 제공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의자들은 국내 송출지 관리운영책 A씨가 국내 케이블TV 40대를 가입해 실시간 방송 송출 장비와 연결하고 영상파일 컴퓨터 원격 접속을 설정하고, 해외 총책을 맡은 B씨가 해외에서 원격 접속하여 실시간 방송과 VOD 형식의 영상물을 인도네시아 현지 교민들에게 불법 송출하였으며, 공범인 C씨가 셋톱박스용 어플을 개발하고 서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콘텐츠 불법 송출을 하였다. 이들의 범행으로 입은 피해액은 업계 추정으로 160억 원 이상이다.

MBC 등 방송사가 2023년 5월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에, 7월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산경찰청과 한국-인터폴-인니 간 국제공조 회의를 진행하고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협력하여 피의자의 범행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수사 단서를 확보하였다. 특히 2023년 10월말 국내외 동시 압수수색 후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 과학수사대,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인터폴 불법복제 대응 전담팀, 한국저작권보호원 과학수사지원부가 합동으로 참여하였다.

이번 검거 성과는 국제 수사공조를 위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 사업(I-SOP)’의 일환으로 2021년 4월에 맺은 업무협약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이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한편, 2023년 6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도네시아 수사기관을 초청해 ‘제3차 국제 온라인 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진행하고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19) 신재우 기자, “문체부, 인도네시아 저작권 침해 국제 사범 검거…"과학수사 강화"”, 2023. 12. 4. 뉴스시스 기사(<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246187?sid=103>).

2. 해외 정부 및 기관의 저작권 보호 활동

가. 유럽연합²⁰⁾

EU는 양자 및 지역무역협정(Bilateral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²¹⁾ 시, 협정 분야에 지식재산권 관련 장(chapters)을 두고 이에 대해 협상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쓰고 있고, 이러한 무역 협상을 통해 적절한 지식재산권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IP 중소기업 헬프데스크(IP SME Helpdesk)를 각국에 설립하고 EU 기업 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을 지원하며, 지식재산 관련 교육, 자료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한다.²²⁾

한편, 유럽집행위원회는 중국, 한국, 일본, 영국, 미국 등과 같은 나라들과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이슈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며(IP Dialogues와 IP Working Groups)²³⁾, 제3국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을 강화하는 여러 EU 지원 기술협력 프로그램(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s)²⁴⁾을 시행하고 있다. 후자의 기술협력 프로그램에는 중국,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중점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관련 EU와의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IP 핵심협력 프로그램(IP-Key cooperation programmes),²⁵⁾ ASEAN 국가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의 개선을 지원하는 아세안 지역통합지원(ASEAN Regional Integration Support, ARISE Plus), 라틴아메리카, 특히 메르코수르(MERCOSUR)국가에서 지식재산권의 사용 및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세미나 개최 등의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

20) EUIPO,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in the European Union: Films, Music, Publications, Software and TV (2017-2022), 2023. 9.(이하 'EUIPO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보고서'). 보고서 개요는 이나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EU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관한 보고서' 발표", 한국저작권보호원, 2023. 12. 28.(https://www.kcopa.or.kr/lay1/bbs/S1T237C330/A/54/view.do?article_seq=5183&cpage=1&rows=10&condition=&keyword=) 참조.

21) European Commission, Report on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ird countries, 2023. 5. 17.(이하 'European Commission 보고서'), p/12.

22) European Commission, China IP SME Helpdesk. (https://intellectual-property-helpdesk.ec.europa.eu/regional-helpdesks/china-ip-sme-helpdesk_en).

23) European Commission 보고서, p.13.

24) European Commission 보고서, p.13-14.

25) 유럽연합지식재산청이 함께 예산을 지원하여, 각 지역별로 4백만 유로 이상을 투자하였다.

램(AL-INVEST Verde Programme),²⁶⁾ 국제 지식재산권 합의 증진에 힘쓰며 아프리카 IP 중소기업 헬프데스크(Africa IP SME Helpdesk)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을 지원하는 아프리카 지식재산권 및 혁신 프로그램(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Innovation in Africa, AfrIPI)이 있다.

한편 유럽집행위원회(EC)는 유럽시청각전망기구(European Audiovisual Observatory)와 협력하여 TV 및 주문형(on-demand) 시청각저작물 서비스 회사 데이터베이스²⁷⁾를 마련하였다. 또한, 유럽집행위원회와 유럽시청각전망기구는 MOU를 체결하여 관련 분야의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판례나 입법동향 등의 정보 교환이나 공동출판물 발간 등에 힘쓰고 있다.²⁸⁾ 최근 유럽시청각전망기구가 유럽연합지식재산청에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 유럽 전반적으로 합법적인 시청각저작물 제공 플랫폼의 증가 추세가 관찰된다.²⁹⁾

나. 미국³⁰⁾

미국에서는 디지털 불법복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2년 저작권법 선진화 법안(SMART 저작권법: Strengthening Measures to Advance Rights Technologies Copyright Act of 2022)이 발의되었다. 이 안은 의회 도서관장과 다른 연방정부 기관들이 민간 부문을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과 연대하여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보호 절차와 기술적 조치를 지정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불법복제에 대하여 공적 부문과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³¹⁾

26) AL-INVEST Verde, "INAPI and AL-INVEST Verde DPI announce alliance to boost innovation and industrial property in Chile", 2023. 11. 29.(https://alinvest-verde.eu/en_gb/inapi-y-alinvestdpi-anuncian-alianca-para-impulsar-innovacion-y-propiedad-intelectual/)

27) 유럽 41개 지역의 TV 및 주문형 시청각저작물 서비스에 대한 무료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이다(EU IPO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보고서, p.23).

28) EUIPO, Annual Report 2017(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contentPdfs/about_euipo/annual_report/ar_2017_annex_02_ext_en.pdf), p.52.

29) EUIPO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보고서, p.23-27.

30) 이하의 미국, 싱가포르, 프랑스, 중국, 브라질, 베트남 국가의 현황 내용은 미국 글로벌 혁신정책 센터(GIPC) 및 EU 집행위원회 보고서에 나타난 국가별 IP 침해 동향 및 대응 사례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임. 보고서 원문은 2023 International IP Index | U.S. Chamber of Commerce(uschamber.com) 및 Commission releases its Report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ird Countries - European Commission(europa.eu) 참고.

2022년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사안에서 불법복제 콘텐츠를 게시한 자들(피고들)과 그 콘텐츠가 게시된 인터넷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금지명령을 내려, 인터넷사업자들에게 저작권 침해 콘텐츠뿐 아니라, 피고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거나 미래에 사용될 웹사이트들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였다.³²⁾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세계지식재산센터(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GIPC) 보고서는 이러한 금지명령의 사용이 권리보유자들이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하였다.³³⁾

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미국 세계지식재산센터(GIPC) 보고서의 저작권 지수에 있어 미국에 이은 2위를 차지하고 있다.³⁴⁾ 2021년 개정 저작권법에는 셋톱박스의 판매와 공급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³⁵⁾ 특히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자료에 불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물리적인 장치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작, 판매 또는 공급하는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50조).³⁶⁾ 나아가 제150조의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하는 자는 10만~20만 싱가포르 달러³⁷⁾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였다.³⁸⁾

라. 프랑스

2009년 프랑스 정부는 새로운 저작권 침해 단속법을 제정하였고, 저작권 침해를 줄이는 데 있어 지속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는 저작권 집행 기관인 HADOPI³⁹⁾를 창설하였다. 이후 2022년 프랑스 정부는 HADOPI와 고등시청각자

31) International IP Index (11th ed.), 2023, U.S. Chamber of Commerce 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 p.395(uschamber.com/ipindex).

32) International IP Index, 각주 31, p.395(*United King Film Distribution Ltd. v. Does 1-10*, No. 21 CIV. 11024 (KPF), 2022 WL 1751190 (S.D.N.Y. May 31, 2022)).

33) International IP Index, 각주 31, p.395.

34) International IP Index, 각주 31, p.62.

35) International IP Index, 각주 31, p.327.

36) International IP Index, 각주 31, p.330.

37) USD 70,000-100,000.

38) International IP Index, 각주 31, p.330.

료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를 합병하여 새로운 저작권 규제 기구인 시청각 및 디지털 통신 규제기관(Autorité de régulation de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numérique, ARCOM)을 창설하였다. 새로 창설된 기관은 미러(mirror) 사이트에 대한 더욱 빠른 대응, 지속적으로 침해를 반복하는 호스트와 웹사이트에 대한 블랙리스트 개설, 법원의 금지명령에 의한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금지처분 집행, 그리고 스포츠 생중계 침해에 대한 신속대응 방안 마련 등의 권한을 부여받았다.⁴⁰⁾

마. 중국

중국 국가저작권국⁴¹⁾은 '검망행동'을 통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온라인 음악 제공업체들에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음악을 삭제하도록 권고하여 200만개가 넘는 파일을 삭제하는 등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2018년에는 국가저작권국의 주도로 15개의 비디오 공유 온라인 플랫폼의 단속을 강화하고 57만개 이상의 저작권 침해 비디오에 대한 접근(일부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었음)을 금지하기도 하였다.⁴²⁾

그 외에도 중국 시청각저작권협회는 노래방 업장에서 6천개 이상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음악의 재생을 금지하였고, 광저우 법원은 덴마크의 레고 사(社)가 중국 국내 기업 4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침해자에게 65만 달러의 손해 배상액 지급을 명하는 등 다방면에서 저작권 강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유럽연합과도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해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⁴³⁾ 유럽연합-중국 대담(EU-China Dialogue)을 통한 정책 토론 등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앞서 언급된 EU의 기술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IP Key China

39) Haute Autorité pour la Diffusion des Oe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

40) International IP Index, 각주 31, p.191.

41) National Copyright Administration(NCAC).

42)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570,000 short videos involving copyright infringement removed", 2018. 11. 8.(https://english.www.gov.cn/state_council/ministries/2018/11/08/content_281476381007412.htm).

43) European Commission 보고서, p.24.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의 IPR 보호 및 집행을 개선하고 EU와 협력을 강화하며, 유럽연합-중국 공동 세관 협력 위원회(EU-China Joint Customs Cooperation Committee)에서는 세관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행동 방침(EU-China Customs IPR Action Plan)을 관리하는 위원회를 2009년 설립하였다.

바. 브라질

현재 브라질의 저작권법은 기본적인 독점적 권리와 보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조항들만을 포함하고 있는 상태로, 브라질은 아직 총체적이고 제도화된 고지 후 삭제(notice and takedown)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지 않으며, 인터넷사업자와 권리보유자 간의 협조가 있기도 했지만, 단발적인 예시들에 그쳐 온 것으로 분석된다.⁴⁴⁾

또한 브라질에서 인터넷사업자들은 해당 콘텐츠가 저작권 침해라는 명확한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만 해당 콘텐츠를 차단할 의무가 생기는데, 브라질의 사법시스템은 처리 기간이 길고 비용이 크기 때문에, 법원 명령의 필요성은 실용적인 침해 콘텐츠 제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큰 장애물이 된다. 이에 더하여 형법상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로 체포된 이들은 대개 기소유예나 기소중지로 풀려나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고 있어 브라질은 라틴아메리카의 저작권 침해 허브로 기능하고 있다.⁴⁵⁾

이에 브라질 정부는 저작권 권리자 단체들과 협력 하여 불법복제 근절을 위하여 일명 'Operation 404' 작전을 수행해 왔는데, 2019년부터 6차례의 작전이 실행되었다.

44) International IP Index, 각주 31, p.131.

45) International IP Index, 각주 31, p.131-132.

〈표 2-1〉 브라질 정부 ‘Operation 404’ 작전 실행 현황

작전	성과
2019년 제1차 작전	법무부 등의 주도하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미국에서 호스트되고 있는 210개 웹사이트 차단
2020년 제2차 작전	미국 국토안보부, 런던 경찰, 저작권 권리단체와 협력 하에 250개 웹사이트 차단
2021년 제3차 작전	334개 웹사이트 및 94개 어플리케이션 차단
2022년 제4차 작전	ACE 등 권리단체와 협력 하에 영국의 3개 사이트 및 미국의 6개 사이트 차단
2023년 제5차 작전	영국 Police Intellectual Property Crime Unit, MPA 라틴 아메리카 지부, Entertainment Software Alliance (ESA) 등과 협력 하에 200개 스트리밍 및 게임 웹사이트, 128개 도메인, 63개 음악 어플리케이션 차단 및 관련 인물 11명 체포
2023년 제6차 작전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 미국, 영국 간 협력을 통해 606개 사이트 및 18개 어플리케이션 차단.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 2019년 이래 Operation 404로 인해 총 1,974개의 웹사이트와 783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차단되었다고 한다.⁴⁶⁾

이에 더하여 브라질 국가통신국(ANATEL, Agência Nacional de telecomunicacoes)도 저작권 침해 단속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브라질 국립영화청(ANCINE, Agência Nacional do Cinema)과 함께 불법복제물 배포의 방법이나 그에 사용된 기기의 기술적 분석을 위한 Anti-Piracy Laboratory를 발족하였다.⁴⁷⁾ 또한 ANATEL은 ANCINE과 2023년 3월 기술협력협약(Technical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하여, ANCINE이 불법복제 서비스를 추적 및 감시하면 이를 바

46) Andy Maxwell, “Operation 404: 11 Arrests, Hundreds of Pirate Sites, Apps & Domain s Blocked”, 2023. 3. 15. Torrentfreak(<https://torrentfreak.com/operation-404-11-arrest-s-hundreds-of-pirate-sites-apps-domains-blocked-230315/>)

47) Andy Maxwell, “Brazil Regulator Claims ‘80% of Pirate TV Boxes’ Were Blocked Last Week”, 2023. 10. 30. Torrentfreak (<https://torrentfreak.com/brazil-regulator-claims-80-of-pirate-tv-boxes-were-blocked-last-week-231030/>)

탕으로 ANATEL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사이트 차단 지침을 내리는 등의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였다.⁴⁸⁾

사. 베트남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 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의 국제지식재산지수(International IP Index)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저작권 관련 규제 체계는 아직 빈틈이 많으며, 단속 또한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⁴⁹⁾ 2012년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인터넷 및 전기통신망상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보호에 대한 중개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공동해석⁵⁰⁾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다양한 인터넷사업자들이 저작권 침해 이용자에게 대한 경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터넷사업자들의 2차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이 존재하지 않으며, 인터넷사업자들과 중개업체들이 온라인 불법복제행위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할 동기부여가 제한된 상태이다.⁵¹⁾

온라인상 침해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행정적 또는 사법적 체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문화스포츠관광부가 일부 악명 높은 웹사이트에 대한 조치를 취한 일부 사례가 있었지만, 이는 체계화되거나 명확한 절차에 의거한 것이 아니므로, 효과적인 온라인상 저작권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⁵²⁾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에 지식재산권법을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협동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하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인터넷 중개사업자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를 확정하였다. 이 개정 지식재산권법에는 TPM과 DRM을 강화하는 조항들 또한 포함되어 있다.

48) Andy Maxwell, 각주 47.

49) International IP Index, 각주 31, p.403.

50) The 2012 Joint Circular on Stipulations on the Responsibilities for Intermediary Service Providers in the Protection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on the Internet and Telecommunications Networks.

51) International IP Index, 각주 31, p.403-404.

52) International IP Index, 각주 31, p.404.

제2절 해외 진출 유관기관 설문조사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 및 대응 현황을 파악하고, 기반구축 지원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소재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현황 및 수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해외 소재 유관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 및 침해 현황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설문조사 결과는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로부터 서면자문을 받았다.

1. 설문조사 개요

가. 설문조사의 대상

설문조사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9개국 10개 해외 비즈니스센터, IP-DESK의 11개국 17개소, 해외문화홍보원의 30개국 35개소의 재외문화원과 5개국 5개소 문화홍보관, 외교부 재외공관 중 지재권 담당 재외공관 23개소 등 총 90개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 2-2〉 콘텐츠진흥원 해외 비즈니스센터 현황

전체	국가
9개국 10개 센터(또는 마케너)	미국, 중국(2: 북경, 심천), 일본, 프랑스, 인도네시아, 베트남, UAE, 태국, 러시아

〈표 2-3〉 IP-DESK 현황

전체	국가
11개국 17개소	중국(6: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심양, 홍콩), 베트남(1), 태국(1), 미국(2: LA, 뉴욕), 독일(1), 일본(1), 인도(1), 인도네시아(1), 필리핀(1), 러시아(1), 멕시코(1)

〈표 2-4〉 해외문화홍보원 현황

구분	지역	국가
재외문화원 (30개국 35개소)	아시아/태평양 (9개국, 12개소)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2: 동경, 오사카), 태국, 중국(3: 북경, 상해, 홍콩), 카자흐스탄, 필리핀, 호주
	미주 (5개국, 7개소)	미국(3: 뉴욕, LA, 워싱턴),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유럽 (11개국, 11개소)	독일, 러시아,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중동/아프리카 (5개국, 5개소)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튀르키예공화국
문화홍보관 (7개국 7개소)	아시아/태평양 (4개국, 4개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동경), 중국(북경)
	미주 (1개국, 1개소)	미국(뉴욕)
	유럽 (1개국, 1개소)	체코
	중동/아프리카 (1개국, 1개소)	이란

〈표 2-5〉 외교부 재외공관 현황

구분	지역	소재지
대사관	아주지역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주일본국 대한민국 대사관
		주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주필리핀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미주지역	주멕시코합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주미합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유럽지역	주러시아연방 대한민국 대사관
		주벨기에왕국대한민국 대사관 겸 주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중동지역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 대한민국 대사관
		주아랍에미리트연합국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		주제네바유엔 및 국제기구 대한민국 대표부
총영사관	아주지역	주광저우 대한민국 총영사관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주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
		주우한 대한민국 총영사관
		주청두 대한민국 총영사관
		주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미주지역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출장소		주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 다렌 출장소

나. 설문조사 내용

위의 각 유관기관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 문항을 구성하여 각 유관기관들에게 구글폼 및 워드파일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문의 주요 내용은 해외에서의 한국 콘텐츠 저작권 침해 인지 사례 및 수요조사와 현지에서 필요한 저작권 보호 사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가능 분야로 구성하였다.

〈표 2-6〉 설문지 구성

구분	조사항목
해외에서의 한국콘텐츠/저작권 침해 인지 및 수요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침해사례 인지 경험 및 경로 - 저작권 침해 관련 상담이나 민원대응 경험 - 해당국에서 이용 가능한 합법/불법 현지 사이트 및 플랫폼 - 해당국에서의 저작권 침해 발생 이유

<p>필요 저작권 보호 사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가능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보호원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 - 해당국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협력사항 - 저작권보호원과 연계 가능한 사업이나 행사
--	---

다. 설문조사의 진행 경과

콘텐츠진흥원 해외비즈니스센터 10개 센터, IP-DESK 11개국 17개소 기관, 해외 문화홍보원 40개 기관(30개국 35개소의 재외문화원과 5개국 5개소 문화홍보관), 외교부 재외공관 중 지재권 담당 재외공관 23개소 등 총 90개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 18일(수)부터 2023년 10월 23일(월)까지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023년 10월 30일(월)부터 2023년 11월 3일(금)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1차 및 2차 설문조사 과정에서 메일이 전달되지 않은 5건을 제외한 총 85개 유관기관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총 응답건수는 13건이었다(응답률 13/85 = 15.3%).

2. 설문조사 결과

가. 저작권 침해사례 인지 여부

한국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례를 인지한 경험률은 46.1%로 나타났다. 저작권 침해 사례를 인지한 기관을 대상으로 인지 경로에 대해 질의한 결과 상담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사례를 인지한 경우가 44.4%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동료나 지인 등을 통해 침해 사례를 인지하거나 자체조사, 저작권자 또는 신탁단체 등 권리자의 보호요청에 의한 경우, 문체부 및 해외문화홍보원의 교육, 사업추진관련 업계와의 계약서 등을 통해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저작권 침해 상담 및 민원 대응 경험(최근 3년)

최근 3년 이내에 저작권 침해 관련 상담이나 민원 대응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조사에 응답한 기관 중 30.8%로 나타났으며, 23.1%가 최근 3년간 1-5건의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 상담이나 민원을 진행하였다. 또한, 특정 국가의 한 기관에서는 최근 3년간 50건 이상의 침해 사례에 대응한 것으로 나타남바, 해당 지역에서의 우리나라 저작권 침해가 다수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저작권 침해 상담 및 대응 콘텐츠 분야

침해 상담 및 민원대응 경험이 있는 유관기관에서는 콘텐츠 전반적인 분야에서 침해 대응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음악과 방송분야에서 가장 많은 저작권 침해 상담 및 대응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영화와 웹툰, 웹소설 등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현지에서 인기가 있거나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K-콘텐츠를 대상으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라. 현지에서 이용 가능한 불법 사이트 존재여부 및 개수

한국 콘텐츠를 불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기관의 15.4%가 한국콘텐츠를 불법으로 이용 가능한 사이트가 없다고 응답한 반면, 84.6%는 1개 이상의 불법 사이트가 현지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5개 이상 불법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8.5%로 일부 국가의 경우 추후에도 한국콘텐츠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마. 현지에서 이용 가능한 합법적 한류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 플랫폼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음악, 영화, 방송, 게임 분야에서는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캐릭터, 출판, 웹툰/웹소설, S/W의 경우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나 플랫폼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저작권 침해 상담 및 대응이 다수 발생한 웹툰/웹소설 분야의 경우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나 플랫폼이 없는 곳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인기를 얻어 해외로 진출하는 웹툰이 급증⁵³⁾하고 있는 가운데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플랫폼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웹툰 분야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음악과 영화 콘텐츠의 경우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사이트와 플랫폼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 사례 상담 및 대응이 가장 많은 분야로 나타났다.

바. 침해 발생의 주요 이유

현지에서 K-콘텐츠의 침해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에 대해 질의한 결과 저작권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콘텐츠 이용시 발생하는 비용부담, 현지 저작권 보호 법제 및 집행 미흡을 그 이유로 응답하였다.

사. 현지에서 필요한 저작권 보호 사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지원이나 협력이 가장 필요한 분야에 대해 질의한 결과 현지국가 기관과의 저작권 침해 단속 협조, 현지 저작권 관련 정보 제공 및 네트워크 지원, 저작권 인식 제고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게 나타났다. 해외저작권 침해의 원인과 높은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저작권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다수 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저작권 보호 및 침해 대응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국저작권 보호원과 연계 및 협력이 가능한 사업이나 행사에 대해 질의한 결과, 현지 문화 행사(매년 개최되고 있

53)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번역된 한국 웹툰 수는 5500여개에 달함.

는 케이팝 커버댄스 페스티벌 행사 등)시 저작권보호원 설명부스 운영, 러시아 불법 콘텐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저작권 침해 상담 및 대응을 위한 상주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제3절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주요 저작권 침해 사례 및 대응 현황, 그리고 해외 진출 유관기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전략이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등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권리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지 기관과 우리나라 기관과의 협력 강화 및 글로벌 저작권 보호 기반 구축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본 후, 이러한 협력 및 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이번 해외 진출 유관기관 대상 설문조사의 경우 그 응답 건수가 많지 않아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추가적으로 기존 연구⁵⁴⁾ 내용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먼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 소재 유관기관들은 실제 해당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 방지나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0% 전후의 응답자만이 해당기관에서 저작권 침해 사례를 인지하였으며, 3년 이내에 저작권 침해 관련 상담이나 민원에 대응한 기관은 약 30% 정도로 약 70%의 기관에서는 저작권 침해 관련 상담이나 대응을 진행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침해 인식 대비 대응비율이 낮은 것은 해외에 나와 있는 유관기관들이 해당국에서 저작권 침해 대응과 관련하여 해당기관에서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대응이 가능한 처리기관에 업무를 이관하거나 신고자 또는 상담신청자에게 관련 기관을 안내해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전년도 연구 결과와 일맥 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관련 유관기관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부족,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 사무소로 업무를 이관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따라서 해외 소재 유관기관 중에서 협업이 가능한 기관의 선별을 통해 효율적으로 협업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54)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 효율화를 위한 방안 연구」, 2022. 12.

또한 저작권 보호 및 침해 대응을 위한 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기관과 협업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례로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무소가 없는 지역의 경우 저작권 침해 관련 상담요청이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해 직접 대응을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 및 침해 대응과 관련된 지식을 보유한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해외 소재 유관기관의 경우도 해당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상주하는 경우가 다수로 관련 인력의 충원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간단한 저작권 침해 대응 관련 사업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은 가능할 것이다. 이는 유관기관에 국가별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으로도 효과적일 것이다. 저작권 보호 체계, 징수 규정, 그리고 분쟁 발생 시 대응 가이드 전략이나 매뉴얼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해외 유관기관에 배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지에서 K-콘텐츠의 침해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에 대해 저작권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 사후 대응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저작권 침해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지에서 이용자 및 이해관계자별 맞춤형 교육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콘텐츠별 합법적인 방법으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처벌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여 침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현지 교민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홍보활동의 경우 현지 캠페인이나 유관기관 행사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서도 큰 부담없이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우선적으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용자뿐만 아니라 콘텐츠 불법 송출 기관 및 인력에 대한 저작권 인식 교육도 더불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전년도 연구결과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지원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한 경우가 다수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지원사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기관이 존재하였다. 실질적으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기관이 다수 있었다. 따라서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에서 추진하는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조사,

저작물 보호전략 컨설팅, 저작권 침해감정, 침해대응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부분의 협력 체계 구축의 중요성에 비해, 강력한 협력체계를 당장 구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여 우선적으로 협력 사례를 발굴해 가면서 이를 점점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 콘텐츠는 합법/불법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 플랫폼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음악, 영화, 방송, 게임 분야에서는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동시에 다수의 국가에서 1개 이상의 불법 사이트가 현지에서 운영 중이었다.

다만 콘텐츠 분야별로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 및 플랫폼 수가 차이가 있었다. 저작권 침해 상담 및 대응이 다수 발생한 웹툰/웹소설 분야의 경우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나 플랫폼이 없는 곳이 다수 있었다. 국내에서 인기를 얻어 해외로 진출하는 웹툰이 급증⁵⁵⁾하고 있는 가운데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플랫폼이 없다면 이용자들은 불법 사이트나 플랫폼을 통해 지속적으로 K-콘텐츠를 이용하게 되고 이는 다시 불법 사이트의 확장 및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지속적인 웹툰 분야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예상됨에 따라 불법 사이트를 제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작년 연구결과를 보면 로펌 경고장 발송을 통한 침해대응의 경우 더 이상 불법사이트 운영자에게 위협이 되지 않아 삭제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경고장 도달이 가능한 이메일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발송을 어렵게 하고 있음에 따라 웹사이트 운영자가 아닌 ‘그 웹사이트 서버를 호스팅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사이트를 제재하는 방식’에 대한 도입 여부 논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55)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번역된 한국 웹툰 수는 5500여개에 달함.

다만, 불법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제재 방안을 현지 기관이 직접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이 현지 기관과 실질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이나 현지 기관에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각 국가의 담당기관에서 할 역할이고, 그렇다면 그와 같은 국가 기관의 제재 행위에 대한 보조나 협력의 관점에서 전략 마련이 적절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 국가에서의 저작권 침해 상황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자의 사법적 절차 진행에 대해 지원(법률 상담이나 서류 준비 지원 등)하거나 증거수집 등의 형태로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상에서 살펴 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기관 상호간 긴밀한 협력 관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글로벌 저작권 보호 기반 구축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될 필요가 있다. 국내외 기관 상호 간 협력관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 사이의 국제적 저작권 보호 체계가 중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비록 각 국가별 저작권 보호 법제, 보호 체계 및 시스템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차이가 해외에서의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4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제3장 해외 저작권 보호 협력 전략

제1절 국제기구

1.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기구의 현황 및 역할

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1) WIPO 개요

전세계적으로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및 문학·예술작품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활동을 현대화시키려는 목적에서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이 기구 설립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고, 1970년 4월 26일 효력을 발효하게 됨으로써 정식 발족되었으며, 1974년 12월 17일 유엔전문기구가 되었다.⁵⁶⁾ 본부는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으며, 현재 193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⁵⁷⁾ WIPO 의사결정 기구 및 위원회로는 총회, 조정위원회, 조약별 동맹 총회, 상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실무그룹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1973년 5월부터 참관인 자격으로 관망해 오다가 1979년 3월 정식으로 가입했다.

WIPO는 국제조약의 관장 및 체결, 국제규범의 제정, 개도국 지원을 위한 개발 협력 사업 및 PCT 국제등록 업무를 관장한다. 또한 기술협력의 차원에서 개도국의 TRIPs 협정 이행을 지원하고, Worldwide Academy를 개설하여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지적재산권 학습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개도국 지식재산권 전문가 양성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기술이전·개발도상국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법률 및 행정조직 개선의 지원·세미나의 개최 및 전문가 파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Permanent Committee)⁵⁸⁾와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⁵⁹⁾를 운영하고 있다.⁶⁰⁾

5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9764>).

57) WIPO 홈페이지(<https://www.wipo.int/members/en/>).

58) Program and Budget Committee(PBC), Committee on Develop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CDIP),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IGC), Advisory Committee on Enforcement



출처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그림 3-1] WIPO 조직 구조

(2) WIPO의 주요 추진 사업 및 지식재산 보호 노력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3가지 국제등록시스템의 운영(국제특허출원제도, 국제상표등록제도, 국제디자인등록제도),⁶¹⁾ 정보기술 프로젝트(Information Technology Projects)의 추진,⁶²⁾ 개도국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이다. 개도국 개발협력사업의 경우 지재권 인적자원 개발 지원(교육, 훈련, 세미나 등), 지재권 인프라 개발지원(조직, 시설, 장비, 법제 등의 현대화), 지재권 정보서비스 제공(선행기술 자료 등 무료검색 지원), 개도국 발명진흥, 전통지식 보호, 최빈국에 대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다.⁶³⁾

WIPO는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t (ACE).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treaties established permanent Committees of Experts with a mandate periodically to revise and update the classification systems.

59) 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Patents(SCP), 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Trademarks, Industrial Design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SCT), 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SCCR), Committee on WIPO Standards(CWS).

60) 윤선희, 「특허법 제6판」, 법문사, 2019, 974면 및 WIPO 홈페이지(<https://www.wipo.int/policy/en/#bodies>).

61) 이 시스템 이용에 대한 수수료가 WIPO의 주요 수입원이다.

62) 세부적으로는 Global Network System(WIPOnet), 디지털 전자도서관 구축(IPDL), PCT전자출원시스템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63)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ch-geneva-ko/brd/m_23625/view.do?seq=77379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9).

들어 2020년 11월 4일 WIPO는 전 세계 특허 검색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통합 온라인 플랫폼인 ‘WIPO INSPIRE(Index of Specialized Patent Information Reports)’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기존의 WIPO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교류 플랫폼 eTISC와 등록 포털 서비스를 통합한 것이다.⁶⁴⁾

(3) 우리나라 특허청과 WIPO의 인력교환 업무협약 체결⁶⁵⁾

우리나라 특허청장은 2023년 7월 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과 특허청-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간 인력교환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양자회담을 가졌다. 동 협약은 2024년 상반기부터 특허청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인력을 상호 파견해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회원국 중 첫 번째로 시행되는 인력교환 프로그램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전문가가 한국에 파견되면 국제특허출원(PCT) 세계 4위인 한국의 기업들이 시간제한 없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지역사무소 한국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한국인 전문가가 파견되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발전한 한국의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1) APEC 개요

APEC은 1989년 1월 한국과 호주 정상회담에서 정부 차원의 지역 경제협력체 창설의 필요성에 합의한 후 같은 해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제1차 각료회의를 개최한 후 창설되었으며 창설멤버는 12개국으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ASEAN 6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이다.⁶⁶⁾ 2023년 10월 23일 현재 회원국은 캐나다, 미국, 멕시코, 페루, 칠레, 한국,

64) <https://inspire.wipo.int/>.

65) 특허청,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력 강화로 한국 출원인 편의 향상 기대”, 2023. 7. 6. 보도자료

66) 김애리·이현희, “APEC에서의 한국의 주요활동과 지식재산 이슈제기의 필요성”, IP Focus 제2021-23호, 2021, 2면.

일본, 태국, 홍콩, 필리핀, 브루나이, 파푸아뉴기니,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타일랜드, 베트남, 중국, 러시아로 21개국이다.⁶⁷⁾

〈표 3-1〉 APEC 연도별 가입국 현황⁶⁸⁾

연도	가입국수	가입국
1989년 (APEC 출범)	12개국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세안 6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1991년	3개국	중국, 홍콩, 대만
1993년	2개국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1994년	1개국	칠레
1998년	3개국	러시아, 베트남, 페루

APEC의 비전과 목표로, 1994년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목표(Bogor Goals)에 따라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달성하기로 하였고, 공동체 비전 달성을 위한 이행프로세서로서 무역투자자유화와 함께 경제기술협력, 비즈니스 활성화를 3대 축으로 설정하고 운영하고 있다.⁶⁹⁾

APEC은 비공식회의, 각료회의, APEC 자문회의, 회계, 예산운영위원회, 무역투자위원회, 경제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상회의는 자유토론(retreat) 형식으로 진행되어 정상들 간에 형식을 구애받지 않는 협의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결과도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⁷⁰⁾

(2) · APEC에서의 지식재산 논의

APEC은 보고르 목표(Bogor Goals) 달성 행동지침으로 1995년 ‘오사카 행동 지침(Osaka Action Agenda)’을 채택하면서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세부 부문별 계

67) APEC 홈페이지(<https://www.apec.org/about-us/about-apec/member-economies>). 다만, APEC 참가자격은 주권국가가 아니라 경제체(economy)로서 국가라는 명칭 사용이나 국기제양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대만과 홍콩은 각기 China Taipei와 HongKong China로 표기하고 있다.

68) 김애리·이현희, 각주 66, 2면.

69) 김애리·이현희, 각주 66, 2면.

70) 김애리·이현희, 각주 66, 3면.

획 중 하나로 지식재산을 포함시켰다.⁷¹⁾

2002년 APEC '오사카 행동지침' 상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부문 계획

Part One :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 Section C : Actions in Specific Areas

7. 지식재산권

목적(Objective) APEC 회원들은,

- a. TRIPS 협정의 원칙들에 따라,
 - / 지식재산권의 입법, 행정, 집행을 포함한 적절한 효과적이고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한다.
 - / APEC 지역에서 지식재산권 제도의 조화를 발전시킨다.
 - / 대중 인식 활동들을 강화한다.
 - / 지식재산권 보호와 제도 활용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새로 출현하는 지식재산 정책 이슈에 대한 대화를 촉진한다.
- b. 이하의 활동을 통해, 新경제의 급속한 성장·발전으로 야기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도전들을 다룬다.
 - / 창의적인 노력을 촉진하고 온라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법적 체제를 수립한다.
 - / 저작권 소유권자, 사용자, 배포자의 서로 다른 권리와 이해 간에 균형을 보장한다.
 - / 콘텐츠 제공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 간에 적절한 균형을 수립한다.
 - / 합리적 정보 접근에 대한 공동체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서, 혁신에 대한 장려책을 제공한다.

가이드라인(Guidelines) APEC의 각 회원은,

- a. 지식재산권이 신속하고 간단하며 비용 효과적인 절차를 통해 하여되도록 보장한다.
- b.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민사·행정 절차와 구제가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 c. 특허검색, 특허심사, 전산화, 인적자원개발 등의 분야와 관련한 양자 기술협력을 제공·확대한다.

공동실행(Collective Actions) APEC 회원들은 이하의 공동 실행을 취할 것이다.

- a. 지식재산 정책 대화의 심화
- b. 용이하고 신속한 권리 취득 지원
 - / 국제 지식재산 시스템 참여 / 국제적으로 조화로운 지식재산권 제도 수립 / 검색·심사 부문의 협력
- c. 지식재산권 관련 절차의 전자 처리
 - / 전자출원 시스템 / 전자적 수단을 통한 정보 보급
- d. 새로운 부문에서의 적절한 지식재산권 보호
 - / 생명공학기술,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보호 /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 / 전자 상거래
- e. 지식재산 시스템의 운용 향상을 위한 협력
- f. 지식재산권 집행을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의 구축
 - / 집행 지침의 수립 /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정보 교환 / 기타 포럼 및 관할당국과의 협력
- g. APEC 회원들에서의 지식재산 자산 관리의 촉진
- h. 대중 인식 제고
- I. 지식재산 보호의 보장을 통한 기술이전 촉진

[그림 3-2] APEC에서 지식재산 관련 논의 계획⁷²⁾

이후 1997년 무역투자위원회는 지식재산권 갯투게터를 지식재산권 전문가그룹(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perts' Group, 이하 IPEG)으로 변경하고 공식 APEC 그룹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APEC IPEG는 지식재산권 관련 협력구상(Initiative)의 채택 및 사업의 수행을 통하여 지식재산 발전과 상호협력을 추구하는

71) 문병호·최재식, 「APEC 회원들의 허가특허연계 제도 도입·운영 현황」,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2. 06, 5면.

72) 문병호·최재식, 각주 71, 5면.

비구속적 협의이며, 해당 IPEG의 목표는 ① 지재권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② 지재권 보호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조사 및 정보교환, ③ 지재권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대책 연구, ④ TRIPs협정의 완전한 이행, ⑤ TRIPs를 이행하는 국가들을 돕기 위한 기술협력의 촉진이다.⁷³⁾

그리고 해당 IPEG의 주요주제로는 상표링크, 지식재산권 정책에 대한 심화, 새로운 기술, 특허공제예외, 국제지식재산분쟁해결, 지식재산 집행, 지식재산 자산의 상업화 및 증권화, 상호운용성 등이며, IPEG 회의는 무역투자위원회 우선순위 즉, ① 다자간 거래시스템 지원(지식재산권 정책에 대한 심화), ② APEC의 지역경제 통합 의제를 지원하는 발전, ③ 거래촉진, 연결 및 인프라, ④ 포괄적인 접근방식에 따라 구성되며 첫 번째 및 세 번째 고위관리회의(SOM1 alc SOM3) 사이에 매년 2회 회의를 개최하고 무역투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⁷⁴⁾

(3) APEC의 지식재산 관련 현황

IPEG의 위 주요주제 중에서도, IPEG는 2023-2024년 주요 관심분야로 지식재산 금융, 디지털 경제와 상호연결성에 관한 지식재산,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등을 꼽고 있다.⁷⁵⁾

IPEG는 2021년에 불법 스트리밍 장치(illicit streaming device, ISD)에 대한 회원국간 대응방안을 조사하여 보고서로 발간하였다(Report on Results of Survey Questionnaire on Domestic Treatment of Illicit Streaming Devices by APEC Economies). 보고서에 따르면 21개국 중 15개국이 ISD가 콘텐츠 소유권자에게 입히는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20개국이 이에 관한 법령 및 판례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11개국이 ISD에 대한 대응을 위해 외국의 법집행기관과 협력한 사례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ISD가 해외 불법 스트리밍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이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을 대표적인 대응방안으로 들었고, 대만은 대응을 위해 미국 및 중국 본토와 정보공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응

73) 김애리·이현희, 각주 66, 8면.

74) 김애리·이현희, 각주 66, 8면.

75) APEC,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perts Group(<https://www.apec.org/groups/committee-on-trade-and-investment/intellectual-property-rights-experts-group>).

답하였다.⁷⁶⁾ 이와 관련하여, 무역투자위원회의 2022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IPEG는 회원국의 저작물의 불법 스트리밍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권고사항 등을 포함한 제안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한바 있다.⁷⁷⁾

한편 APEC은 2020년 Putrajaya Vision 2040을 도입하여 (1) 무역과 투자(trade and investment), (2) 혁신과 디지털화(innovation and digitalization), (3) 강력하고 균형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포괄적 성장(strong, balanced, secure,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이라는 세 가지 기조를 중심으로 회원국들의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⁷⁸⁾ 또한 위 Putrajaya Vision 2040의 달성을 위해 Aotearoa Plan of Action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 무역과 투자 측면에서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을 통한 경제발전과 혁신을 모색하고자 하고 있다.⁷⁹⁾

구체적으로, IPEG은 Aotearoa Plan of Action 추진의 일환으로 각종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워크숍 등을 열고 있다. 무역투자위원회의 2022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IPEG의 이러한 활동에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ADR의 활용, IP금융 시스템의 각국간 조화, 의약품 허가-특히 연계제도의 조화, 지식재산권 시스템에의 여성 참여 증진, COVID-19 등 재난적 상황에서 회복하기 위한 지식재산권의 활용 사례 수집 등이 포함된다.⁸⁰⁾

또한, 무역투자위원회의 2023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화에 관하여 한국은

76) IPEG, Report on Results of Survey Questionnaire on Domestic Treatment of Illicit Streaming Devices by APEC Economies, 2021. 3.(https://www.apec.org/docs/default-source/publications/2021/3/apec-report-on-domestic-treatment-of-isds/221_ipeg_apec-report-on-domestic-treatment-of-isds.pdf?sfvrsn=381a1cdf_1) p.4, p.12-13.

77) 2022 CTI Annual Report to Ministers - Appendix 6, IPEG Report for the CTI Annual Report to Ministers(https://www.apec.org/docs/default-source/publications/2022/11/2022-cti-annual-report-to-ministers/appendix-6---intellectual-property-experts-group.pdf?sfvrsn=e81a4035_4) p.3.

78) APEC, APEC Putrajaya Vision 2040(https://www.apec.org/Meeting-Papers/Leaders-Declarations/2020/2020_aelm/Annex-A).

79) APEC, Aotearoa Plan of Action, Trade and Investment(<https://aotearoaplanofaction.apec.org/trade-and-investment.html>)(“Promote adequate and effectiv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by providing capacity building, particularly to spur economic development and innovation.”)

80) 2022 CTI Annual Report to Ministers - Appendix 6, 각주 77, p.2.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침해가 증가함에 따른 한국의 대응 노력을 강조함과 함께 APEC차원의 프레임워크 개발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⁸¹⁾

다. WTO

(1) 현황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하여 국제연합(UN)의 특별기구로서 국제무역기구(ITO)의 설립이 추진되었다. ITO 헌장(Havana Charter)까지 작성되면서 그 논의가 성숙되었으나, 미국 의회의 반대로 결국 ITO의 설립이 무산되었다. 그러나 전후 ITO의 설립과 함께 추진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23개 체약국으로 1948년 1월 발효되었다. 이러한 GATT 체제는 1995년 WTO가 출범하기까지 국제무역을 관장하는 유일한 다자간 수단으로 의의가 있었으나, 1980년대로 들어서며 선진국의 자국산업 보호,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반덤핑제도 남용 등 각종 비관세 보호수단 남발, 무역비중이 높은 농산물·섬유 등에 대한 GATT규율의 회피 및 예외조치 인정, 서비스나 지식재산권 등 새로운 무역분야의 비중 증대에 대하여 국제무역질서 규율장치 미흡 등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에 1986년 시작된 UR협상에서 새로운 무역환경하의 세계무역촉진을 위하여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강력한 국제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후 8년 간의 협상을 거쳐 1995년 1월 1일 UR 협정이 발효되고 GATT 체제를 대체하는 항구적이고 강력한 새로운 세계무역기구가 설립되었다.⁸²⁾ 우리나라는 WTO 창립시, 즉 1995년 1월 1일 가입하였고, 현재 164개국이 가입되어 있다.⁸³⁾

81) 2023 CTI Annual Report to Ministers - Appendix 7, IPEG Report for the CTI Annual Report to Ministers(https://www.apec.org/docs/default-source/publications/2023/11/appendix-07-intellectual-property-rights-experts-group-report.pdf?sfvrsn=f96e3a3d_2), p. 7-2.

82) 윤선희, 「특허법 제6판」, 법문사, 2019, 977-978면 및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10043&cntntsId=856>).

83) WTO 홈페이지(https://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org6_e.htm).

(2) 조직

WTO는 최고기구인 각료회의, 2단계 조직인 일반이사회, 분쟁해결기구 및 무역정책검토기구, 3단계조직인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이사회 등으로 구성된다.

각료회의의 운영은 최소 2년마다 개최되며 다자간 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의 결정 권한을 행사하고, 일반이사회는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어 각료회의의 비회기 중 각료회의의 기능을 수행하는 WTO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사무국은 이사회, 작업반 등의 업무지원을 담당하는 기구로 사무총장(1명), 사무차장(4명) 등 총 630여 명이 근무한다.⁸⁴⁾



[그림 3-5] WTO 조직도⁸⁵⁾

84)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10043&cntntsId=856>).

85) 관세청 홈페이지, 세계무역기구(<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10043&cntntsId=856>).

(3) 주요 활동

WTO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⁸⁶⁾

- 무역 장애(수입 관세, 기타 무역 장벽)의 감소 또는 제거를 협상하고 국제 무역 수행을 규율하는 규칙(예: 반덤핑, 보조금, 제품 표준 등)에의 합의
-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해 WTO가 합의한 규칙 적용의 관리 및 모니터링
- 회원국의 무역 정책 모니터링 및 검토, 지역 및 양자 무역 협정의 투명성 보장
- WTO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회원 간의 분쟁 해결
- 국제 무역 문제에 있어 개발도상국 정부 관료의 역량 구축
- 아직 조직에 가입하지 않은 약 30개국의 가입 과정 지원
- WTO의 기타 주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 연구를 수행하고 무역 데이터를 수집 및 전파
- 일반 대중에게 WTO 및 WTO의 임무와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

한편, WTO의 주요 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으로 설명하기로 한다.⁸⁷⁾

① 협정 이행

WTO는 다자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촉진하고, 그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함께 복수국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틀을 제공한다. 즉 모든 회원국 정부가 수락한 다자협정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각 회원국 정부의 이행상황에 대한 통지를 접수하고 토의하는 장을 제공하며, 별도 감시기구(예: 섬유감시기구)를 도입하여 협정 이행의 객관적인 검토를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정보제공 등 활동으로 각국의 협정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 아울러 일부 회원국이 수락한 복수국간 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해 위의 내용과 유사한 활동을 전개한다.

② 협상

회원국간의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하여 협상을 위한 장을 제공하고, 이러한 협상 결과의 이행을 위한 틀을 제공한다. 즉 그 고유기능으로서 이미 GATT 및 UR 의

86) WIPO 홈페이지(https://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wto_dg_stat_e.htm).

87) 윤선희, 「특허법 제6판」, 법문사, 2019, 978-979면.

제에 포함된 주제에 관한 다자협상의 장을 제공하며, 이에 덧붙여 WTO 각료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다자무역관계에 관한 추가적 협상, 즉 기존 조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의제에 대한 협상을 위한 장을 제공한다.

③ 분쟁 및 정책검토

WTO 협정 부속서2의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따라 분쟁해결기구 및 상소기구를 통해 협정 해석, 협정 위반 등에 대한 회원국간의 분쟁을 해결하며, WTO 협정 부속서3의 무역정책검토제도에 따라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2년, 4년, 6년) 검토함으로써 협정 이행을 증진한다.

④ 여타 국제기구들과 협력

세계 경제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IMF, IBRD 및 관련 산하 기구들과 협력한다.

(4) WTO/TRIPs 대응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사례

① TRIPs 관련 국내 의견 수렴 및 영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다자통상협력과는 2021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백신·치료제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일시 유예 방안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논의되는 것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 영향을 점검하고자 '코로나19 관련 WTO 지식재산권 일시 유예 민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⁸⁸⁾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백신·치료제 등의 생산 확대, 국산 백신·치료제 등의 개발 영향 등과 관련하여 TRIPs 유예의 실효성, 한계 및 예상되는 결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하였고, 업계는 TRIPs 유예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확한 WTO 동향을 계속 공유하고 TRIPs 유예 논의와 별도로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 백신 원료확보, 라이선싱 협력 강화 등의 지원을 계속해줄

88) 산업통상자원부, "코로나19 백신 등 지재권 유예 관련 민관 간담회 개최", 2021. 5. 25. 보도자료 (https://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4128&bbs_cd_n=81¤tPage=1&search_key_n=title_v&cate_n=1&dept_v=&search_val_v=).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② WTO 각료회의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세계무역기구과는 WTO 각료회의 등에 참여하고 있다.⁸⁹⁾ WTO 각료회의는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2년마다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WTO 회원국 간 주요 통상 현안이 논의되는데, 지식재산권 관련하여 2022년 회의에서도 개도국 진영 중심으로 요구해온 ‘백신 지식재산권 일시유예’에 대해 회원국 간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차기 각료회의(2024년 2월) 준비를 위하여 개최되는 고위급 회의가 최근(2023년 10월 23일-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다자통상법무관이 참석하여 분쟁해결제도 개혁, 수산보조금 후속 협상, 식량안보를 포함한 농업, 무역과 개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도되었다.⁹⁰⁾

2.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

국제기구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글로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세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와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협약을 만들며, 국제적인 통상 마찰을 피할 수 있는 공통기준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각 국가가 참여하는 다양한 전문가그룹 회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시스템 마련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저작권 해외사무소와 해외에 진출한 우리 유관기관들만으로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K-콘텐츠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89) 산업통상자원부, “제12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5년만에 개최”, 2022. 6. 13. 보도자료(https://www.motie.go.kr/motie/gov_info/gov_openinfo/sajun/bbs/bbsView.do?bbs_seq_n=165676&bbs_cd_n=81); 산업통상자원부, “제12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MC-12) 폐막”, 2022. 6. 17. 보도자료(https://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5700&bbs_cd_n=81¤tPage=1&search_key_n=&cate_n=&dept_v=&search_val_v=).

90) KDI 경제정보센터, “세계무역기구 차기 각료회의(MC-13)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의 참석”, 2023. 10. 23.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43812&pg=&pp=20&topic=L>).

다만, 국제기구의 특성상 특정 국가의 저작권 보호 기관과 개별적인 협력 방안을 구축하는 데는 어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며, 국제기구에서 직접적으로 각국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나 비용 등 지원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어떻게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 전문가 파견 및 업무 공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국제기관과의 전문인력 교환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특허청은 지난 2023년 7월 5일 WIPO와 인력교환 프로그램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24년 상반기부터 인력 파견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인력교환 프로그램은 상호간의 업무 영역을 경험하고 그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상호간의 협력 강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인력파견 및 업무경험을 통해 상호간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강화하는 세부적인 업무 협력 방안 마련도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인력파견은 일방적이어서는 안되고 상호 간의 인력파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호간 인력파견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만의 특유하고 강점이 되는 저작권 보호 분야를 명확히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즉, 국제기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광범위성이나 전문성, 다양성, 그리고 공신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상호간의 인력파견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갖지 못한 또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에 반해 우리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한 다음, 이를 근거로 상호간 인력파견의 정당성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본 특허청과 세계지식재산기구 상호간 인력파견 업무협약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와 순서에 따라 전문가 파견 및 업무 공유를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첫째, 국제기구에 어필할 수 있는 우리나라만의 저작권 보호 분야 장점이거나 특유한 경험 등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특히 세계지식재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만의 강점 영역이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국제기구에 내세울 수 있는 고유한 장점 등이 없다면 상호간의 인력교환은 무색해지고 일방적인 전문가 파견 및 전문성 전수 등에 그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특허청의 경우에는 한국의 청소년 발명교육(한국형 모형), 국가 지식재산전략 수립, 지식재산 금융 등의 경험을 공유해 세계 지식재산분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내 한국인 전문가 진출·확대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전문가 파견 및 업무 공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경우 공공영역에서 저작권 보호 활동에 대한 전방위적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기관을 찾기 어렵다는 점 자체가 강점이 될 수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해외사이트 내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 저작권 보호 법률 상담 및 컨설팅 제공, 분쟁 해결을 위한 비용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제기구에 내세울 수 있는 고유한 장점 분야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탁기금 등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역량과 경험을 개도국에 공유하자는 제안도 국제기구에 대한 유효한 어필 요소가 될 수 있다.

〈표 3-2〉 국가별 신탁기금 규모

구분	일본	한국		중국	프랑스
		특허청	문체부		
예산	77억원	9억원	10억원	16억원	3억원

* 2023년 기준 금액(출처 : WIPO Program of Work and Budget 2024/25)

둘째, 각 국제기구들의 전문가 파견을 통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장점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특허청과 세계지식재산기구 상호간 업무협약에서는 WIPO 전문가가 한국에 파견되면 국제특허출원(PCT) 세계 4위인 한국의 기업들이 시간제한 없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⁹¹⁾ 향후 WIPO 지역사무소 한국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91) 특허청, 각주 65, 2023. 7. 6. 보도자료.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기구 전문가가 한국저작권보호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면 취할 수 있는 장점을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인력파견에 대한 업무협약을 추진해야 할 것인데, 국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가능해지고,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제기구의 업무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환경 구축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나아가 이러한 파견 업무 경험이 추후 국제기구의 한국 지부 설립에도 유용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첫째와 둘째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각 국제기구들과의 인력파견에 대한 업무협약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물론 이 경우 어느 국제기구와의 인력파견을 먼저 추진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인력 및 기간, 조건 등을 토대로 인력파견을 할 것인지 등은 후속 검토를 통해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특허청과 WIPO 간 인력파견에 대한 논의를 참고하여, 우선은 WIPO와의 인력파견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허청과 WIPO 간 인력파견을 위한 업무협약 당시 WIPO에 한국인 전문가가 파견되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발전한 한국의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상호 간 인력 파견 논의 당시에도, 특허청이 한국신탁기금을 통해 개도국과 선진국 간 지식재산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한 점을 WIPO 측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한국과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바, 이러한 긍정적 평가를 고려하여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에서도 참고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나. 저작권 침해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국제기구의 특성상 개별 침해 사건에 대한 대응 조치나 비용 지원 등 업무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반면, 각 국가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의 취합 및 활용은 강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여러 유관기관들이 해외에 진출해 있으나 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현황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인데, 이 부분의 역량

을 국제기구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지식재산권 중에서 저작권이나 콘텐츠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세계적으로 K-콘텐츠에 대한 위상과 인지도가 급상승한 지금의 상황을 잘 활용하여, 해외에서 발생하는 K-콘텐츠 침해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하여 해당 국가 간 관련 정보가 적절히 공유 및 활용됨을 통해서 해당국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운용될 수 있도록 국제기구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이는 해외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 뿐 아니라, 글로벌 저작권 보호에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협력 체계 구축은 담당 업무의 특성상 WIPO 및 APEC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

1. 주요국의 저작권 보호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 현황 및 전략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 검토를 위해서는 먼저 주요 국가별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의 유형이나 침해 형태, 피해의 정도나 사법 절차의 내용 등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고, 그로 인해 각 기관들의 업무 형태나 특징도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산업재산권을 담당하는 기관(USPTO)과 저작권을 담당하는 기관(USCO)이 분리된 미국과 달리 영국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통합해 정책과 행정을 총괄하는 지식재산권청(IPO)을 두는 등 국가별 차이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정부기관과의 협력 방안 마련은 각 국가 및 담당기관별 특징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각 기관들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조사와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그와 같은 세부적인 분석을 시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따라서 이하에서는 개괄적인 협력 방안 제시, 그리고 이를 위한 전제로 주요 국가별 지식재산권 담당 기관의 현황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가. 미국

미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으로는 ① 미국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행위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② 무역 정책을 조정하고 무역협정 체결, 분쟁 해결, 국제무역정책기구에의 참여 등 업무를 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③ 저작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 저작권청(USCO: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④ 국내외에서의 침해를 감소시키는 것에 의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추구하는 미국 지식재산강화조정관(IPEC: Office of the U.S.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⑤ 다른 정부 기관들, 민간 부문, 학술 기관 및 해외 유사 기관과 협업함에 의해 컴퓨터 범죄를 방지하고 조사하며 소추하는 사법부내 사이버범죄수사국(CCIPS: Department of Justice (DOJ) Criminal Division, The Computer Crime and Intellectual Property Section), ⑥ 해외 시장에서의 지식재산 보호교육 등 업무를 하는 미국 지식재산권청(OIPR: Offi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⑦ 지식재산의 보호 및 집행에 관한 국내외적 활동을 하는 국가 지식재산권 조정센터(IPR Center: The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rdination Center), ⑧ 미국 상공회의소 주요 산하기관으로서 국제적인 지식재산 보호 및 시행 체계 구축 업무를 담당하는 세계지식재산센터(GIPC: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⑨ 인터넷 도메인 이름 등록 서비스 관련 공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ICANN에서 운영하는 상무부 산하기관인 인터넷 정보센터(InterNIC: Network Information Center), ⑩ 인터넷 고유 식별자 할당 및 배정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비영리 공공기관인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인터넷정보센터(ICANN: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⑪ 법정 외에서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기구인 미국 중재협회(AAA: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가 있다.⁹²⁾

미국은 대표적인 불문법(판례법) 국가로서 판례에 의해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 법리가 정립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들은 판례 법리를 토대로 하여 세부적인 보호절차나 방법 등을 안내하거나 지식재산권 보호 전

92) 문화체육관광부, 「해외 저작권보호 기관현황 및 공동대응체계구축 연구」, 2014. 8., 80-91면.

락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 16일 미국 저작권청은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소재를 담은 저작물의 등록 안내서를 발표하였고,⁹³⁾ 2022년 1월 20일에는 저작권청의 역할 확대, 데이터와 기술의 통합 개선, 지속적인 저작권 전문지식 제공을 통한 공중의 이익 추구를 위한 5개년 전략 계획(Strategic Plan 2022-2026)을 발표하였다. 5개년 전략 계획은, 모두를 위한 저작권(Copyright for All: 개인과 소규모 단체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소외된 지역사회를 포함하여 가능한 많은 대중들이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저작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 지속적인 발전(Continuous Development: 저작권 사회의 발전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업데이트할 것임), 공정한 전문성(Impartial Expertise: 국내외 의회, 법원 및 기타 미국 정부 기관에 저작권법 및 정책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임), 데이터 활용 강화(Enhanced Use of Data: 의사결정 및 성과 측정을 위해 데이터 개발과 활용을 강화하고 저작권 지식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임)를 주요 전략 목표로 하고 있다.⁹⁴⁾

나. 영국

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기관으로는 ① 국회가 부여한 권한에 한정되어 운영되는 텔레비전, 라디오, 원격통신, 무선 통신 서비스 관련 기관인 오프콤(Ofcom), ② 공정무역의 지속 및 증진 등을 담당하는 거래기준국(TSS: Trading Standards Services), ③ 심각한 경제범죄를 다루는 중대사기수사국(SFO: Serious Fraud Office), ④ 지식재산권범죄 중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다루는 런던경찰청 지식재산범죄수사부(PIPCU: Police Intellectual Property Crime Unit), ⑤ 무역 증진, 혁신도모, 창업과 사업성장 지원, 기술·교육투자 등을 담당하는 비즈니스혁신 기술부(BIS: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⑥ 강력 범죄조직을 담당하는 강력조직범죄국(SOCA: Serious Organised Crime Agency), ⑦ 조세 담당 기관인 국세청(HM Revenue & Customs), ⑧ 지식재산권 담당 기관 기관

93) 한국저작권위원회, 「미국 저작권청 인공지능 창작물 관련 저작권 등록 안내서 검토보고서」, 2023-02 저작권 산업 현황 보고서 참고.

94) 미국 저작권청, 2022-2026 전략계획, 2022. 1. 20.(<https://www.copyright.gov/reports/strategic-plan/?loclr=eanco>).

인 영국 지식재산권청(UK IPO: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이 있다.⁹⁵⁾

영국 지식재산권청은 최근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5년(2022-2027)을 아우르는 새로운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전략을 2022년 2월 발표하였는데, 저작권 관련 대응 전략으로는 (1) 미래에 개발될 저작권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및 물리적 침해에 대한 추적기 개발, (2) 일반 대중 및 민간 이해관계자(주로 중소기업)를 위한 저작권 인식 제고 교육, (3) 지식재산범죄수사부(PIPCU)와의 협업을 통한 저작권 침해 피해 방지가 제시되었다. 실제 영국은 2014년 이후 지식재산범죄수사부와의 협업을 통해 약 오천 개의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를 폐쇄하였고, 지식재산청 차원의 지식재산범죄수사부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저작물 소비자가 불법 사이트를 사용하는 위험과 해악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총체적 교육을 제공한다. 따라서 지식재산 범죄 경찰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온라인 및 물리적 저작권 침해를 단속한다면 중소기업의 저작권 침해 피해 사례도 그만큼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저작권으로 인한 영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⁹⁶⁾

다. 중국

① 중국 전국의 저작권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 ② 국무원 상하에 설치된 특허와 국제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을 주관하는 국가지식재산국(国家知识产权局), ③ 중국의 신문출판·방송매체를 관리하는 국무원 직속기구인 국가신문출판방송총국(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 ④ 저작권 사회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판권국 소속기관인 중국판권보호센터(中国版权保护中心), ⑤ 국무원 산하에 설치된 수출입 물품에 대해 감독·관리하는 세관총서(海关总署), ⑥ 국무원 산하에 설치된 시장감독과 행정집행의 주관부서인 공상행정관리총국(工商行政管理总局), ⑦ 전국 문화예술사업을 관리하는 문화부(文化部)가 있다.⁹⁷⁾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은 국무원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로 저작권 관리업무를 맡아 저작권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관련 법률의 초안을 제정하는 역할을 하며, 해외 관련

95) 문화체육관광부, 각주 92, 104-109면.

96) 최푸름, “영국 지식재산청, 2022-2027의 새로운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전략을 발표”, 저작권 동향 2022 제6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4. 27.

97) 문화체육관광부, 각주 92, 127-134면.

저작권 활동을 책임지고 있다. 저작권 보호 및 피해 신고, 저작권 국제교류, 해외작품 판권인증이 주요 업무이며, 산하기관으로 중국게임판권보호연맹(中国游戏版权保护中心) 등이 있다.⁹⁸⁾ 지난 2022년에는 중국 판권협회(中国版权协会)에게 ‘2021년 중국 저작권 10대 사건’의 선별을 위탁하여 2022년 1월 25일 ‘2021년 중국 저작권 10대 사건’을 발표하였고,⁹⁹⁾ 2023년 12월에는 베트남과 저작권 및 관련 분야의 법적·기술적 정보 교환 및 협력 증진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¹⁰⁰⁾

라. 일본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으로 ① 문부과학성 산하 기관으로서 문화예술의 진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청(文化庁), ② 일본의 무역진흥에 관한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1951년 설립된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있다.¹⁰¹⁾ JETRO는 우리나라의 KOTRA와 유사한데, 일본 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통한 혁신 촉진 및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 일본 농림수산물 및 식품 수출 지원, 일본 기업의 해외 사업 지원,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일본 기업의 활동 및 무역 정책에의 기여 등을 주된 업무로 한다.¹⁰²⁾

한편,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기관은 문화청인데, 문화청 저작권과 국제저작권실에서는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해적판) 대책 핸드북(2023년 3월)¹⁰³⁾ 발간 등을 통해 국내외 저작권 침해 대응방안 등에 대해 안내하고 주요 해외 국가(미국, 러시아, 베트남, 중국)의 구체적 법제도와 이에 근거한 권리행사방법 등을 정리·소개하고 있다. 즉, (1) 상관습/계약관습의 차이나 계약 체결 시 유의점 설명, (2) 콘텐츠 사용계약 샘플 제시 및 조항별 설명, 동영상 전송, 영화 배급, 출판, 게임화, 음악 라이선스, 상품화 등 계약유형별 조항 소개 등이다. 또한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¹⁰⁴⁾과 관련하여 2022년 8월 인터넷상의 해적판에 의한 저작권 침해

98) WelCon, 중국 국가판권국(<https://welcon.kocca.kr/ko/organ-support/36>).

99) 서새남, “[중국]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 ‘2021년 중국 저작권 10대 사건’ 발표”, 저작권 동향 제 4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3. 18.

100) 중국 국가판권국 홈페이지(<https://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12227/358807.shtml>).

101) 문화체육관광부, 각주 92, 139-140면.

102) JETRO, Activities(<https://www.jetro.go.jp/en/jetro/activities.html>).

103) 文化庁, インターネット上の著作権侵害(海賊版)対策ハンドブック(<https://www.bunka.go.jp/seisaku/chosakuken/kaizokuban/handbook/seminar.html>).

대책 정보 포털 사이트¹⁰⁵⁾ 내에 새롭게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침해 관련 상담 접수를 받고 있으며, 답변은 원칙적으로는 이메일로 진행되나 경우에 따라 온라인 등을 통한 변호사와의 무료 개별 면담도 가능하다.

2.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

가. 국가별 협업 가능 기관 선별과 MOU 체결

가장 먼저, 각 국가별로 협업 가능한 기관을 선별하고 그 기관과의 저작권 보호 MOU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국가별로 저작권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이 다를 뿐만 아니라, 침해 사건의 유형 및 특징 등에 따라 담당기관들도 달라진다. 따라서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의 유형 및 특징별로 담당기관을 명확히 하고, 각 기관들과 담당 사안별 MOU를 체결해 둘 필요가 있다.

MOU 체결의 내용으로 1차적으로는 해당 국가에서 발생하는 K-콘텐츠 침해행위에 대해 현지 국가의 담당기관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상호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등에 있어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해당 기관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공동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침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침해 단속에 상호 협조를 할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에 대한 법률 상담 지원¹⁰⁶⁾ 등 구체적인 우리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104) 文化庁, 海外における著作権の保護について(<https://www.bunka.go.jp/seisaku/chosakuken/kaizokuban/>).

105) 文化庁, 相談窓口(<https://www.bunka.go.jp/seisaku/chosakuken/kaizoku/contact.html>).

106)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태국사무소를 통하여 불법 사설서버를 확인하고 태국지식재산국(DIP)에 사법조치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제페토의 소 제기 절차를 지원한 바 있다.

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

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에 기인하기도 한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현지에서 K-콘텐츠의 침해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에 대해 저작권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 사후 대응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저작권 침해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이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의 시사점으로 도출한 바와 같이 해외 소재 유관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각 국가에서의 저작권 보호 교육을 실시하거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추진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러한 교육이나 인식제고를 각 국가 또는 담당기관과 함께 진행한다면 그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영국 지식재산권청이 발표한 새로운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전략에서도 저작권 인식 제고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것, 중국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이 주요 저작권 침해 사건을 선정·발표했던 것, 일본 문화청이 저작권 침해 대책 핸드북을 발간하고 상담창구를 개설한 것 등도 모두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국경을 넘나들며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문제의 경우, 주요국의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함께 대응한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 필요해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각 국가나 저작권 담당기관과 협업하여 저작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먼저 저작권 교육의 경우 국가별로 진행되는 다양한 저작권 교육 활동을 확인한 다음, 그 과정에 우리 저작권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추가할 필요가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의 저작권 교육에 대한 특화된 교육 커리큘럼과 해외 국가의 현지 사정에 맞는 교육 자료 구성, 그리고 국가별 저작권 교육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체계나 경험이 충분히 도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홍보는 각 국가별로 추진하는 저작권 보호 캠페인이나 주요 대학에서의 저작권 보호 교육 과정을 파악하여 이를 통해 우리 저작권

보호에 대한 홍보를 같이 병행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향력이 큰 주요 미디어를 통해 저작권 보호 광고나 홍보를 추진하는 것도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불법 사이트에 대한 단속 시스템 구축

해외 국가 또는 담당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당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점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또한 각 국가별 지식재산권법 체계나 시스템, 사회적·문화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준비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점이 불법복제물 자동 추적 시스템 등을 통한 온라인 추적,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이라는 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해당 기술의 이전이나 전수 등을 바탕으로 한 국가별 시스템 정비에의 협력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전예방이 중요함은 당연하지만, 일단 침해가 발생하게 되면 신속하고 정확한 단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특히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는데, 이러한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지 저작권 교육이나 홍보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단속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주요 국가별로 저작권 단속 시스템의 현황을 파악한 다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단속 시스템의 정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제3절 외국 권리자단체

1. 저작권 관련 현황 및 사례

가. 소프트웨어연합(BSA: Business Software Alliance)

상용 소프트웨어 제조사들을 대표하기 위해 1988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설립한 조합으로서 국제지식재산권연맹(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소속

이다. 주요 활동은 연합 회원들이 제작하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침해 방지를 시도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Business Software Alliance)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이 단체는 2012년 10월 단체 명칭에서 '비즈니스'라는 표기를 제거하였고 자칭 "BSA | The Software Alliance"로 표현하고 있다.¹⁰⁷⁾

각국 정부를 대상으로 세계 시장에서 전 세계 소프트웨어 업계를 대변하고 옹호하는 선도적 연합체로서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30개국이 넘는 국가들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BSA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¹⁰⁸⁾ 첫째, 전 세계의 주요 관련사와 협력하여 사용권 라이선스가 없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초래되는 보안 위험과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의 이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회원사를 지원하는 교육 및 인식 제고 서비스가 있다. BSA는 적법한 소프트웨어 활동 확산을 위해 태국 경제범죄수사국(ECD), 국제상공회의소(ICC), 멕시코의 노동 역량 표준화 및 인증에 관한 국가자문위원회(CONOCER) 등과 협력하여 적법한 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¹⁰⁹⁾ 둘째,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억제하는 활동을 한다. 이를 위해 침해 사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내부적인 조사 및 검토를 거친 다음 법적 조치를 통해 최종적으로 라이선스가 없는 소프트웨어의 합법화를 추진한다.¹¹⁰⁾ 셋째, 검색 엔진, 시장 및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목록과 제품을 찾아 제거하는 글로벌 인터넷 단속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즉, BSA는 매일 50개 이상의 유명 시장과 경매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검토하며, 또한 P2P(peer-to-peer), 사이버 락커(cyber-lockers), 직접 다운로드 사이트(direct download sites) 등의 파일 공유 사이트를 모니터링하여 소프트웨어를 식별 및 제거하고 침해 소프트웨어에 대한 링크를 검색한다.¹¹¹⁾

이러한 업무를 하는 BSA는 회원 기업의 소프트웨어 수익, 그리고 성공적인 저작권 침해 방지를 통해 소송 합의를 통한 이득에 기반하여 기금 지원을 받는다.

107) https://ko.wikipedia.org/wiki/%EC%86%8C%ED%94%84%ED%8A%B8%EC%9B%A8%EC%96%B4_%EC%97%B0%ED%95%A9.

108) <https://www.bsa.org/kr/gyujeong-junsu-sollusyeon>.

109) <https://bsacompliancesolutions.org/education-awareness/>.

110) <https://bsacompliancesolutions.org/end-user-enforcement/>.

111) <https://bsacompliancesolutions.org/global-internet-enforcement/>.

나. 미국영화협회(MPA)

미국 5대 주요 영화 스튜디오(월트 디즈니, 파라마운트, 소니픽처스, 유니버설, 워너브라더스)와 넷플릭스가 참여하는 무역협회로서 1922년 MPPDA(Motion Picture Producers and Distributors of America)로 설립되었으며, 1945년 MPAA(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후 2019년부터 현재의 명칭(Motion Picture Association)을 이용하고 있다. MPA는 창의적인 콘텐츠가 제작, 유통, 보호될 수 있는 정책 수립, 저작권 보호, 기술 개발 및 도입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1968년 CARA(Code and Rating Administration)를 설립하여 자발적인 영화 등급 시스템을 운영하고,¹¹²⁾ 2017년 저작권 보호 전문조직인 ACE(Alliance for Creativity and Entertainment)를 발족해 글로벌 저작권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¹¹³⁾ MPA 소속 6개 기업은 세계 영화 및 비디오 시장의 77%,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시장의 45%를 차지하고 있다.¹¹⁴⁾

우리나라와의 최근 연계 활동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4월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MPA 건물에서 MPA와 공동으로 '글로벌 영화콘텐츠 리더십 포럼'을 개최했다. MPA 찰스 리브킨 회장의 초청으로 진행된 행사에는 MPA 소속의 파라마운트·워너브라더스디스커버리·NBC유니버설·소니픽처스·월트디즈니·넷플릭스 6개 사, 한국의 CJ·SLL·왓차·에이스토리·래몽래인·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 에이트 6개 사 등 12개 한미 주요 영상 콘텐츠 기업 리더들이 참석했으며, 디즈니·파라마운트·넷플릭스 등은 2023년 45편 이상의 한국 콘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 계획을 설명하고, K콘텐츠 업계·창작자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포럼에 이어 한국콘텐츠진흥원·영화진흥위원회는 넷플릭스와 K콘텐츠의 미래를 이끌 청년인재 육성과 K컬처 확산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기업은 한국 콘텐츠 제작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교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한다. 넷플릭스는 현장 수요에 맞는 글로

112) WelCon, 미국 영화협회(<https://welcon.kocca.kr/mobile/ko/organ-support/101>).

113) MPA 홈페이지, WHO WE ARE(<https://www.motionpictures.org/who-we-are/#our-history>).

114) 이현경 기자, “[국민방미]넷플릭스·디즈니·파라마운트, 올 K콘텐츠 45편에 제작 투자”, 2023. 4. 28. 뉴스핌 기사(<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428000377>).

별 수준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국내 콘텐츠 제작산업 내 교류 기회 확대 등 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후원한다. 이에 발맞춰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영화진흥위원회는 인력 양성 과정을 지원해 고품질 콘텐츠를 제작할 후반작업 전문인력 등 OTT 환경을 선도할 융합형 전문 인력과 신진 영화 제작인력을 향후 5년간 2000명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¹¹⁵⁾

한편,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23년 7월 3일 MPA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글로벌 저작권 보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는데, 국정과제 일환으로서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와 합법 시장 보호를 위한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디지털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양자 간 정보 공유, 불법복제 방지 행사 공동 개최, 침해 동향 공유 및 해결방안 논의를 위한 양자 간 회의 개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인식 제고 공동 노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¹¹⁶⁾

다. 아시아비디오산업협회(AVIA)

아시아비디오산업협회(이하 AVIA)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비디오 산업 및 생태계를 위한 협회로서 구성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통해 영상산업을 더욱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AVIA는 미디어의 글로벌 동향을 이해하고 특히 아시아 비디오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난 2020년 10월 15일에는 여론조사 기업인 유고브(YouGov)와의 발표자료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내 8개 국가를 대상으로 불법 웹사이트 접속 빈도수가 가장 높은 순위 집계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¹¹⁷⁾

AVIA가 담당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¹¹⁸⁾

- 업계를 하나로 묶어 모두가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과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아시아 태평양 전역의 규제 기관 및 정부 기관과의 협의와 업계를 대변

115) Ib.

116) 이은정 기자, “한국저작권보호원-미국영화협회, 저작권 보호 업무협약”, 2023. 7. 3. 연합뉴스 기사(<https://www.yna.co.kr/view/AKR20230703140300005>).

117)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센터뉴스, 마닐라사무소, 제2020-079호.

118) AVIA, What we do(<https://avia.org/about/>).

- 비디오 불법 복제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유형적이고 측정 가능한 조치를 개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조직과 협력
- 다양한 시장의 개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비디오 산업 기술 개발에 대한 업계 최고의 정보와 인텔리전스를 제공
- 지역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모든 아시아 시장에서 강력한 멤버십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시장에서 활발하고 정기적인 활동을 함

라.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는 전 세계 70여개 국가의 8000여개 음반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세계 음반 업계의 이익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벨기에(유럽 사무소), 중국(중화권 사무소), 싱가포르(동남아시아 사무소), 미국(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사무소), 케냐(사라하 이남 아프리카 사무소), 아랍에미리트(중동 및 북아메리카 사무소)에 지역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스위스의 취리히에 본사, 영국의 런던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매년 글로벌 음악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2022년 한해 전 세계 음반 산업의 동향을 조사한 ‘글로벌 음악 보고서 2023’을 2023년 3월 21일에 발표하였다. 2022년 전 세계 음반 산업은 2021년 대비 9% 성장한 262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8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스트리밍 서비스의 매출 증가가 전 세계 음반 산업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 구독 스트리밍 서비스 매출은 전년 대비 10.3% 증가한 127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 세계 음반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¹⁹⁾

마. 저작권침해방지연맹(FACT)

영국의 FACT(Federation Against Copyright Theft)는 회원의 지식재산권을

119) 유현우,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글로벌 음악 보고서 2023’ 발표”, 저작권 동향 2025 제5호,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elcon.kocca.kr/cmm/fms/CrawlingFileDown.do?atchFileId=FILE_21a19612-5036-4ae5-bad0-f68aac5ca496&fileSn=1).

보호하기 위해 1983년 설립된 단체로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에서의 실사, 조사, 포렌식 등을 수행하며, 관련 민형사사건에서의 증거 수집을 돕거나, 사인소추(기소) 업무 등을 수행, 대행하는 영국의 단체이다. 홈페이지 안내 자료에 의하면 FACT는 DUE DILIGENCE, INVESTIGATIONS, IP PROTECTION, DIGITAL FORENSIC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¹²⁰⁾ 이중 IP PROTECTION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조사 및 디지털 포렌식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 집행 기관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영국에서 가장 크고 세간의 이목을 끄는 지적 재산권 및 불법 스포츠 스트리밍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다.¹²¹⁾

주요 업무 내용¹²²⁾

- 모든 유형의 온라인 불법 이용 적발 - 방대한 양의 불법 영화, TV, 스포츠 및 다른 매체의 배포에 집중
- 영국 내에서 운영되는 조직적인 범죄 네트워크들이 불법 DVD, 디코더, 장치 등의 모방품 배포와 판매로 불법 이익을 발생시키는 제품들에 대한 단속
- 영화의 불법녹화와 이를 온라인상으로 배포하는 조직을 적발하고, 불법배포를 예방(90%가 넘는 위조 버전의 영화가 녹화된 영화의 복제본으로부터 비롯됨)
- FACT는 경찰, 공정거래 당국, HM Revenue & Customs, 영국 국경당국, National Crime Agency(국가범죄기구) 및 다른 영국 및 세계 기구와 협력. 또한 다른 산업 집행 기관들과도 밀접한 연관

2022년 7월 FACT(저작권 침해 방지 연맹, Federation Against Copyright Theft)는 West Midlands 및 Warwickshire의 영국 경찰과 협력하여 영국에서 불법 IPTV 구독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한 중단요청 통지를 전달하였다.¹²³⁾ 이 통지는 불법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러한 전달조치는 수신자에게 불법 IPTV 구독서비스를 제공한 자임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별도의

120) <https://www.fact-uk.org.uk/>.

121) <https://www.fact-uk.org.uk/services/intellectual-property-protection/>.

122) 문화체육관광부, 각주 92, 110면.

123) <https://www.fact-uk.org.uk/fact-targets-suppliers-of-illegal-streaming-services-across-west-midlandsand-warwickshire/>.

민형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고지하여 추가 침해를 방지하게 한다. 이러한 통지를 받은 수신자들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조치일 수는 있지만, 반대로 침해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서약 및 회신 기회를 수신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FACT는 성명서에서 규모를 떠나 이러한 불법행위는 영국과 전 세계의 방송사 및 권리자에게 산업 및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다는 전제하에, 최근의 중단요청 통지조치는 비교적 작은 규모로 활동하는 불법행위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수준의 행위자에게는 (처벌보다는)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해당 불법행위에 다른 사람이 관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조치의 주된 목적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FACT는 이러한 불법 스트리밍 제공 등의 권리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범죄의 규모를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비례적인 조치가 취해지도록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¹²⁴⁾

바. 브레인(BREIN)

미국 대형 영화사들을 비롯한 다양한 TV 방송국들과 영화사들을 대리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저작권 침해 방지 단체이다. 브레인(Bescherming Rechten Entertainment Industrie Nederland, BREIN)은 영화 협회 MPA, 국제 음악 제작자 및 배급자 협회 IFPI 및 그 회원사와 같은 국제 지부 조직뿐만 아니라 제작자, 출판사, 작곡가, 텍스트 작가, 작가, 사진 작가를 대표하는 10개 국가 지부 조직 및 16개 수집 협회를 대표한다. BREIN은 정관 및 네덜란드 민법 3:305a에 따라 단독 원고로서 참가자 및 기타 이해 당사자를 대신하여 법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¹²⁵⁾

이와 관련하여 BREIN은 지난 2009년 네덜란드에서만 월간 이용자가 100만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던 파일공유 웹사이트 '미니노바(www.mininova.nl)'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고,¹²⁶⁾ 2016년에는 '자유자막재단(Stichting Laat Ondertitels Vrij)'이 BREIN을 상대로 TV 프로그램 제작자와 영화 제작사만이 자사의 TV 프로그램과 영화의 자막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에 제기한 것

124) 한국저작권보호원, 2022 하반기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Vol.38, 2023. 2., 39면.

125) <https://stichtingbrein.nl/english/>.

126)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373403.html>.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2017. 4. 4. 폐쇄된 것으로 확인된다(<https://www.mininova.org/>).

에 대하여, 법원은 팬이 허락 없이 TV 프로그램과 영화 자막을 만드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이며 TV 프로그램과 영화의 자막은 저작권자의 허락하에서만 제작되어 배포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다.¹²⁷⁾

사. 국제반위조연합(IACC)

IACC(International AntiCounterfeiting Coalition)는 2023년 11월 기준으로 전세계 40개 이상의 국가에 소재하는 250개 이상의 기업과 기관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IACC는 정부 및 민간 부문과 함께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이를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집행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자를 기소하며 위조 및 불법 복제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국내외 법 집행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을 개발 및 실시하고, 미국과 해외의 지식재산권 집행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예를 들어, IACC는 2009년 미 무역대표부(USTR)에 낸 연례 의견서를 통해 한국이 공정거래법상의 부당경쟁방지법을 좁게 해석해 미키 마우스, 톰 앤드 제리 등 외국 유명상표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을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한 바 있음¹²⁸⁾), 지식재산권 집행 표준 개선을 목표로 하는 지역 및 국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¹²⁹⁾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을 두고 있으며, IACC의 회장은 미국 세관이나 특허상표청에서의 근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³⁰⁾

IACC는 위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위조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서 교육과 훈련을 가장 중요하게 보아, 미국의 세관·경찰·지방 검찰관을 대상으로 한 훈련 세미나(IP Training Program)을 실시한다.¹³¹⁾

127) 박경신, “[네덜란드] 법원, 팬이 허락 없이 TV 프로그램과 영화 자막을 만드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이다”, 저작권 동향 2017년 제8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 5. 19.

128) 김수길 특파원, “미국 국제위조상표방지연합, 한국 감시대상국 건의”, 1998. 2. 26. 중앙일보 기사(<https://www.joongang.co.kr/article/3608681#home>).

129) <https://www.iacc.org/membership/members>.

13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위조상품 억제를 위한 정책방안을 중심으로 -, 2006. 11., 99면.

131) <https://www.iacc.org/training/us>. 이러한 IACC의 교육은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법에 의한 집행 기관에 대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세미나를 개최한다(컴퓨터프로그램조정위원회, 「IT지재권 연구자료집」, 조2006. 12., 183-184면 참고).

아. 중국판권협회(CPCC)

중국판권협회(中国版权协会)는 중국 판권¹³²⁾ 관련 단체와 개인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전국성, 전문성, 비영리성 사회조직으로 사회단체 법인자격을 가지고 있다. 협회의 정관 제2장 제7조¹³³⁾에서 협회의 주요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판권협회는 침해 사건의 구체적인 실무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매년 국가판권국의 위탁을 받아 영향력 있는 판권 관련 사건 및 침해 사건을 선정하고 있다.

관련하여 중국판권협회, 중공후베이성위원회 선전부(中共湖北省委宣传部) 지도, 후베이성판권보호협회(湖北省版权保护协会), 중남대학교 인터넷문학연구원(中南大学网络文学研究院), 자산재경전매체(知产财经全媒体)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2회 '판권산업 혁신과 지식재산권 보호 동호포럼'이 2023. 6. 16. 우한(武汉)에서 개최되어 판권산업 발전과 보호 관련 문제를 함께 토론하였고, 이 회의에서는 2022년도 중국 인터넷 문학 판권 보호 전형적인 사례(2022年度中国网络文学版权保护典型案例)를 발표하였다.¹³⁴⁾

자.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

CODA(Content Overseas Distribution Association)는 해외에서의 일본 정품 콘텐츠 유통을 장려하고 불법 복제물을 통제하기 위해 경제산업성 및 문화청의 요청에 의해 2002년 설립된 민간단체 기구로서,¹³⁵⁾ 최신 저작권 침해 대책의 정보 교환, 단속 기관과의 네트워크 정비,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 등을 통해 원활한 해외 저작물 보호와 협력관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먼저 국제제휴·국제집행 관련 활동으로서 음악, 영화 등 일본 콘텐츠 상품의 패키징이나 영상 내에 부착하여 해적판 유통에 대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CJ(Content

132) 중국 저작권법 제62조 이 법에서 저작권은 판권이다.

133) <https://www.cscn.org.cn/generalization?type=3>.

134) https://www.sohu.com/a/708318992_100082943.

135) <https://coda-cj.jp/enlightenment/>; 최진원, “일본의 해외저작권 보호 정책”, 가천법학 제3권 제1호,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244면

Japan) 마크 사업,¹³⁶⁾ 2005년부터 미국 MPA와 협력하여 일본 콘텐츠의 해적판 단속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사업,¹³⁷⁾ 전세계 여러 지역에서 불법 스트리밍 장비 (ISD)에 관한 정보와 상담을 받고 일본 콘텐츠의 불법적 이용에 대한 적발 등 조치를 취하는 업무,¹³⁸⁾ 외국 수사당국과 협력하여 해적판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증거 확보 등의 활동을 하는 국제집행 프로젝트(CBEP: Cross-Border Enforcement Project)¹³⁹⁾가 있다.

또한 WIPO Alert(<https://www.wipo.int/wipo-alert/en/>)에 참여하여 해적판 사이트 목록을 제공하고, 해외의 일본 콘텐츠 침해 사이트와 관련된 광고 역제를 위해 홍콩 및 대만 IWL(Illegal Website List)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Google의 TCRP(Trusted Copyright Removal Program) 파트너 승인을 받아 대량으로 검색결과 표시 중지 신청을 실시하고, Bing, Baidu에 대해서도 검색 결과 표시의 중지 요청 등의 대처를 하고 있다.¹⁴²⁾ 그 이외에도 합법적인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정비를 목표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¹⁴³⁾ 중국·홍콩·대만 등 해외의 단속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일본 콘텐츠의 특징이나 해적판 식별방법에 대한 지식 등을 제공하는 트레이닝 세미나를 개최한다.¹⁴⁴⁾

136) CODA, 一般社団法人コンテンツ海外流通促進機構, 2021(https://coda-cj.jp/wp/wp-content/themes/original/assets/pdf/CODA_jc_hp.pdf).

137) CODA, 共同エンフォースメント(<https://coda-cj.jp/activity/enforcement/>). 공동 권리행사 사업에 따른 2023. 3. 기준 누적 단속 실적은 아래와 같다.

누계실적 (2005. 1.~2023. 3.)	단속건수 (건)	압수 CD/DVD(장)	압수 데이 터(파일)	제보자(명 수)
홍콩	1,318	1,615,895	210	1,275
중국	13,820	4,395,508	0	304
대만	2,215	981,604	15,949	2,233
합계	17,353	6,992,467	16,159	3,812

138) CODA, 각주 137.

139) CODA, CBEP: Cross-Border Enforcement Project(<https://coda-cj.jp/en/activity/international/>). 이러한 CBEP에 의한 성과로, 일본 애니메이션 해적판 사이트 'B9GOOD'(중국) 폐쇄 및 운영자 체포(<https://coda-cj.jp/en/news/282/>), 브라질 불법 애니메이션 사이트 단속(<https://coda-cj.jp/en/news/289/>) 등이 있다.

142) CODA, 侵害に対する間接的な対策(<https://coda-cj.jp/activity/online/>; <https://coda-cj.jp/en/activity/online/>).

143) CODA, 委員会(https://coda-cj.jp/activity/iinkai_cj/; https://coda-cj.jp/en/activity/iinkai_cj/).

144) CODA, 広報啓発活動(<https://coda-cj.jp/activity/enlightenment/>; https://coda-cj.jp/en/wp-content/themes/original/assets/pdf/CODA_ec_hp.pdf).

한편, CODA는 문체부, 저작권보호원, COA와 MOU 체결 및 협력을 진행하고, 최근에는 한-일 저작권 세미나에서 문체부 및 저작권위원회를 대상으로 위 CBEP 성과 등 주요 대응 노력을 공유하는 등¹⁴⁵⁾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

가. 권리자단체와의 협력 방안 구축을 위한 고려 사항

앞에서는 다양한 외국 권리자단체들의 주요 업무 내용과 활동 현황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저작권의 해외에서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이러한 외국 권리자단체와의 협력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아니어서 강제적인 법적 조치를 직접 취하지 못하고 침해 단속이나 법적 조치에 대한 조력 등 보조적인 역할이 중심이 되는데, 그와 같은 권리자단체의 특징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협력 방안 구축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각 권리자단체의 주요 업무 내용들을 중심으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같이 참여하는 방안과 새로운 업무 내용을 공동으로 만들어서 추진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겠다.

권리자단체들은 회원들의 저작권 등 권리를 충실하게 보호·대변하고, 침해 행위에 공동대응함으로써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유사한 반면, 해당 권리자단체의 소속 국가 및 주된 업무 영역 등에 있어 차이도 있다. 그리고 국가적 지원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 추진에 있어 재정적인 문제가 고려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권리자단체의 특징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인데, 각 권리자단체의 주요 업무 내용을 중심으로 상호간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협력 방안이라는 것은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서, 상대방 권리자단체가 필요로 하는 니즈가 무엇인지, 상호간 협력 방안에 대한 공통된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국가나 공공기관이 아닌 권리자단체라는 점에서 각 권리자단체가 필요로 하는 니즈는 다양할 수밖에 없을 것임). 그러한 점에서 (1) 각 권리자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애로 사

145) CODA, Participated in Japan-Korea Copyright Seminar organized by Agency for Cultural Affairs of Japan(<https://coda-cj.jp/en/news/362/>).

항 파악, (2) 상호간의 협력 가능 사항 도출(MOU 체결), (3) 협력 사항들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 구축 등의 절차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리자단체와의 협력 방안 제시는 각 권리자단체별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협력 방안을 살펴보는 것과 권리자단체와의 일반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면서 각 항목별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권리자단체를 제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후자의 방법으로 협력 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보 공유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협력 방안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보 공유이다. 즉, 각 권리자단체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권리자단체별 담당 업무 내용에 맞는 저작권 침해 관련 정보를 상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저작권 보호 활동을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데, 각 권리자단체별 취합 정보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정보가 공유될 수 있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보 공유 방법으로는 (1) 사안이 확인될 때마다 상대방에게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여 공유하는 방안, (2) 월별, 반기별, 분기별 등 일정 기간별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 (3) 저작권 침해 정보를 공통으로 운영·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사이트를 공동으로 개설·운영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3)의 형태가 가장 실효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기술적 문제, 비용적 문제, 시스템적 문제 등도 있을 수 있으므로, (2)의 형태로 시작하여 (3)의 형태를 구축해 나가는 것도 타당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

권리자단체는 회원사들의 저작권 등 권리가 침해된 것인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꾸준히 모니터링하거나 회원사로부터 침해 제보 등을 받겠지만,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에는 한계도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¹⁴⁶⁾을 통한 온라인 단속에 강점이

146) <https://www.kcopa.or.kr/lay1/S1T10C224/contents.do>.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속 시스템의 장점을 활용하여 각 권리자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기술의 이전이나 공동 활용 등에 대해서는 시간적, 비용적, 기술적 어려움도 예상되기에 단기간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상호간 기술 공유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속 시스템의 공동 운영 방안까지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절차 진행의 공동 조력

각 권리자단체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소속 회원사의 저작권 등 침해행위에 대해 단체의 입장에서 적극 대응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의 BSA는 연합 회원들이 제작하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침해 방지를 시도하는 것이 주요 활동이고, 영국의 FACT는 영국 경찰과 협력하여 침해 행위 중단에 대한 요청을 직접 전달하기도 하였으며, 일본의 CODA는 외국 수사당국과 협력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권리자를 대신하여 침해 당국에 형사 고발을 진행하고 또한 2005년부터 MPA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단속을 하기도 하였다. 그 이외에 침해 대응 조치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권리자단체인 경우에도, 소속 회원의 저작권 등이 침해되었을 때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그 중단을 요청하며,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는 역할이 부정될 이유는 전혀 없다. 같은 이유에서 회원사의 권리 보호 절차에 한국저작권보호원이 협력을 한다면 권리자단체가 거절할 이유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각 권리자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침해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 침해 행위자에 대한 경고 등 법적 조치, 권리자의 소송 제기나 형사 고소 등에 대한 법률적 지원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의 공동 진행

권리자단체는 결국 각 회원사들의 저작권 등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해 주기 위해 설립되었고, 회원사 권익 보호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한국저

작권보호원이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에 동참한다면 권리자단체에서 이를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저작권 교육의 경우 각 권리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그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해야 하겠으나, 각 권리자단체의 홈페이지에 교육 자료를 게시하여 누구나가 교육 내용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 회원사들에게 정기적으로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는 것(해당 교육을 이수한 회원사에 대해 단체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 가능), 권리자단체 또는 소속 회원사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서 본 사례에서 일본의 CODA가 2005년부터 중국·홍콩·대만 등의 단속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일본 콘텐츠의 특징이나 해적판 식별방법에 대한 지식 등을 제공하는 트레이닝 세미나를 개최하고, 단속기관과의 제휴 강화를 통한 단속 실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홍보 활동의 공동 진행이다. 저작권 교육보다 오히려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홍보 활동을 위해서는 먼저 각 권리자단체별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그러한 활동 내에서 우리의 저작권 홍보 활동을 함께 진행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겠다. 또한 권리자단체가 그와 같은 홍보 활동을 하고 있지 않거나, 홍보 활동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구체적인 홍보 활동 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해 볼 수도 있겠다.

저작권 교육 및 홍보 활동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아주 중요하고 유의미한 활동임에 반해, 각 권리자단체별 주요 업무 내용이나 활동 상황에서는 잘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아마도 권리자단체라는 특수성에 따라 그와 같은 활동은 각 국가나 공공기관에 맡기고, 권리자단체는 세부적인 회원사의 권리 보호 활동에 치중하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점에서 교육 및 홍보 활동에 대한 협력 제안은 각 권리자단체에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4장 글로벌 저작권 보호 지원 전략

제1절 해외 저작권 보호 지원 필요성

1. 글로벌 저작권 보호 기반 구축의 필요성

앞에서는 해외 저작권 침해 발생 사례 및 현황을 확인해보고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필요성, 그리고 각 기관들과의 협력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검토 내용들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한 관점에서 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은 글로벌 저작권 보호 기반 구축의 필요성이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가별 저작권 보호 법제의 통일화 노력이다. 저작권의 보호 및 침해에 대한 조치는 결국 저작권법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는바, 국가별 저작권법에 차이가 있는 경우 해외에서의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정되는 것이 해당 국가에서는 침해가 되지 않거나 또는 침해행위이지만 그에 대한 구제수단에 있어 우리나라보다 미흡한 경우 결국 저작권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¹⁴⁷⁾ 물론 국가별 저작권법에 차이가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무형의 지적창작에 대한 보호로서 국제적으로 유통되고 활용되는 저작권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해당 법 규정의 통일화는 충분히 설득력 있고 또 필요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저작권 법제를 충실히 분석한 다음 우리나라 법과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그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의 통일화를 위한 국가 상호간 협의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앞서 전문가 의견(제2장 제3절 현황 분석 및 시사점)에서와 같은 ‘유관기관에 국가별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도 함께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상황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대응 시스템을

147) 앞서 본 브라질의 현황 참고.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담당기관(컨트롤타워)을 명확히 하고, 이 기관을 중심으로 해당 국가와의 공동 대응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먼저 담당기관(컨트롤타워) 문제를 살펴보면, 현재는 우리나라의 관련 기관이나 권리자(단체)가 해당 국가 또는 우리나라의 유관기관에 침해 상황 및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요청하여 권리 보호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본 사례에서 한국 음원의 중국어 번안곡 사용행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음저협이, ‘오징어 게임’ 불법 유통 사안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가, 제페토 사건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보호원에 각각 신고 등 조치를 하여 권리 보호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은 권리사의 개별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으로 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총괄 또는 전담하는 담당기관과의 협력과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나라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응하는 전담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며, 업무 관련성이나 전문성, 해외 사무소의 유무 및 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담당기관(컨트롤타워)을 중심으로 하여 해외 유관기관과의 공동 대응 시스템 마련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앞서 2022년 11월 25일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양국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필리핀 판매체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필리핀 지식재산청과의 논의를 통하여 불법사이트 접속차단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충분히 타당한 조치라고 보인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시사점에서 세 번째로 제시한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도 이러한 측면에서 함께 다뤄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공동 대응 체계 구축에 있어 핵심 중 하나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방안 마련인데, 불법 사이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침해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는 결국 국가 상호간 법적, 제도적, 기술적, 시스템적 협력 체계 구축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 사이트나 매체 등에 대한 제재 이외에 위법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적 제재가 저작권 침해를 막는데 효과적인 방안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앞서 Z-Library 사건과 관련하여 “과거 리브젠 사건에서는 법원의 손해배상 및 금지명령이 내려졌으나 침해자들이 새로운 미러 사이트로 이전하여 법원의 명령이 유명무실해졌다. 그러나 온라인 불법 도서 플랫폼 운영자의 체포와 기소는 침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권리자들을 위한 유의미한 성과”라는 지적이 있었고,¹⁴⁸⁾ 또한 국내 최대 불법

148) 김형지·박운정, 각주 10, 7면.

복제 만화공유 사이트 '마루**'의 운영자 적발 및 사이트 폐쇄 사안에서도 경찰 등 정부 차원의 합동단속을 통해 분야별로 규모가 가장 큰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모두 검거되면서 콘텐츠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이 있었다.¹⁴⁹⁾ 이러한 점들이 공동 대응 체계 마련에 있어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시사점의 두 번째에서도 “침해 예방을 위한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 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들은 합법적인 사이트 이용에 대한 비용 부담 문제 또는 합법적 사이트 이용의 번거로움 등도 원인이 될 수 있겠으나, 주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한 것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국내에서의 저작권 침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¹⁵⁰⁾ 해외(특히 동남아 국가)에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것이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르나, 불과 몇십 년 전의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특이한 상황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국가에서의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유관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교육 및 홍보 방안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되었듯이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담당하는 여러 가지 지원제도들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기 때문에, 저작권 교육 및 홍보와 함께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담당하는 다양한 저작권 보호 관련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149) 최성욱 기자, “[경찰팀24/7] '마루마루' 잡자 '망가XX' 활개…불법복제 웹툰 끝없는 숨바꼭질”, 2019. 1. 11. 서울경제(<https://www.sedaily.com/NewsView/1VDZWE8R2Z>).

150) 최성욱 기자, 각주 155 기사(전문가들은 불법 콘텐츠 유통과 관련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불법 사이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운영진뿐 아니라 이용자 중 상당수는 불법으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해 정부 합동단속 결과 13개의 불법 사이트 운영자 가운데 고교생과 대학생 등이 다수 포함됐고 심지어 가족이 사이트 운영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폐쇄된 밤토끼·마루마루 등을 다시 부활시켜달라는 국민청원도 버젓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다. 불법 저작물에 따른 처벌 수위도 낮은 편이다. 현행법상 저작권 위반 사범에게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미국이 50만달러(약 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비해 턱없이 적다. 불법유통으로 인한 원작자의 피해는 큰 데 비해 피해를 보상받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글로벌 저작권 보호 기반 구축 사업의 필요성 및 우수 개발협력사업(ODA) 사례를 살펴본다.

2. 글로벌 저작권 보호 기반 구축 사업의 필요성

한류 콘텐츠의 지속적인 해외로의 확산과 이에 따른 열풍으로 전 세계에서 K-문화의 소비가 상승하고 있다. K-콘텐츠 글로벌 열풍으로 우리 콘텐츠에 대한 해외에서의 수요는 앞으로도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다양한 OTT 플랫폼이 나타남과 더불어 유동적인 미디어 제작 환경이 조성되면서 다양한 콘텐츠 제작도 가능해지면서, 콘텐츠가 주목을 받는 세상이 되었다. 특히, OTT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가 제작되고, 전 세계로 유통되면서, 우리 콘텐츠들은 넷플릭스(Netflix), 디즈니플러스(Disney+), 왓챠(WATCHA) 등 국내외의 다양한 OTT 플랫폼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처럼 해외로 수출된 국내 콘텐츠들의 인기는 더 많은 콘텐츠를 제작·수출하게 하고 있으며, 우리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또한, 한류 콘텐츠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이미지도 달라지고 있다. 2023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국민 1,011명을 대상으로 ‘한류 확산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5%가 한류 확산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답변하며,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가 상승되었다고 판단하였다.¹⁵¹⁾ 또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해외 26개국 한국문화콘텐츠 경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해외 한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연상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K-pop(14.3%), 한식(13.2%), 한류스타(7.4%), 드라마(6.6%), IT제품/브랜드(5.6%) 순으로 응답한바, 과거 한국의 대표 이미지로 연상되던 IT제품이나 브랜드를 제치고 K-콘텐츠가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¹⁵²⁾ 이처럼 지난 20년간 해외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진 한류의 영향력을 기반으로 향후 K-콘텐츠는 해외 국가에서의 수요가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국내 콘텐츠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한편으로는 불법유통 문

151) 전경련, “한류 확산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2023. 4. 17. 보도자료(www.fki.or.kr).

152) <http://datapress.kr/news/view.php?no=788>.

제도 계속하여 높아지고 있다. 해외에서의 K-콘텐츠 불법 유통 문제는 콘텐츠 관련 기관 및 K-문화 내의 이슈에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상위 이슈로 나타났다.¹⁵³⁾ 이에 해외국가의 저작권 침해가 증가함에 따른 대응과 예방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조사 서비스의 일환으로 ‘불법 시장 및 침해 현황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해외 현지 네트워크 연결 또한 필요하다. 나아가 국가별 제도와 상황이 상이함에 따라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국가 선정을 통해 해당 국가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석 후 이에 따른 전략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2019년 9월 영국의 리서치 기관인 YouGov가 조사하여 발표한 아시아 국가별 ISD, 불법 스트리밍 이용자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특히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서 K-콘텐츠의 저작권 보호가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¹⁵⁴⁾



[그림 4-1] 국가별 ISD, 불법 스트리밍 이용자 현황
(왼쪽: ISD, 오른쪽: 불법 스트리밍)

특히, SNS를 비롯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등 다양한 전달 매체 등이 등장함으로써 저작권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영상저작권보호협약체’에 의하면 불법 스트리밍으로 인한 저작권 피해는 무려 4조 9000억 원으로 피해액 또한 매우 크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작권 피해가 발생하는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과 대책이 부재하여 해외국 대상의 저작권 보호 전략이 시급한 상황이다.

153) 한국저작권보호원, 각주 3, 14면(해외에서의 K-콘텐츠 불법 유통 문제는 2020년 8위, 2021년 7위를 거쳐 2022년 4위로 지난 3년간 꾸준히 상위 이슈로 선정됨).

154) 2020 KCA Media Issue & Trend, 트렌드 리포트, 동남아시아의 콘텐츠 불법 유통 현황과 규제 2월호, 76면.

따라서 해외 국가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여 저작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보호가 가능한 국가를 선정하고 이에 관한 예방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해외국가에서 발생하는 한류 콘텐츠의 침해를 축소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이 중요하다. 국내의 경우 지역별로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저작권 침해 합동단속으로 ‘K-콘텐츠 불법유통’을 막고자 집중 단속기관과 다양한 신고·포상 제도를 구축하였으나 해외의 경우 국가 주권의 문제와 법적·제도적 차이, 그리고 시스템 부재로 인해 적극적인 보호 활동이 어려운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11개국에 17개의 해외지식재산센터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해외지식재산센터는 11개국에서 17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담인력은 23명에 불과해 인력이 부족하며, 국가들의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정책은 각국별로 다양하여 현지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애초에 이러한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 있도록 글로벌 저작권 보호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우리 콘텐츠의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접근은 사후적 침해대응과는 달리 해당 국가에서의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저작권 보호 제도나 기술 전파 등과 같은 글로벌 저작권 보호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의 접근을 의미한다.

이때, 우리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국가나 우리 콘텐츠를 많이 이용하는 국가 중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반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의 기반 구축 마련에 저작권 보호의 선도국으로써 우리나라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저작권을 보호하는 데 영향을 주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인기 있는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그들의 저작권 보호 제도나 기술 등의 선진화에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의 콘텐츠도 보호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저작권 보호에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것이다.

한편, 과거에 우리나라 역시 개발협력사업 수혜국으로 1960년에 석굴암 누수 문제를 유네스코 본부와 국제문화재 보존·복구 연구센터(ICCRUM)의 재정적 기술적인 부분에서 도움받아 해결한 경험이 있다. 이후 석굴암은 1995년 한국 최초로 유

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한국 문화의 가치가 제고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의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상생 협력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거 우리나라의 문화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먼저 살펴본바, 그 내용은 주로 소프트웨어 제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 성장과 문화산업 발전을 살펴봤을 때, 보호와 더불어 이들 국가들의 문화 성장을 지원하는 것 또한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관계부처들에서는 해외 국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에서는 문화동반자 사업(CPI: Cultural Partnership Initiative) 등을 통해 문화 분야에서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개발도상국의 문화·예술·문화산업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그들의 문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연수를 제공한 사례가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2022년부터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문화지원을 통한 문화 ODA를 수행한 바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베트남 ‘후에 황성’의 디지털 복원 사업과 북한 고구려 고분군 보존 지원사업, 라오스 공예 디자인 워크숍 등 문화 분야의 ODA 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 지역개발, 보건의료, 산업 및 에너지, 정보통신, 환경 및 여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의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바, 이러한 경험을 활용하여 해외 저작권 보호 기술전파 사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1〉 KOICA 문화분야 ODA 사업 현황

지역	나라	사업명	실시연도	예산
아시아	동티모르	독립기념관 건립	2001-2003	113.8만불
아시아	인도네시아	스포츠 교류센터 건립	2003-200	278만불
아시아	캄보디아	시엠립 우회도로 건설사업	2005-2006	160만불

지역	나라	사업명	실시연도	예산
중남미	과테말라	외교부 e-Library구축사업	2002-2003	38.3만불
아시아	베트남	호치민 정치아카데미 도서관 정보화 지원	2006-2007	142.5만불
중남미	엘살바도르	교육환경 개선 사업	2007-2008	53만불
동구·CIS	우즈베키스탄	세계경제외교대 도서관정보화 지원	2006-2007	85만불

아직까지 저작권 보호 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K-콘텐츠가 주로 소비되는 개발도상국 등을 대상으로 한 협력사업이 추진된 바는 없었지만, 지식재산 분야의 기반 구축의 사례로 특허청에서 사우디 지식재산청과 협력하여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었다(자세한 내용은 제4장 제1절 3. 지식재산 관련 우수 개발협력사업 사례 참고).

이처럼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문화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간 동반 성장을 유도하고 지원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K-콘텐츠가 주로 소비되는 개발도상국 등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보호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위반 및 침해는 발생했을 시 파급 효과가 크므로 침해에 대한 보호 이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 두 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글로벌 저작권 보호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저작권 보호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상생 발전 전략을 추진할 필요 있다.

3. 지식재산 관련 개발협력사업 우수 사례

가. 특허청·사우디아라비아의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사업’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는 2016년 국가성장전략인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지식재산 산업육성을 위해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사우디 지식재산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IP5(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에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특허청은 2019년 6월 사우디 지식재산청과 4대 분야로써 ① 국가 지식재산 전략 수립·실행, ② 특허 행정 정보시스템 개발, ③ 전문인력 양성 협력, ④ 지식재산 민원 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협력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22년 1월 특허청과 사우디 특허청 간에 전략적 지식재산 협력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하였다. 협정서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특허심사, 국가 지식재산 전략, 지식재산 교육(academy), 지식재산 정보화 등 양 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5개 분야 35개의 과제(project)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11명의 한국 지식재산 전문가들을 2년간 파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¹⁵⁵⁾

이중 ‘지식재산 통합 행정·정보 시스템 개발 협력’은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사우디에 특화된 지식재산 컨설팅 및 특허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저작권 등록 시스템의 기능을 포함시켜 특허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는 특허청에서 추진한 지식재산권 정보화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권 분야의 발전을 희망하는 대상국에 한국형 지재권 행정체계 기반의 지식재산권 정보화 컨설팅 및 특허행정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의 지식재산권 행정 정보화를 지원한다. ‘지식재산권 정보화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사업’은 분석, 설계, 개발, 유지보수의 단계로 진행된다.¹⁵⁶⁾

155) 특허청, “한-사우디, 지식재산협력 동반 관계(partnership) 협정 체결”, 2022. 1. 9. 보도자료(<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19395&sysCd=SCD02&aprchId=BUT0000029>).

156) 한국특허정보원 홈페이지, 지식재산 정보화 국제협력(<https://www.kipi.or.kr/EgovPageLink.do?link=/main/sub03/sub0305>).



[그림 4-2] 지식재산권 정보화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사업 프로세스

이 사업을 통해 특허청은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을 수출함으로써 사우디와 우호 관계를 형성하고 행정 한류를 주도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의 현지 보호와 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형 특허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림으로써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하고 해외진출에 다변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의 ‘지식재산 나눔사업’

지식재산 관련 개발협력 사업은 이미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으로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이하, 발명진흥회)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도모와 지식재산을 활용한 국제사회 기여를 위해 “지식재산 나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특허기술 중 최빈국의 상황 및 운영 관리 능력에 부합하는 적정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맞춤 개량하여 지역에 보급하는 사업이다.¹⁵⁷⁾ 이를 통해 최빈국 소득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하고, 사업화-권리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다.



[그림 4-3] 국제 지식재산 나눔 프로세스

157)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https://www.kipa.org/kipa/ip003/kw_culture_1601.jsp).

특허청과 발명진흥회는 이 사업을 통해 116개국에 30개의 적정기술을 개발하였고 25개의 브랜드를 구축하였다.

특허청의 “지식재산 나눔산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기술개발사업(KOPIA)과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개발도상국 현지에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센터를 설치하고 농업기술 전문가를 소장으로 파견하여 국가별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특허청과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과 지식재산 분야 융합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 개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개발사업(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이하 KOPIA)」과 특허청의 「지식재산 나눔사업」을 연계하여 개도국 농업인들에게 농업 생산물의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증대와 경제적 자립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지식재산 나눔사업은 국내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적정기술을 통해 개도국 현지 문제를 해결하고, 브랜드 전략을 통한 사업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지 소득증대와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년	국가/기술	주요 내용	활용 현황
'10	차드 (사탕수수 숫 제조)	○ 차드 정부의 벌목금지령으로 조리용 연료인 목재 수급이 어려운 차드에 숫 제조 기술 개발·제공	○ 굿네이버스 자원봉사자 파견, 주민 30여명이 매일 약 600개 숫 생산·보급('11. 5.)
	네팔 (흙건축)	○ 가격이 비싸 일반 주민이 구입하기 어려운 벽돌을 대신해 사용할 수 있는 흙건축 기술 개발·제공	○ 굿네이버스 후원금(1억원)으로 보육 센터 완공('12. 6.)
'11	캄보디아 (정수기)	○ 식수 문제로 수인성 질병이 빈번한 현지민을 위한 가정용 정수기 개발	○ 시제품 현지 테스트 이후 50대 현지 보급('12. 6.)
'12	과테말라 (조리용 스토브)	○ 호흡기질환의 원인이 되는 연기 발생은 감소시키고, 열효율을 증가 시킨 조리용 스토브 개발	○ 과테말라 지진 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적정기술 스토브 1,000~2,000대 추가 보급('14년~'16년, 굿네이버스)
	네팔 (대나무 주택개선)	○ 단열 효과가 부족해 여름겨울 온도차가 심한 대나무 주택의 단열 효과 향상	○ LG화학 기부금(1천백만원)을 활용하여 현지에 집짓기 후원(7채) ('13. 2.)
'13	필리핀 (오일 추출기)	○ Anao市 주민 소득향상을 위해 성능이 향상된 일량일량 오일 추출기 개발	○ 외교부 공공협력사업을 통한 기술 개선 및 보급 실시(5억원) ○ Anao市에 추출기 10대 보급
	파푸아 뉴기니 (워터펌프)	○ 관개 시설이 미비하여 농업용수 보급에 어려움을 겪는 파푸아뉴기니 주민을 위한 자전거 로프펌프 개발	○ 외교부 공공협력사업을 통한 기술 개선 및 보급 실시(5억원) ○ 3개 마을에 15대 워터펌프 보급
'14	가나 (벌통 및 채밀기)	○ 벌꿀 채취 효율 증대를 위한 벌통 및 수동식 채밀기 개발	○ 벌통(20대) 및 채밀기(3대) 보급 ○ 제작 매뉴얼 소책자 및 동영상(100개) 제작·보급 ○ 양봉 협회원(10명) 대상 교육워크숍
	베트남 (분산형 하수 처리장치)	○ 베트남 공기업(BUSADCO)과 국내 특허기술을 결합하여 친환경적이고 성능이 향상된 하수처리장치 개발	○ 분산형 하수처리장치 1기 제작 ○ 상업시설에 분산형 하수 처리장치 이전 설치
'15	몽골 (염료 추출· 염색기)	○ 천연염료 추출과 염색이 동시에 가능한 천연 염료 추출·염색기 개발	○ 현지 섬유연구소 및 양모협동조합에 추출·염색기 각 1대씩 보급 ○ 사용방법·유지관리 천연염색 교육 워크숍
	미얀마 (배수처리시 스템)	○ Pinlon 고등학교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수 시스템 구축 및 정비	○ 침투통 2대 설치 및 배수설비 구축
'16	인도네시아 (파홀리 오일추출기)	○ Aceh州 파홀리 오일추출·정체 및 발효장치 개발하여 소득증대 지원	○ 파홀리 아체 보호포럼과 협력 ○ 시아쿠알라타 등에 발효기 및 추출기 설치
	베트남(하수 기름분리장치)	○ Vung Tau 지역에 하수기름 분리장치를 개발, 베트남환경 개선·기술역량 제고	○ Vung Tau에 27개 유수분리기 보급
'17	우간다 (곡물건조기 제어기)	○ 태양광 스마트 제어 농산물건조기 개발·보급하여 농작물건조의 품질향상	○ Makerere대 농과대학에 1기 보급 ○ 농업적정기술 연구센터 개소('17.11) ○ 코이카 협력사업으로 확대
	스리랑카 (코코넛 기름추출기)	○ 콜롬보 지역의 코코넛오일 추출기를 개발·보급하여 코코넛오일의 품질향상	○ 오일추출기 3대 Vidatha센터에 보급 ○ 적정기술 연구센터 개소('17.12.)

[그림 4-4] 특허청의 적정기술 보급사례(158)

158) 지식재산위원회·경상국립대학교, 「지식재산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2023.

제2절 추진 전략

1. 지원 대상국 선정

우리나라는 그동안 신진경제국들과 다양한 문화 교류를 시도해왔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문화분야 개발협력사업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부흥하는 국가에만 치중함에 따라 한류 콘텐츠의 보호 또한 지역적인 범위 내에서만 추진되어 왔다. 이에 보다 넓은 관점에서 다각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선정 역시 문화자원을 통한 사회·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는 문화 협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신진경제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김상태 외(2013) 연구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가 선정 시 잠재적 협력가능성, 국내총소득과 국민총소득 등이 중점협력국가 선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혀내었다¹⁵⁹⁾.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저작권 보호국 선정에 있어서는 협력가능성과 K-콘텐츠 소비정도를 통해 개발협력국가를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대상국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개발협력사업의 실행가능성과 그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대상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K-콘텐츠의 주요 소비국으로 현지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이 부각된 주요 침해 국가를 도출하여, 해외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원 대상국 선정의 기준으로 가) K-콘텐츠 소비 정도, 나) 우리나라와의 교류 정도, 다) 해당 국가에서의 저작권 침해(발생 우려) 정도, 라) 현지 사무소 존재 여부 등 실현 가능성과 같은 네 가지의 기준을 중심으로 해외 저작권 보호 협력 국가 선정 기준을 도출하였다. 이에, 먼저 K콘텐츠의 소비 정도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우리나라와의 교류 정도와 저작권 침해(발생 우려) 정도를 검토한 후, 해외 현지 사무소 존재 여부를 고려하여 개발협력의 실행가능성을 고려한 국가를 선별해보았다.

159) 김상태·윤지웅·김영곤,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가 선정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정부학연구 제19권 제1호, 2013, p.125.

구분	해외 저작권 보호 협력국 선정 기준	검토 목적
가	K-콘텐츠 소비 정도	저작권 보호의 파급효과
나	우리나라와의 교류 정도	양국의 협력이 우호적일지 여부
다	해당국에서의 저작권 침해(발생 우려) 정도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라	현지 사무소 존재여부 등	협력 추진의 실행 가능성

[그림 4-5] 해외 저작권 보호 협력 국가 선정 기준

가. K-콘텐츠 소비 정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3년 해외 한류 실태조사」에 의하면 미주, 유럽, 일부 아시아(일본, 대만, 호주) 국가는 K-콘텐츠 소비량이 적은 반면,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베트남, 브라질, UAE 국가는 전체 평균과 콘텐츠별 소비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콘텐츠가 다른 나라의 문화상품들과 경쟁하는 지표를 의미하는 ‘국별 소비 비중’ 항목에서 소비가 많은 국가는 아시아와 중동 국가들로 이들 국가는 주로 한국 문화의 소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한국 문화의 소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들의 K-콘텐츠 소비는 다른 국가들의 문화 상품들에 비해 경쟁력이 높으며 이들 국가에서 소비되는 K-콘텐츠의 양 또한 평균 2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¹⁶⁰⁾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현재 영화, 드라마, 음악과 같은 한국 콘텐츠의 소비 비중 상위 국가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인도, 말레이시아로 확인되고,¹⁶¹⁾ 이를 통해 주로 아시아 국가에서 K-콘텐츠의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160) 한국국제문화교류원, 「2023 해외한류실태조사 요약편」, 2023. 03, 66-67면.

161) 한국국제문화교류원, 각주 160, 6면.

한국 문화콘텐츠에 호응도 높은 국가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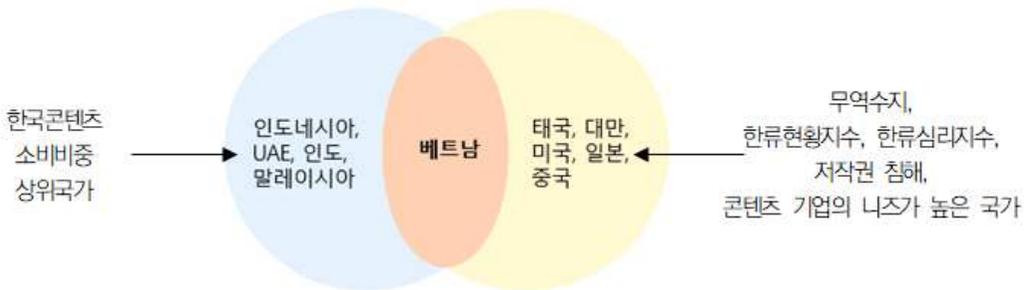


한국 문화콘텐츠에 부정적인 국가들



[그림 4-6] 국가별 한국 문화콘텐츠 선호 현황¹⁶²⁾

한편, 기존 연구 자료에 의하면 무역수지(무역수지의 흑자 여부), 한류현황지수(한류의 현재 인기와 대중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 한류심리지수(한류의 성장 또는 쇠퇴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 저작권 침해, 콘텐츠 기업의 니즈 부문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 국가는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태국, 대만, 미국, 일본, 중국으로 조사되었다.¹⁶³⁾ 이를 통해 한류현황지수나 한류심리지수, 저작권 침해 등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 국가들이 한국 콘텐츠 소비 비중 상위 순위를 차지한 국가들보다 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7] 해외 저작권 보호 필요성 국가

162) 문수인 기자, “K콘텐츠 글로벌 소비 보고서… 아시아·중동서 일상화, 美·유럽은 ‘냉소적’”, 2023. 3. 28. 매일경제 기사(<https://www.mk.co.kr/news/culture/10697797>).

163) 한국저작권보호원, 각주 54, 98면.

나. 우리나라와의 교류 정도

우리나라는 그동안 신진경제국들과 다양한 문화 교류를 시도해 온바, 저작권 보호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대상국을 선정할 때는 문화 자원을 통한 사회·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는 문화개발협력의 관점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양한 문화 협력을 하고 있는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국가들은 한국의 신남방정책 해당국이기도 하며 평균 연령 30세, 20억 인구의 젊고 역동적인 성장지역으로 우리 경제 발전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 지원과 더불어 저작권과 같은 제도권 영역에서의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 더욱이 캄보디아 정부가 발표한 「국가발전전략(2019~2023)」에 의하면 국가교육정책 개혁 5개 전략 중 하나로 예술 등 창의성 제고 및 관련교육 자원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이들 국가들도 단순한 원조가 아닌 주체적인 국가가 되고자 한다. 이에 해외 저작권 보호에 적합한 지원 대상국을 선정하여 단순한 원조가 아닌 저작권 침해 예방과 장기적인 협력 방향으로 저작권 보호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현재 우리나라에 매우 우호적이며 우리나라 또한 최근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방안으로 이민정책을 개방함에 따라 이들 국가들과 저작권 보호 협력을 통해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졌다. 아시아 국가들에서 디지털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또한 저작권 보호에 있어 눈여겨볼 만한 사항이다. 실제로 2022년 전자상거래 매출 증가율 상위 5개국을 살펴보면 주요 3개국은 동남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⁶⁴⁾

〈표 4-2〉 2022 전자상거래 매출 증가율 상위 5개국

구분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베트남
연간매출 증가율(%)	25.9%	25.5%	23.0%	22.2%	19.0%

164) 미국 전자상거래 정기 보고서, 'Asia Digital Future', 2022.

최근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전에는 높은 인구율을 기반으로 강한 제조능력이 있는 중국에 대부분의 성장이 집중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디지털 경제에 의해 경제성장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의 경제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인도는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조금 늦은 2000년대 초반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개되었고 2014년 4월 아리랑 TV의 인도 진출을 계기로 본격적인 한류 시장이 시작된 나라이다. 인도는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되었으며, 미국으로 이주를 많이 하는(고속권 외국인 이민신청의 75%가 인도인) 나라이다. 이에 인도에서의 한국 콘텐츠 확산은 다른 나라보다 파급 효과가 크며, 범위도 매우 넓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원에 따른 효과성을 고려하여 인도에서의 저작권 보호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UAE는 우리나라와 1980년 수교 이후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하고 있다. 2020년에는 문화교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중동 국가들과 달리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는 등 지식재산권 제도를 정비하였다. UAE는 미디어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아랍 전역을 커버하는 범위로 기술개발 등을 진행하는 국가이다. 이에 UAE 국가의 자본력을 기반으로 한 향후 콘텐츠 산업 성장이 예상되는 국가이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로는 한국 문화콘텐츠에 호응이 높은 정도를 기반으로 사무소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필리핀, 베트남, 인도를 고려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전략적 우호관계 및 향후 투자 가치를 기반으로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국가들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외에도 캄보디아, 아프리카 등의 국가를 저작권 ODA 국가로 검토 가능하다. 캄보디아는 베트남의 사회주의로 인해 대안으로 뜨고 있는 나라이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국내 기업, 대학들이 활발히 협력 및 진출하고 있으며 금융, 건설, 유통,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이 진출해 있다.

*** 캄보디아-한국 간 협력 현황**

(공공기관) 농림부, 관세청,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인천상공회의소 등
(기업) 부영그룹, 이마트, 파리바게뜨, LG CNS, 국민은행, 트레이드트렉 등
(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전대, 영남대 등

아프리카 또한 향후 저작권 보호국가로 검토 가능하다. 아프리카는 전 세계에 있는 광물 중 30% 이상이 매장되어 있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배터리 원재료 등을 아프리카에서 조달 가능함으로 향후 경제적 성장과 발전이 기대되는 국가이다. 아프리카의 지식재산 기구(ARIPO) 활동과 자원 부족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관계 증진 등을 고려하여 아프리카 국가 등도 저작권 ODA 검토 대상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2018년 ‘지재권존중국제컨퍼런스-아프리카’를 개최하였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ARIPO에 지속적으로 지재권에 관해 지원하기로 하였다.

다. 해당 국가에서의 저작권 침해(발생 우려) 정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9년 9월 영국의 리서치 기관인 YouGov가 조사하여 발표한 아시아 국가별 ISD, 불법 스트리밍 이용자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특히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서 K-콘텐츠의 저작권 보호가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¹⁶⁵⁾ 2023년 9월 28일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받은 '콘텐츠 유형별 해외 저작권 침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산 IP의 해외 불법 유통 적발 건수와 관련하여 국가별로는 필리핀에서 방송·영화, 웹툰 등 국산 IP 콘텐츠 불법유통이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¹⁶⁶⁾

한편, 인도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중국보다 인구가 많은 국가가 되었고 2022년에는 GDP 규모에서 영국을 제치고 5위를 기록하는 등 국제적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즉, 현재까지 K-콘텐츠에 대한 저작

165) 2020 KCA Media Issue & Trend, 각주 154, 76면.

166) 하지현 기자, “K-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매년 2배씩 증가…필리핀·베트남서 기승”, 2023. 9. 28. 뉴스시스(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30927_0002467528).

권 침해 현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¹⁶⁷⁾ 이는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야 인도에서의 K-콘텐츠 활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인도의 인구 및 GDP 규모, 한류심리지수 상승 국가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인도에서의 K-콘텐츠 확산에 따른 저작권 침해 가능성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따라서 인도의 현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산업 통계에 의하면 한국 콘텐츠 산업의 수출은 중화권에 36.8%, 일본 19.7%, 동남아 13.4%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고 인도는 기타국(6.9%)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인도에서의 한류를 중화권, 일본, 동남아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전종근, 김승년(2020) 또한 인도에서 한류 수준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아직 낮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인도의 한류현황지수(인기도)는 조사대상국 가운데 10위에 불과하며, 터키, 브라질, UAE보다 낮은 수준이다.¹⁶⁸⁾ 또한 인도의 한류 이용자 가운데 열성적 이용자와 집중적 이용자 비중 또한 분석대상 아시아 국가 가운데 일본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터키 및 UAE보다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성장도를 나타내는 한류심리지수에서 인도는 조사대상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¹⁶⁹⁾ 이러한 점은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해외출원 건수를 전년 동기대비 증가률로 볼 때 인도가 10,42건(1,79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¹⁷⁰⁾ 그리고 2020년 넷플릭스를 통한 인도의 K-드라마(한국 제작 드라마) 시청이 전년 대비 300% 이상 급증하는 등 우리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India Times에 따르면 2020~2022년은 'K-Culture'라는 단어가 인도에서 확산되는 발판을 마련한 시기로 평가받고 있는 것,¹⁷¹⁾ 한류 대중화단계 국가는 아니지만 한류현황지수 상승국가 및 한류심리지수 성장국가에 인도가 포함되어 있는

167) 2022년 연구자료에 의하면 저작권 침해 상위 10개국에 인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168) 전종근, 김승년(2020)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해외한류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한류파급효과 연구에서 아시아를 비롯해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북미, 남미 등 대륙별로 주요 16개국을 선별해 각국에서 현재 한류의 대중화 정보를 나타내는 '한류현황지수'와 한류 인기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한류심리지수'를 도출하고 있다.

169) 김정곤·이정미·윤지현, 「인도 한류 분석과 문화협력 확대방안: 음악 및 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12., 46면.

170) 박경일 기자, “한국 기업, 특히 출원 급증한 ‘인도(India)’… 전년동기 대비 ‘18배’”, 2023. 7. 18. IP Daily(<https://www.ipdaily.co.kr>).

171) AIF 인도·남아시아, “남인도 지역에 등장한 한류 트렌트 : K-Food와 K-댄스”, 2023. 4. 5. (<https://www.kiep.go.kr/aif/businessDetail.es?brdctNo=345126&mid=a3040000000&systemcode=02>).

것¹⁷²⁾ 등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인도의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M&E) 시장은 작년 기준 미화 약 280만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2025년까지 약 35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크며 영향력이 있다. 코로나 시대에 잠시 주춤했던 인도 시장은 소비자의 소득 증가, 젊은 연령층 증가, 값싼 데이터, 정부의 디지털 경제화 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협력하여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인도의 스마트폰 사용자는 작년 기준 약 5억 3,800만 명이며 인터넷 보급률이 약 8억 6,600만 건 가량으로 증가하면서, 인도의 M&E 시장 성장에 따른 폐단 또한 증가하고 있다. 영화 콘텐츠 및 방송 저작물이 온라인상에서 불법 복제 및 공유되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인도 법원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사건들에 관해 선제 차단으로 대응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¹⁷³⁾

이러한 정부의 디지털 경제화 정책은 인도의 콘텐츠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즉, 인도 정부는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콘텐츠 관련 규제의 고삐를 죄고 나섰는데, 지난 2021년 2월 26일 더힌두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라비 샨카르 프라사드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콘텐츠 관련 중재 가이드라인과 윤리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페이스북 등 SNS 업체는 인도 정부의 법적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콘텐츠를 36시간 이내에 제거해야 한다. 사이버 보안 이슈의 경우 해당 업체는 정부 요청을 받게 되면 72시간 이내에 수사 등을 지원해야 한다.¹⁷⁴⁾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비록 지금은 인도에서의 K-콘텐츠 침해 사례가 잘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2020년 이후부터 인도의 K-드라마(한국 제작 드라마) 시청이 급증하고 'K-Culture'라는 단어가 인도에서 확산되는 등 한국 문화콘텐츠 소비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인도에서의 저작권 침해 발생

172) 한국저작권보호원, 각주 54, 98면.

173) 한국저작권보호원, 「인도 법원의 최근 온라인 저작권 침해 관련 판례 동향」,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2023. 7. 21.(https://www.kcopa.or.kr/lay1/bbs/S1T11C330/A/54/view.do?article_seq=4679&cpage=1&rows=10&condition=&keyword=)

174) 김영현 기자, “인도, 페이스북 등에 규제 고삐…콘텐츠 삭제·정보 공유 압박”, 2021. 2. 26.자 연합뉴스 기사(<https://www.yna.co.kr/view/AKR20210226084800077>)

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다.

라. 현지 사무소 존재 여부 등 실현 가능성

우리나라 보호체계 적용 가능성을 판단여부를 살펴봤을 때 베트남, 태국, 필리핀, 중국 국가에는 저작권 해외사무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지 사무소 활용을 통해 그 실현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지 저작권 사무소는 부재하지만, 유관기관에 해외 사무소가 있어 네트워크 등의 연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국가로는 인도를 꼽을 수 있다. 앞서, 콘텐츠 기업의 니즈를 기준으로 해외사무소가 필요한 국가를 선정하였을 때도 인도가 그 국가 중 하나로 꼽힌 바 있다.¹⁷⁵⁾

마. 소결

앞에서는 해외 저작권 보호 국가 선정을 위해 K-콘텐츠의 소비 정도, 우리나라와의 교류 정도, 해당 국가에서의 저작권 침해(발생 우려) 정도, 현지 사무소의 존재 여부 등을 통해 실현가능성 등의 기준들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해외 저작권 보호 대상 국가를 어느 국가로 할 것인지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결국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국가인지 여부, 한국 콘텐츠의 소비 비중이 높은 국가인지 여부, 한류현황지수 및 저작권 침해(발생 가능성) 현황, 저작권 보호 해외사무소의 존재 등을 기준으로 선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대상국으로 베트남, 필리핀, 인도 세 국가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와의 교역 현황, 문화 교류의 실태 및 한류 확산의 가능성, 해당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등을 고려하여 베트남을 해외 저작권 보호의 최우선 국가로 도출하였다. 또한, 베트남에 이어, 필리핀도 선정기준 3개를 충족하면서 저작권 보호 협력을 위한 지원 후보국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인도의 경우 2개 선정기준을 충족함과 더불어 해당국가에서의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과 최근

175) 한국저작권보호원, 각주 54, 98면.

인도 법원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적극적인 행보를 고려하여, 글로벌 저작권 보호 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대상국으로 추진하였을 때, 그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고려해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해외 저작권 보호 협력국 선정 기준	해당 국가
K-콘텐츠 소비 정도	베트남, UAE
우리나라와의 교류 정도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베트남, 캄보디아, 아프리카
해당국에서의 저작권 침해(발생 우려) 정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현지 사무소 존재여부 등 실현가능성	베트남, 태국, 필리핀, 중국
선정 국가	1. 베트남 2. 필리핀 3. 인도*

[그림 4-8] 해외 저작권 보호 협력 국가 후보국 도출

* 인도와 인도네시아 모두 2개의 기준을 충족하지만 인도의 인구 수, 관련산업 시장 규모, 디지털 경제화 정책 등을 고려하여, '인도'를 3순위로 지정함

한편, 원활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동 추진사업이 상대국의 문화산업과 관련 제도의 발전을 도움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등에도 도움이 되는 것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 사업이니만큼 상호 사업 추진의 인식에 오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상호 국가 간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기술이나 제도 지원을 통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상국과의 공동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2. 후보국별 기반 구축 필요 사항

앞에서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 등 3개 국가를 해외 저작권 보호 대상 국가로 선정하고, 이중 베트남이 가장 적합한 국가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이 3개 국가들과 우리나라 상호 간 저작권 관련 협업 현황을 살펴본 후, 각 국가들에 대한 기반 구축 필요 사항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가. 베트남

(1) 한국과 베트남의 저작권 관련 협업 현황

날짜	협업 사항
2001.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베트남 저작권 포럼 매년 개최 합의
2012.12.13.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2021.11.30.	2021 한·베 저작권 포럼 개최
2023.10.	한국무역투자진흥청과 베트남지식재산청 협력

한국과 베트남 특허청 사이에는 '특히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은 출원을 다른 나라 특허청이 1국의 특허심사 결과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제도인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베트남 호치민에 IP_DESK를 개소하였고 이후 2010년 호치민에도 추가 개소하였다. 2021년 기준으로 총 3명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¹⁷⁶⁾ 총 4개의 현지 로펌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자문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연도	지재권상담	출원지원	세관등록	침해조사	설명회개최 (위조상품 식별설명회)	협력채널구축	정보제공
2013	383	47	0	2	4 (2)	28	62
2014	354	71	0	2	6 (1)	37	51
2015	330	113	0	2	5 (1)	7	19
2016	417	217	0	0	3 (3)	18	28
2017	371	97	3	1	3	6	38
2018	592	130	0	1	5	16	20
2019	377	134	0	4	1	21	4
2020	175	143	0	3	4	6	23
2021	435	208	0	5	8	17	17
2022	316	49	0	0	5 (1)	3	56

[그림 4-9] 베트남 IP-DESK 연간 추진실적

176) KOTRA, 「2021 IP-DESK 백서」, 2022. 07., 157면.

(2) 저작권 보호 기반 구축 필요 사항

베트남은 저성장인 전 세계의 상황과 달리 2022년 8%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1억 명의 인구 중 30대 미만 비중이 절반을 넘는 젊은 나라이다. 베트남은 1990년대부터 한류 열풍이 시작되어 지금 현재는 음식, 패션,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한국 기업과 대학들도 베트남에 진출을 하여 상품을 수출하는 것에서 공동으로 제작하고 인적교류까지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베트남인들의 K-콘텐츠 소비는 매우 높다. 그러나 높은 소비율 만큼 저작권 위반 사례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 2022년 베트남 특허청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한 95%의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불법 유통 콘텐츠 사이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식재산권 인식에 대한 부재가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K-콘텐츠가 불법유통 되지 않도록 K-콘텐츠를 자동적으로 식별하고 불법으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사이트를 자동적으로 판별하여 불법 유통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을 베트남 현지에 도입한다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K-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이 온라인 활용이 높은 젊은층에서 베트남은 저작권 위반이 만연한 것이 현실로 나타나 청소년과 젊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 유통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첨단기술 분야의 투자 지원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였다. 즉, 교육, 인적 자원 개발 지원, 사회 기반 시설 공사의 고정 자산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가 투자 비용을 지원하거나 첨단 기술 제품 생산 비용 지원, 연구 개발 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 2023년 10월 한국인공지능협회와 베트남혁신창의센터가 협력하여 '2023 베트남-대한민국 인공지능(Vietnam-South Korea Artificial Intelligence 2023)'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흐름을 이어나가고자 저작권보호원에서 현재 추진 중인 '한국형 선진 저작권 분석시스템 수출형 모델'을 기술이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저작권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전문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의 젊은 청년들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국

가 인식이 높아 한국에서의 교육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저작권 보호 관련 학위 과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저작권 보호 교육을 진행하고 인재를 육성하여 저작권 위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베트남 내에서 저작권 보호 분야의 인재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저작권 관련 직업 또한 전문직 종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여 저작권 보호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베트남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하며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이익과 공익을 확대하기 위한 지식재산권의 상용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에 반해 베트남은 오프라인 위조품의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감정평가는 VIPRI 및 ECCR과 같은 정부 산하기관에 의해 관리되는데 ECCR에서 발급한 의견서는 사법처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2021년 우리나라 게임회사가 온라인 불법유통으로 ECCR에 감정평가를 의뢰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거절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베트남은 지식재산을 전문으로 하는 법원이 없는 바 판사들도 지식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따라서 베트남의 변호사, 판사와 같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심도 깊은 교육과 세미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산업을 성장하고 있다. 이에 베트남과의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우리 수출시장의 확실한 구원투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K-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

1. 한국형 선진 저작권 분석시스템 수출형 모델 기술이전
2. 국내 대학에 저작권 보호 관련 학위과정을 설치하여 베트남 청년 또는 관련 직업인을 학생으로 유치, 지식재산 전반에 관한 교육 실시
3. 오프라인 위조품 대응을 위한 부처 간 협력, 베트남 내 사법조치 요청
4. 베트남 변호사, 판사 대상의 저작권 세미나를 실시하여 다양한 저작권 위반에 따른 국내 처벌 사례에 대해 교육
5. K-콘텐츠 수출 및 공동 합작을 위한 프로젝트 확보

나. 필리핀

(1) 한국과 필리핀의 저작권 관련 협업 현황

필리핀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공동으로 ‘한국-필리핀 저작권 포럼’을 개최하여 디지털 시장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토론의 장을 열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22년 필리핀 광매체위원회와 컴퓨터 저장장치 제작과 유통 규제를 목적으로 양국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4월 필리핀 마닐라에 IP-DESK를 개소하였다. 2022년 기준으로 총 2명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1개의 현지 로펌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자문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¹⁷⁷⁾

연도	지재권상담	출원지원	세관등록	침해조사	설명회개최 (위조상품 식별설명회)	협력채널구축	정보제공
2020	54	6	0	0	1	2	32
2021	355	24	0	0	4	1	52
2022	150	9	0	0	1	1	36

[그림 4-10] 2022 마닐라 IP-DESK 연간 추진실적

(2) 저작권 보호 기반 구축 필요 사항

최근 필리핀에서 K-팝, K-드라마 등으로 인기가 날로 높아짐에 따라 경쟁력 있는 한류 콘텐츠가 국제 플랫폼에서 유통되면서 저작권 침해 역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¹⁷⁸⁾ 콘텐츠 유통 시 콘텐츠 가치 하락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파장이 크므로 필리핀 현지 관리단과 공조하여 정기적인 저작권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젊은 필리핀 청소년들 사이에서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한 위법함을 인

177) KOTRA, 「2022 IP-DESK 백서」, 2023. 09., 299면.

178) 2020 KCA Media Issue & Trend, 각주 154, 76면; 하지현 기자, “K-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매년 2배씩 증가…필리핀·베트남서 기승”, 2023. 9. 28. 뉴시스(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30927_0002467528) 참고.

지하여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필리핀은 200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진출하여 필리핀 현지 방송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K-콘텐츠를 공동으로 제작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저작권을 포함한 관련 분야의 지원을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 국제무역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이하 ITA)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2021년 필리핀 내 약 7300만 명의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였으며, 소비 규모는 당해 시장 전체 매출의 170억 달러에 달했다.¹⁷⁹⁾ 이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위조 상품 판매의 통로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비율 또한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위조 상품 또는 저작권 위반 상품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었을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판매자는 효과적인 대응 절차 및 환불/손해배상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해야 하며 저작권 또는 상표권 침해에 관한 보고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이에 필리핀은 지식재산권 소송에 관한 전문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침해 판결의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필리핀의 온라인상 위조품 및 불법콘텐츠 유통 해결을 위한 노력 등 제도개선 현황을 고려해보면,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공동의 노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 예측된다.

1. 한국형 선진 저작권 분석시스템 수출형 모델 기술이전
2. 필리핀 현지 관리단과 공조, 정기적인 콘텐츠 불법 유통 단속 실시
3. 청소년 중심으로 저작권 인식 제고 교육 추진
4. K-콘텐츠 수출 및 공동 합작을 위한 프로젝트 확보

179) KOTRA, [기고] 필리핀 전자상거래 내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2022. 11,

다. 인도

(1) 한국과 인도의 저작권 관련 협업 현황

우리나라는 2017년 9월 인도 뉴델리에 IP_DESK를 개소하였다. 2021년 기준으로 총 3명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2개의 현지 로펌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자문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¹⁸⁰⁾.

법률 간 충돌이 발생할 경우 국내법이 우선한다. 인도 의회나 주 의회가 만든 법률은 구속력 있는 법률로 간주되며, 법률의 근거가 충돌할 경우 우선하는 근거가 된다. 두 번째로 판례에 따르고 세 번째로 국제 조약에 따른다.

국제 조약이나 협약의 조항은 법원에 의해 직접 적용될 수는 없다. 이러한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국내 입법은 반드시 인도 의회나 주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률로 정한 지침이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법원은 국제 조약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연도	지재권상담	출원지원	세관등록	침해조사	설명회개최 (위조상품 식별설명회)	협력채널구축	정보제공
2017	15	0	0	0	1	0	0
2018	211	22	0	0	6	1	9
2019	364	44	0	1	5	4	14
2020	249	22	0	0	7	3	17
2021	318	25	0	0	9	0	8
2022	477	33	0	0	0	5	11

[그림 4-11] 뉴델리 IP-DESK 연간 추진실적

180) KOTRA, 각주 176, 257면.

(2) 저작권 보호 기반 구축 필요 사항

인도는 지식재산권법이 충분히 발전해 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에 우호적인 국가이다. 인도 정부는 2014년부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여러 이니셔티브를 도입함으로써 제도적 환경개선 도모하고 있다.

인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역사로 인해 영국의 특허법과 유사한 체계를 가지면서 우리나라와는 다소 규정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인도는 타 국가에 비해 행정적인 구제 수단이 부족하므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권리를 세관에 등록해야 한다. 인도에서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었을 시 단속 행정 제재 조치는 세관단속으로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자가 자신의 권리를 세관에 등록한 경우에만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들을 압수하거나 통관절차 중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 소유자에게 별도의 안내를 하거나 절차를 표준화할 수 있도록 국가 간 협업이 필요하다.

한편, 인도는 통상적으로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건이 많아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 많다. 2021년 4월 조례에 의하여 심판원이 폐지됨에 따라 향후 소송이 더 지연될 가능성이 많다.¹⁸¹⁾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인도 지식재산권 업무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법당국 및 정부부처 공무원, 경찰청 범제수사과, 특허청, 지식재산권 진흥 관리 셀과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초청 연수 등의 다양한 활동을 주최하여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보호의 우선권 확보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저작권보호원에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차원의 활동을 인도 현지에서 진출 또는 진출하고자 하는 콘텐츠 기업 대상으로 진행하여 최소한의 피해만이 발생하도록 캠페인, 예방 교육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도는 한국 방송 콘텐츠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 기준 147억 달러로 연평균 1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¹⁸²⁾ 인도는 발리우드

181) KOTRA, 각주 176, 272면.

182) 정영오 기자, “韓방송콘텐츠, 13억 인구 인도를 유혹한다”, 2021. 11. 17. 한국일보 기사(<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11715440000762>).

(Bollywood)를 통한 영화 산업의 발달뿐만 아니라 매해 극장 영화를 1천 편 이상 만드는 나라로 영화가 자국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세 얼간이>, <슬럼독 밀리언어>와 같은 일부 영화는 전 세계에서 유명하다. 따라서 국내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협업을 통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콘텐츠 보호를 위한 저작권 보호에도 협업하여 상호 간의 콘텐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이에 콘텐츠 산업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과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보호와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

1. 한국형 선진 저작권 분석시스템 수출형 모델 기술이전
 2. 인도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도내 특정 상황 및 대응방안 홍보
 3. 인도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 활동 진행
 4. 인도 내 저작권 전문기관이 부재함에 따라 국내 저작권 보호를 위한 매뉴얼 확보 및 시스템 구축
 5. K-콘텐츠 수출 및 공동 합작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추진
- 예) 미국과 인도 영화업계, 제작·유통·저작권 보호 분야를 위한 공식 협정 체결

3. 사업 추진 내용 및 방안

필리핀, 베트남, 인도 3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문화권 국가로 국내 저작권 분야와 협력하였을 때, 해당 국가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저작권 보호기반 구축 지원 사업에 관심을 둘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로 필리핀, 베트남, 인도에서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관련 노력을 하고 있었던바, 이러한 제도개선의 움직임이 있는 시기에 글로벌 저작권 보호 기반 구축을 위한 글로벌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국가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한다면, 우호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글로벌 저작권 보호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발협력사업 추진의 핵심은 한국의 선진 저작권 보호 기술을 전파함으로써 글로벌 저작권 보호 기반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일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전 세계 국가들의 디지털 기술은 점차적으로 발전하

면서, 해외에서의 콘텐츠 불법 유통도 증가하고 있다.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콘텐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불법 사이트 탐지 및 차단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각국에서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이트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 유통 자동 탐지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기술을 문화기반구축 또는 개발협력사업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각국에 기술을 전파하는 방식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 유통 자동 탐지 기술 등 저작권 보호 기술 전파를 통한 글로벌 협력을 통해 해당국을 지원하고 협력적 대응을 요구한다면 전보다 적극적인 침해 예방 및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역시 기술 전파 등 기반구축 사업 추진을 통해 새롭게 구축한 콘텐츠 불법 유통 시스템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므로 좋은 테스트베드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술 전파 등 기반구축 및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각국의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저작권 보호 전문가를 해당 지역에 파견하여 기술 전파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기술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에 관한 경험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바, 기술 전파 개발협력사업을 통해 각국의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현대화함과 더불어, 저작권 보호 전문가를 해당 지역에 파견하여 기술 전파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특허법원은 2023년 베트남 하노이고등 인민법원과 사법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도 ‘한국-베트남 저작권 포럼 및 정부 간 회의’를 4월에 개최함으로써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작권 보호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기술 전파 등을 통한 현지 저작권 보호 역량 강화노력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필리핀과 베트남, 인도 국가들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지원한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을 통해 지식재산(IP) 인력양성을 진행한 바 있다.¹⁸³⁾ 그러나 KSP 인력양성의 주 수요자는 현지 공무원들과 같은 전문 직업인으로 실질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은 부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세 국가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위해 각종 세미나와 포럼 등을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불

183)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한국수출입은행·KOTRA, 2022 Knowledge Sharing Program 연차보고서, 8면.

법 유통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에 협력과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진행된 바 없었다. 이에, 구체적인 저작권 보호 기술 전파 등 저작권 보호 기반 구축을 위한 개발협력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저작권 보호 방안 등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필리핀, 베트남, 인도 3국은 각각의 저작권 관련 제도와 법률이 존재하며,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에도 차이가 있다. 특히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저작권 보호 기술을 기반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각국의 담당 기관과 대응방안 등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별 관련 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할 것인바, 양국이 협력하여 저작권 침해 대응에 관한 정보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현지 국가에 맞는 방안으로의 저작권 보호 기술 교류, 전파, 교육, 침해 공동 대응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내 저작권 제도의 방향성이나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정 등에 맞추어 현행 제도 하에서 저작권 보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 및 기술적 대응방안을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양 국가의 담당부처,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이 모여 ‘글로벌 불법유통 근절 전략 회의’와 같은 논의를 하여 협력 의지를 다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K-콘텐츠 저작권 보호가 단순히 국내 상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지속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기술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에 관한 경험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바, 우리의 성장만이 아닌 필리핀, 베트남, 인도 국가의 자체 문제 해결과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의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지 국가의 저작권 보호 기반 구축과 함께 글로벌 저작권 보호 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양국의 저작권 보호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저작권 보호 기반 구축을 위한 대상국으로 선정한 3개국 중 현재 여러 국가들과 가장 활발한 협력을 하면서 국민 간에도 취업, 교육, 문화 면에서 활발한 이동을 보이고 있는 베트남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형 선진 저작권 분석시스템 수출 모델’을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프로젝트성 사업으로 준비하여 기술 전파를 추진하는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불법 유통을 막을 수 있는 기술¹⁸⁴⁾을 해당 국가의 담당 기관에 이전하여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저작권 침해 대응 시스템으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운용 중인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자동 탐지 기술은 이미지 식별 기술을 기반으로 전 세계 불법 유통 사이트를 찾아내고 불법 유통되는 저작물을 채증하는 기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을 문화 개발협력사업의 측면에서 각국에 기술을 전파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림 4-12] 침해대응 업무 시스템화 기술

특히, 이러한 기술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저작권 보호 기반 구축 프로젝트는 디지털 경제 사회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현 베트남 정부의 정책적 목표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¹⁸⁵⁾ 이러한 의지는 베트남의 국가 디지털 혁신 개발 계획에 잘 나타나 있는데, 해당 계획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 보유 기업 10만 개를 육성하여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에 30%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베트남의 정책적 상황을 고려하여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 기술 도입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4) ①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자동 탐지 기술, ② 콘텐츠 자동 식별 기술, ③ 침해 콘텐츠 정보 수집·저장 기술, ④ 대체 사이트 자동 탐지 기술, ⑤ 침해대응 업무 시스템화 기술.

185)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80&CONTENTS_NO=2&bbsGbn=242&bbsSn=242&pNttSn=192256.

그리고 베트남 정부는 추상적인 정책적 목표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혁신 개발 계획 달성을 위한 제도 수립에 대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관제를 규제하고 개혁과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전문 입법 문서에 대한 개정안을 검토하고 제안하였는데,¹⁸⁶⁾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 기술 도입에 대한 우호적인 신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4-3〉 베트남 국가의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 개요

구분		2025년 목표	2030년 목표
정부	레벨4 공공서비스 온라인화 및 디지털 기기 사용 최적화	서비스 80%	서비스 100%
	전자정부발전지수 순위	70	50
경제	GDP에서 디지털 경제 비중	20%	30%
	각 산업에서 디지털 경제 비중	10% 이상	20% 이상
	연간 생산성 증가율	7%	8%
	ICT 발전지수(IDI) 순위	50	30
	글로벌 경쟁력지수(GCI) 순위	50	30
	글로벌 혁신지수(GII) 순위	35	30
사회	광섬유 인터넷 보급	가계의 80%	전국적 보급
	4G/5G 서비스 보급	4G/5G, 스마트폰 전국적 보급	5G 서비스 전국적 보급
	온라인 예금계좌 보급률	인구의 50%	인구의 80%
	글로벌 사이버안전지수(GCI) 순위	40	30

출처 : Kotra(2021); Decision No. 749/QĐ-TTg (2020.6.3.)

186) <https://vanbanphapluat.co/decision-749-qd-ttg-2020-introducing-program-for-national-digital-transformation>.

〈표 4-4〉 디지털 국가 전환에 대한 베트남 정보통신부 발표 내용

〈2030년을 지향하는 2025년까지의 국가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

V. 디지털 정부 개발과 관련된 몇 가지 과제와 해결책

5. 기획투자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 a) 디지털 경제를 위한 통계 지표를 연구, 공식화 및 공표합니다. 디지털 전환이 사회 경제적 상황과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데이터 수집 방법을 개발합니다. 결과를 주기적으로 게시합니다.
- b) 프로그램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공공 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개발 투자를 위한 자본의 균형을 맞추고 할당한다.
- c) 기업, 투자 및 사업에 관한 법률을 연구하고 개정하여 새로운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 활동 및 모델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사회와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예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기존 비즈니스 모델 모두에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합니다.
- d) 기술 이전, 혁신, 기업가 정신, 응용 및 연구를 위해 다른 국가 및 국제 파트너로부터 자원을 추가로 유치하고 활용합니다.

7. 과학기술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 b) 실제 디지털 기술 개발 및 적용 상황, 국제 관행 및 베트남의 현재 상황에 맞게 지적재산권 집행 및 법률 시스템에 대한 개정을 연구하고 수정하거나 제안합니다.

17. 베트남 텔레비전, 베트남 소리, 베트남 통신사, Nhan Dan 신문 및 언론 기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채널, 특별 페이지,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 세그먼트를 통해 디지털 혁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과 현황을 고려하여, KOICA 사업을 예시로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저작권 보호 국가로 선정한 필리핀, 베트남, 인도 국가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들의 현재 저작권 관련 법률

과 제도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저작권 보호 법률 개정안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상호 국가 간에 저작권 보호가 표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와 해당 부처 등이 협력하여 법률을 시행하고 감독할 수 있는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 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제도 구축을 통해 지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고 문화적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구축을 대상국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원국의 문화부문이 국제경쟁 요소로 성장하고 보호될 수 있도록 전통문화 보존 및 육성 전략수립을 통해 상대국의 문화육성을 도움으로써 일방적 문화수출과 제국주의적 인식 오해 방지를 도와야 한다.

KOICA가 수행하는 문화관련 사업 중 KOICA 해외봉사단은 교육, 지역개발, 보건의료, 산업 및 에너지, 정보통신, 환경 및 여성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KOICA 문화 분야 ODA 사업을 활용하여 해외 저작권 보호 기술이전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표 4-5〉 KOICA 문화분야 ODA 사업 현황

지역	나라	사업명	실시연도	예산
아시아	동티모르	독립기념관 건립	2001-2003	113.8만불
아시아	인도네시아	스포츠 교류센터 건립	2003-200	278만불
아시아	캄보디아	시엠립 우회도로 건설사업	2005-2006	160만불
중남미	과테말라	외교부 e-Library구축사업	2002-2003	38.3만불
아시아	베트남	호치민 정치아카데미 도서관 정보화 지원	2006-2007	142.5만불
중남미	엘살바도르	교육환경 개선 사업	2007-2008	53만불
동구·CIS	우즈베키스탄	세계경제외교대 도서관정보화 지원	2006-2007	85만불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0)

또한,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들 국가들의 역사적 가치가 계승되고 문화

유산이 발전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적인 기술을 지원함과 더불어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따라 현지국들의 정책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한국의 현지 국가 맞춤형 선진 저작권 보호 기반 구축을 위한 수출형 표준모델' 구축 및 기술 전파 등은 각국의 문화 보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IT 시스템 발전에 있어 세계적인 선도국가로 저작권 분석시스템을 수원국에 기술이전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예방함으로써 양국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글로벌 저작권 보호 기반 구축을 위한 '콘텐츠 불법 유통 침해 대응 시스템'의 기술 전파 등 저작권 보호 기반 구축을 위한 개발협력사업을 위하여 KOICA 사업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KOICA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개발협력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KOICA 사업 추진을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은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진다.¹⁸⁷⁾ 첫 번째 단계로는 개발협력사업 실행 계획을 위한 실행계획서 수립 협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내부 사업 목표 및 문제 분석('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자동 탐지 기술'의 실효성 및 적용가능성 논의, 기술이전국 지식재산 담당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기술 적용 범위 및 적용가능성 확보), 유사사업 자체평가와 기술이전 수요국과의 수요성 및 이해관계자 식별이 있다. 이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지면서 사업 중복성을 피하고 주관기관과 사업수행 과정들을 조율한다. 두 번째 단계로는 사업 추진 계획안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는 원인 및 현상과 그에 따른 결과 및 문제를 정의하고 목표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세부적으로는 일정한 기한 내에 한정된 자원을 투입하여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 모형을 마련하고, 연도별 사업 목표 확정 및 사업화 기반을 마련하며, 산출물 성과달성표를 작성한다. 세 번째 단계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과 예산을 구성한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인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산정함으로써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재정적 구성을 구체화한다. 마지막 단계로는 작성한 사업계획안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여 최종 사업계획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평가 및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실행계획서를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친다.

187) KOICA, "KOICA 민관협력사업 제안서 작성 및 사례 발표자료", 2005.

[1단계] 실행계획서 수립 협의

-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자동 탐지 기술’의 실효성, 적용가능성 논의
- 기술이전국 지식재산 담당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기술 적용 범위 및 적용가능성 확보 : 사업수요성, 이해관계자 식별 및 분석, 문제분석 및 목표 분석
- 유사사업 자체평가
- KOICA 협의 통해 목표 및 수행과정 조정

[2단계] 사업 추진 계획안 마련 : 원인-현상-결과-문제-목표 도출

- 사업논리모형 확보
일정한 기한 내에 한정된 자원을 투입하여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 모형을 마련
- 연도별 사업 목표 확정, 사업화 기반 마련
- 산출물 성과달성표 작성

[3단계] 연도별 사업 운영 조직 및 사업비 구성

- 사업운영조직 구성
- 연도별 사업 예산 구성

[4단계]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계획안 수정

이러한 단계를 통해 KOICA 사업을 활용하여, 글로벌 저작권 보호 기반 구축을 위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바, 본 연구에서는 KOICA의 공공협력사업 기관공모 사업개요서 양식을 참고하여, 실제 추진을 위한 사업개요서를 예시적으로 작성해보았다. 사업명은 ‘베트남 콘텐츠 불법 유통 침해 대응 시스템’ 기술 전파로, 실제로 이를 사업화하여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시스템 예산과 소프트웨어를 보급시킬 현지 기관 등과의 심도 있는 회의 등을 통하여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표 4-6〉 KOICA 사업 개요안

구 분	내 용
사업명(국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보호 및 분석시스템의 글로벌 표준 모델 구축을 통한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 - 기술 전파(베트남 대상)
사업명(영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chnology transfer of content illegal transmission response system in Vietnam
사업기간/ 총 사업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분 : 신규 ▣ 기간 : 2024-2025년 ▣ 총 사업예산 : 100억원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개요 : 베트남 국가에 콘텐츠 불법 유통·침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양 국의 저작권 보호 실현 ▣ 연도별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년도 : 불법 유통 침해 대응 소프트웨어 구축 - 2차년도 : 불법 유통 침해 대응 소프트웨어 보급, 교육, 인식 제고, 공동 협력 프로젝트
대상국가 및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정부 저작권 관련 정부기관 : 지재권 조사단, 경제경찰, 시장관리총국
사업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프로젝트
사업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계획 기준 ⑨ 통신 ▣ SDGs 기준*(17개 목표) 중 택일 * ⑨ 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 ⑰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국가 내 불법 K-콘텐츠 유통이 만연함에 따라 불법 유통 침해 대응 시스템을 기술이전 하여 침해를 차단
정책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3월 28일 대통령 지시로 발족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범정부 협의체’ 수립 ▣ 국별협력전략(CPS)상 중점협력분야 해당 여부 : (O, 저작권 보호) ▣ 구체 국정과제 해당 여부 :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번호 및 명칭 : 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 SDGs 해당 목표(필수 기재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Goals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 보장 ▣ 정상외교 후속조치로 인한 추진과제 여부 :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방·정상방한 등 계기 : (ex) 한-베트남 정상회담(‘23.6.23.) ▣ 기타 대외전략(그린/디지털 ODA 등) 관련 여부 : (O)

구 분		내 용
		- 디지털 뉴딜 ODA 관련 여부 : (O)
성과 관리	산출물 (OUTPUT)	▣ 불법 유통 침해 대응 시스템 구축 수
	성 과 (OUTCOME)	▣ 콘텐츠 불법 유통 대응 실효성 제고 및 글로벌 보호 기반 구축
사후관리 계획		▣ 정기적인 세미나 및 연수를 통해 소프트웨어 지속적으로 확대 및 유지보수 노하우 제공

이와 같이 KOICA의 공모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베트남에 콘텐츠 불법 유통 침해 대응 시스템 기술 전파를 시범적으로 추진해보는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 프로젝트 사업의 준비를 통해, 저작권 보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술적 표준 모델 구축이 선제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해당 국가에 저작권 기반 구축을 위한 관련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계적 기술 전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저작권 보호 및 분석시스템의 글로벌 표준 모델 구축을 통한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의 기술 전파는 베트남에 기술을 전파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며, 양국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을 시작으로 저작권 보호 및 분석시스템의 글로벌 표준 모델을 구축하고, 그 기술 전파를 성공적으로 실시한 후에는, K-콘텐츠의 소비가 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기반 구축 지원사업의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장기적으로는 저작권 ODA 국가를 확대해 나가며 해외 저작권 보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저작권 보호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원국과의 콘텐츠 산업의 보호와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정교해지는 불법 유통 사이트와 다양한 플랫폼들로 인해 완벽한 차단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 및 분석시스템의 글로벌 표준 모델을 구축 및 기술 전파의 추진은 저작권 선진국에 해당하는 한국이 글로벌 저작권 보호 기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한 대표적인 협력사례가 될 것으로 예측해본다.

제5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해외 저작권 보호 협력 전략 및 글로벌 환경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검토 및 정리하였다.

먼저 해외 저작권 침해 발생 사례 및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조사를 통해 최근 발생한 주요 저작권 침해 사례 및 대응 현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코트라 IP-DESK 등 해외에서 저작권 보호 관련 활동을 하는 해외 진출 총 90개 유관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 사례 및 대응 현황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비록 이번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률이 저조하여 그 자체로는 유의미한 시사점 도출에 한계가 있었으나, 작년에 진행된 연구 내용까지 함께 참고하여 (1) 협업 가능한 유관기관의 선별 및 적극적인 협력 체계 구축, (2) 침해 예방을 위한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 교육, (3)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이라는 3가지 개선 필요 항목들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의 필요성 및 글로벌 저작권 보호 기반 구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해외 저작권 협력 전략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 외국 권리자단체 등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별 관련 기관들의 저작권 관련 현황 및 사례를 조사하고 그러한 조사결과 및 앞서 본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각 유형별 기관들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각 단체별 활동은 기본적으로 단체의 특성에 맞는 저작권 보호 노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와 더불어 다른 기관들과 협업을 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의 조력, 침해 대응에 대한 자문 등 다양한 협력 활동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확인 가능한 자료들에서는 그와 같은 협력 활동 현황을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협력 절차나 프로세스에 의해 협력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지 세부적인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각 기관들이 우리나라와 어느 분야에 어떻게 협력하기를 원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이에 각 기관들과의 협력 방안 제시도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 제시는 할 수 있었으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협력 방안 제시까지 이르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이는 결국

각 기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형 선진 저작권 분석시스템 수출형 모델’ 기술의 전수 또는 해당 기술 교육 등을 통해 협력방안 구축에 있어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대상 기관들과의 보다 세부적인 협력 방안 구축은 추가 연구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을 참고하여 세 번째로 글로벌 저작권 보호 지원 전략을 제시하였다. 저작권 보호체계 전략을 적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국가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도출하였다. 즉, 해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협력을 위해 해외 저작권 보호 국가 선정으로 ① 해외 사무소 존재유무, ② K-콘텐츠 소비 정도, ③ 저작권 침해 발생여부, ④ 우리나라와 콘텐츠 분야 교류 정도와 같은 네 가지의 기준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국가를 선정한 결과 필리핀, 베트남, 인도 세 국가가 도출되었다. 이들 국가들은 최근 미국이 중국 주도의 경제협정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구성한 소속 국가이기도 하다. 따라서 각 국가들의 지식재산 제도의 수립 역사와 함께 지식재산권 제도와 더불어 저작권 제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각 국가들 모두 저작권 침해 시 처벌할 수 있는 처벌 규정과 제도는 일부 갖추어져 있어 콘텐츠 소비가 많은 국가들의 특징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허 전문 법원이 부재하였고 법적 판결을 하는 변호사나 판사 모두 실제 저작권 위반 판례 경험이 부재하다 보니 저작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여도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 등 우리나라와의 저작권 보호 협력 체계 구축이 가능한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합성을 분석하였고, 그중에서도 현재 여러 국가들과 가장 활발한 협력을 하면서 국민 간에도 취업, 교육, 문화 면에서 활발한 이동을 보이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 사회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와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베트남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형 선진 저작권 분석시스템 수출 모델’을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프로젝트성 사업으로 준비하여 기술 전파를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고, 해당 사업의 추진 방안과 주요 내용을 제시하였다.

저작권 분야는 디지털 시대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경쟁원천으로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업 추진과 함께, 각 국가에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인식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저작권 관련 산업 생태계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제도 표준화 및 저작권 보호 기술 이전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K-콘텐츠가 세계화 속에 우수한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나-1. (있다고 답한 경우) 그 건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5건
- ② 5-10건
- ③ 11-20건
- ④ 21-50건
- ⑤ 50건 이상

나-2. (있다고 답한 경우) 저작권 침해상당 혹은 대응을 하신 경우 장르/분야는 무엇입니까?

장르	음악	영화	방송	웹툰·웹소설	출판	게임	SW	캐릭터	기타
건수									

다. K-콘텐츠를 무료(불법)로 이용할 수 있는 현지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5개 이상)
- ② 보통이다(1~4개)
- ③ 아니다

라. 현지인들이 이용 가능한 합법적인 K-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이 있습니까? (O 표시)

장르	음악	영화	방송	웹툰·웹소설	출판	게임	SW	캐릭터	기타
있다									
없다									

마. 현지에서 K-콘텐츠의 침해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
- ② 합법적인 K-콘텐츠 이용 플랫폼의 부족
- ③ 콘텐츠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
- ④ 현지 저작권 보호 법제 및 집행 미흡
- ⑤ 기타 :

3. 현지에서 필요한 저작권 보호 사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가능 분야

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수행하는 아래의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사업명	그렇다	아니다
저작권 해외사무소 운영(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 중국사무소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		
해외사이트 내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		
저작권 보호 법률 상담 및 컨설팅 제공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한 침해 예방 및 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 지원(소송, 컨설팅, 법률검토, 모니터링·조사 등)		
해외 현지에서의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 캠페인		
현지인 대상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		

나. 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지원이나 협력이 가장 필요한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①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및 삭제
- ② 저작권 침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컨설팅
- ③ 저작권 인식 제고 교육 및 홍보
- ④ 소송 등 분쟁 해결을 위한 비용 지원
- ⑤ 현지 저작권 관련 정보 제공 및 네트워크 지원
- ⑥ 현지 국가기관과의 저작권 침해단속 협조
- ⑦ 기타 :

다. 귀 기관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해외사무소 포함)과의 연계 및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사업이나 행사가 있으시면 아래에 기재 부탁드립니다.

* 행사(사업)명, 대상, 목적, 내용, 시행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베트남



- 국명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 수도 : 하노이
- 인구 : 약 9,621만 명 (2019년 공식 집계)
- 언어 : 베트남어(공용어)

(1) 베트남의 저작권 관련 제도와 법률

베트남은 독립 이후 「국립발명국(National Office of Inventions)」이라는 특허청을 설립하였고, 1993년 특허청은 「국립산업 재산권청(NOIP: National Office of Industrial Property)」으로 개명하여 지식재산권에 관한 제도를 담당하였다. 베트남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준비를 위해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2005년 지식재산권법을 처음 도입하였다. 2006년에는 월남과 북베트남 각각의 국가에서 다르게 시행하던 법을 통일하기 위해 새로운 베트남 지식재산권법(IP Law)을 시행하였다. 베트남의 지식재산권법은 2005년 도입되어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2009년,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하였다. 이 개정법은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기존의 모든 법 조항 및 시행규칙(provisions and regulations)을 새롭게 통일하고 정비한 것이다.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은 2005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Law on Unfair Competition)과 연계하여 정립되었으며 크게 지식재산권 일반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여 근간이 되는 지재권법과 하위 시행령, 결정문, 시행규칙 그리고 기타 일반적인 규칙들을 해석하는 하위 법률문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베트남 저작권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법 (2005 제정, 2019 개정) ● 민법 제6부 지식재산권과 기술이전법 ● 관세법 ● 출판법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행정 위반 ● 처리령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관리 및 이행 강화령 (2008)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보호 강화령 (2007)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2005년 지식재산권법 및 2009년 지식재산권법 일부개정법의 일부 세부규정 및 시행방안에 관한 의정 ● 저작권 및 관련권리, 문화·체육·관광 및 광고 분야에 관한 행정위반 처벌 규정의 개정의정
---	---

〈국제 기구 및 조약〉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기구 및 조약은 다음과 같다.

- 파리 조약(Paris Convention)
- 특허협력조약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 국제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2) 베트남의 저작권 관련 기관 및 침해 대응

현재 베트남의 지식재산권은 저작권(Copyright), 특허권(Invention), 실용신안 (Utility Solution), 디자인(Industrial Design), 상표권(Trademark)이 있다.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술이전법(1988), 산업재산권 보호법(1989), 저작권 보호법(1994)을 제정하였고, 1995년 민법에서 저작권과 산업재산권(특허 및 상표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2006년 7월 1일자로 새로운 베트남 지식재산권 법(IP Law)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 법률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반적인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세부 규정이 미비하여 무단 복제 등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베트남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권물은 타 관할의 법에서 보호받는 저작물과 유사하며, 문학/과학/음악/영화/컴퓨터 프로그램 그리고 데이터를 포함한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권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 불확정 기한 보호를 받으나 저작인격권 중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 및 저작재산권 중 미술저작물은 첫 공표일로부터 75년간 보호받으며, 고정 형태로 제작된 날 (“해당일”)로부터 25년 내에 공표되지 않으면 해당일로부터 100년간 보호받는다.

저작권은 제작 시점에 자동적으로 권리를 부여 받으나 등기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작권 사무소에서 등기 절차를 밟아 베트남 내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서를 갖출 수 있다.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담당기구는 베트남 지식재산청(NOIP : National Office of Intellectual Property)과 저작권청(Copyright Office of Vietnam)으로 하노이에 소재한다.

베트남 지식재산권청은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기관으로 상표, 산업디자인, 특허 등 산업재산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베트남 저작권청은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 등록증명서의 변경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베트남의 저작권은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의해 창작 혹은 보유되고 있는 저작물을 가리키며 출판저작물,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 등이 포함된다. 베트남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저작물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 ‘베른 협약’ 가입국으로 저작물은 별도 등록절차 없이 생성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단, 실무적으로 향후 분쟁에 대비해 베트남 저작권청(COV; Copyright Office of Vietnam)에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

베트남의 경우 침해대응 방안으로 행정단속, 민사/형사 대응 등이 있다. 지식재산권법에 따르면 베트남 내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관할권을 갖는 집행기관은 법원, 조사단, 시장관리총국, 세관, 경찰, 인민위원회 등이 있다¹⁸⁸⁾.

지식재산권 침해 관할권을 갖는 집행기관

기관	개요
시장관리총국 (Market management Bureau: MMB)	산업무역부 산하로 베트남 시장에서 유통되는 불법적 상품에 대해 단속
경제경찰 (Economic Police: EP)	시장관리국과 더불어 시장에 유통되는 불법적 상품을 단속. 주로 형사기소가 가능한 대규모 침해, 조직적인 침해자, 건강 및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침해(제약, 식품 등)건에 주력
지재권 조사단 (IP Inspectorates)	지재권 침해 관련 생산 및 거래에 대한 단속
인민위원회 (People's Committees)	지역, 시, 지방에 위치하며 보통 지재권 침해 상품의 생산 및 거래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
세관(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of Vietnam)	재무부 산하로 베트남 수출입 활동에 대한 관할권 보유. 국경에서의 침해품 수출입에 대한 행정처벌 권한 보유

출처 :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호치민무역관 자료

베트남은 저작권 침해여부가 확인되면 해당 자료를 토대로 각 홈페이지, 플랫폼에 해당 게시글에 대한 게시 중단을 신청할 수 있다.

플랫폼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tiki.vn/ - 별도 지식재산권 정책을 갖고 있음. - 저작권, 저작인접권, 상표권, 산업디자인권, 특허권을

188) https://dream.kotra.or.kr/dream/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2430&pNttSn=187832

	<p>포함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부정경쟁 등에 대한 티키 및 판매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정책 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티키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소유권자에 의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처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충분한 증거 확보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www.lazada.vn/ - 별도 지식재산권 정책을 갖고 있음. - 운영규정에 따라 위조품, 유사품, 밀수품,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보유한 고소장이 접수되면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를 웹사이트에서 삭제할 의무가 있음. - 이메일(trust@lazada.com) 혹은 알리바바 그룹 플랫폼인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IPP 플랫폼)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음.

나. 필리핀



- 국명 : 필리핀 공화국
- 수도 : 메트로마닐라
- 인구 : 약 1억 700만 명 (2018년 공식 집계)
- 언어 : 영어 및 타갈로그어(Tagalog)

(1) 필리핀의 저작권 관련 제도와 법률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 역사에 의해 필리핀 지식재산권법은 미국 저작권법과 베른협약의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필리핀의 저작권에 대한 법률은 1997년 제정된 ‘지식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Code)에 포함되어 있다. 1998년에 필리핀 지식재산법을 발표해 특허, 상표 및 기술 이전국을 지식재산청(특허청)으로 일원화하여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법으로는 1997년 원주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원주민 권리법(Indigenous Peoples Rights Act), 2000년 전자상거래법, 2004년에는 광매체법(Optical Media Act)이 제정되었다.

〈필리핀 저작권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지식재산권법 (2013) ● 국립문화유산법 (2009) ● 기술이전법 (2009) ● 광매체법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다양성보호법 (2002) ● 필리핀관세법(2001) ● 전자상거래법(2000) ● 출판산업진흥법(1995) ● 저작권등록 및 사본공탁에 관한 규정(2013)
---	---

필리핀 저작권 제도는 미국 저작권법과 베른협약을 근간으로 하며,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함께 지식재산권법 안에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함께 규정되어 있다. 필리핀은 베른협약 가입국이므로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지만, 현지에서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작권 등록을 해 두는 것이 유리하며, 저작권 등록은 필리핀 국립도서관 또는 지식재산권청에 가능하다.

-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제네바 음반협약)
- WIPO 저작권 조약(WCT)
-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WPPT)
-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타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 특허협력조약

이와 더불어 필리핀에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광매체법’(Optical Media Act, RA 9239)이 별도로 존재하며 이 법은 음악,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비디오게임 등의 저작권을 보호한다.

저작권 업무규칙은 ‘공연권 관련 분쟁해결에 대한 개정 규칙’, ‘재판매권에 대한 신설 규칙’,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처리관련 신설 규칙’, ‘저작권 등록에 관한 개정 규칙’, ‘집중관리단체 인가에 대한 개정 규칙’ 등 5건의 규칙이다.

(2) 필리핀의 저작권 관련 기관 및 침해 대응

필리핀은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지식재산권청, 법무부 등 지식재산과 관련한 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국가 지식재산권 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약칭 “NCIPR”)를 운영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위원회는 통상산업부가 의장을, 지식재산권청이 부의장을 맡고 있다.

지식재산 관련 기관	온라인 사이트
국가 지식재산권 위원회 (NCIPR, Nation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ttps://www.ipophil.gov.ph/national-committee-on-intellectual-property-rights-ncipr
필리핀 법무부 (DOJ, Department of Justice)	http://www.doj.gov.ph
필리핀 국가조사국 (NBI,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http://nbi.gov.ph
필리핀 관세국 (BOC, Bureau of Customs)	http://customs.gov.ph
필리핀 필리핀 국가경찰 (PNP, Philippine National Police)	http://pnp.gov.ph
필리핀 광학 미디어 위원회 (Optical Media Board)	http://www.omb.gov.ph
필리핀 통신위원회 (National Telecommunication Commission)	https://ntc.gov.ph
필리핀 국가 도서진흥 위원회 (National Book Development Board)	http://bookphilippines.gov.ph
필리핀 식품의약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https://www.fda.gov.ph
필리핀 내무 지방자치부 (Department of the Interior and Local Government)	http://www.dilg.gov.ph
필리핀 국제 범죄 특사 (Office of the Special Envoy on	https://osetc.gov.ph

지식재산 관련 기관	온라인 사이트
Transnational Crime)	
필리핀 통상산업부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http://www.dti.gov.ph
필리핀 지식재산권청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Philippines)	http://www.ipophil.gov.ph

필리핀에서는 저작권 침해 시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민사 또는 형사)을 제기하거나 지식재산청 법무국(BLA)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나 법무국에 다음과 같이 요청할 수 있다. 필리핀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정적 초치는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이 주관하고 있으며 상표, 저작물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행정처분, 고소, 고발 등을 담당한다. 피해 신고에 대한 수사로는 NBI 지식범죄수사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대응과 수색영장으로 수색하는 역할을 한다.

- (행정적 조치)
 1. 주무기관 : IPOPHIL(필리핀 지식재산청) 법무국(BLA)
 2. 법률근거 : 필리핀 지식재산법(RA8293) 및 수정법(RA10372)
 3. 조치사항 : 처분금지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잠정적 금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 (사법적 조치)
 1. 주무기관 : 소재지 지방법원(Regional Trial Court)
 2. 법률근거 : 필리핀 공화국법(RA7691) 지방법원 관할 소송
 3. 조치사항 : 민/형사 사건 심리 및 판결
- (피해 신고(형사) 기관) : 필리핀 국가 수사국(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담당 부서 : 지식재산권부(Intellectual Property Right Division)
- (불법 복제 및 판매 신고 기관) : 광매체위원회(Optical Media Board)
담당 부서 : 사이버범죄팀(Enforcement and Investigation Division)

다. 인도



- 국명 : 인도 공화국
- 수도 : 뉴델리(New Delhi)
- 인구 : 약 14억 5백만 명 (2022년 공식 집계)
- 언어 : 힌디어(헌법에서 인정하는 공용어는 힌디어를 포함하여 총 22개)
영어는 공용어가 아니지만 의회, 행정부, 사법부 및 사회 각 분야에서 넓게 통용

(1) 인도의 저작권 관련 제도와 법률

인도는 2016년 ‘국가지식재산권 정책’(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licy 2016)을 통해 본격적으로 지식재산권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 정책은 지식재산권 인식확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및 침해 대응을 위한 집행 및 사법제도 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 저작권 관련 법령〉

● 저작권법 (1957)	● 경쟁법(2002)
● 특허법 (1970)	● 정보통신법 (2000)
● 디자인법 (2000)	● 상품의 지리적 표시(등록 및 보호)법(1999)
● 상표법 (1999)	● 반도체회로배치법 (2000)

인도에서의 저작권은 1957년 인도 저작권법(The Copyright Act, 1957, Act. No. 14 of 1957)에 따라 보호된다. 1999년, 2002년, 2012년 각 개정을 거쳤으며, 이 중 2012년 개정을 통해 기술과 인터넷 발달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고 국제조약에 준하는 정도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¹⁸⁹⁾

한편, 인도가 가입한 국제기구 및 조약은 다음과 같다(인도의 저작물을 외국의 국

189) 한국저작권보호원, 주요 저작권 침해국 대상 저작권 보호방안 연구 인도편.

가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인도는 상표, 저작권, 관련 권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국제 협약의 회원국이 되었다).

- 베른 협약(Berne Convention) : 1928년 4월 가입
- 세계 저작권 협약 : 1957년 가입
- TRIPs(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조약) : 1995년 가입
-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 1998년 12월 가입
- PCT 특허협력조약 1970(Patent Cooperation Treaty 1970)
: 1998년 12월 가입
-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 1988년 1월 가입
- 부다페스트 조약(Budapest Treaty) : 2001년 12월 가입

(2) 인도의 저작권 관련 기관 및 침해 대응

인도의 지식재산권 정책 이행은 인도 산업정책진흥국(상공부 산하)이 특허청(The Office of the Controller General of Patents, Designs & Trade Marks: CGPDTM) 및 지식재산권 진흥 관리셀(Cell for IPR Promotion and Management: CIPAM)을 통해 집행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과 관련한 행정 집행 중앙부서로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책 및 이행 제도 구축에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 지식재산권 진흥관리 셀(CIPAM)은 지식재산권 인식, 상업화 및 정책 집행을 촉진하며 지재권 관련 부처 협력을 담당한다. 인도는 다음과 같은 개별 법령을 통하여 다양한 지식재산을 권리로서 법적 보호하고 있으며, 주요 보호 대상 지식재산은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물, 지리적표시 등으로 분류된다.¹⁹⁰⁾

- 상표법(The Trade Marks Act, 1999)
- 저작권법(The Copyright Act, 1957)
- 특허법(The Patent Act, 1970)
- 디자인법(The Designs Act, 2000)
- 상품지리적표시등록보호법(The Geographical Indications of Goods (Registration and Protection Act, 1999)
- 반도체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법, 2000(The Semiconductor Integrated

190) <https://welcon.kocca.kr/ko/info/market/india?subTabNo=tab8>.

Circuits Layout Designs Act, 2000)

- 식물, 품종 및 농민 권리 보호법(The Protection of Plants and Varieties and Farmers Rights Act, 2001)
- 생물 다양성 법(The Biological Diversity Act, 2002)

인도의 지식재산권은 산업정책진흥국(Department for Promoti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 DPIIT)이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의 전반 업무를 담당한다.

- 특허(및 디자인, 상표 관리)청(The Office of the Controller General of Patents, Designs & Trade Marks, 이하 'CGPDTM')은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과 관련한 행정 집행 중앙부서로서,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및 이행에 관한 역할 등을 수행한다.
- 지식재산권 진흥관리 셀(CELL FOR IPR PROMOTION & MANAGEMENT: CIPAM)은 지식재산권 관련 전반에 걸쳐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정책 이행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정책 및 관련 부처 협력을 담당한다.

인도의 경우 침해대응 방안으로 행정단속, 민사/형사 대응 등이 있다. 지식재산권 법에 따르면 베트남 내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관할권을 갖는 집행기관은 법원, 조사단, 시장관리총국, 세관, 경찰, 인민위원회 등이 있다.¹⁹¹⁾

인도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 형사, 국경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응할 행정적 구제수단이 없으며, 저작권 침해를 다루는 전문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 지식재산권심판원 (IPAB)은 특허법에 따른 청문, 등록관 결정에 대한 불복, 특허청장에 대한 불복, 상품의 지리적표시법에 따른 불복 등 지식재산권 전반 문제를 담당하기 위하여 2003년 인도 정부에 의해 설립된 전문법률기구로서,

191) https://dream.kotra.or.kr/dream/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2430&pNttSn=187832

고등법원 단계 이전에 특허, 상표, 지리적 표시 등에 관한 불복 및 정정에 대한 처분을 제공한다.

- 간접세 및 관세 중앙위원회(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 Customs, CBIC)는 한국의 관세청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산하의 기관으로 관세뿐만 아니라 모든 간접세를 담당하며, 세관(Customs)은 CBIC의 하부 기관으로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행정 조치 권한을 가지고 있다.
- 경제범죄 수사과(Economic Offence Wing, EOW)는 위조, 불법복제 및 사이버 범죄와 같은 지식재산권의 특정 영역과 범죄를 담당한다. 경찰에서 저작권 또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할 경우, 수사관은 상표권 침해 물품, 허위 거래 표시(False Trade Description), 모조품, 의류, 가방, 시계, 전자제품, 영화 관련 침해 물품 등 일체를 관할 구역 내에서 압수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학술지 등

김상태·윤지용·김영곤,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가 선정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정부학연구 제 19권 제1호, 2013

김애리·이현희, “APEC에서의 한국의 주요활동과 지식재산 이슈제기의 필요성”, IP Focus 제2021-23호, 2021,

김정곤·이정미·윤지현, 「인도 한류 분석과 문화협력 확대방안: 음악 및 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KIE P대의경제정책연구원, 2020. 12.

김형지·김애리, “프랑스 파리 법원의 전자도서 플랫폼 Z-Library에 대한 차단 명령 등 저작권 침해 대응 동향”,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한국저작권보호원, 2022. 11. 30.

김형지·박운정, “미국의 전자도서 플랫폼 Z-Library에 대한 저작권 침해 대응 동향”,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한국저작권보호원, 2023. 1. 31.

문병호·최재식, 「APEC 회원들의 허가특허연계 제도 도입·운영 현황」,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2. 06.

문화체육관광부, “K-콘텐츠 불법유통멈춰! 정부부처 똘똘 뭉친다”, 2023. 3. 28. 보도자료

박경신, “[네덜란드] 법원, 팬이 허락 없이 TV 프로그램과 영화 자막을 만드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이다”, 저작권 동향 2017년 제8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 5. 19.

산업통상자원부, “코로나19 백신 등 지재권 유예 관련 민관 간담회 개최”, 2021. 5. 25.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12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5년만에 개최”, 2022. 6. 13.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12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MC-12) 폐막”, 2022. 6. 17. 보도자료

서새남, “[중국]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 ‘2021년 중국 저작권 10대 사건’ 발표”, 저작권 동향 제4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3. 18.

전국경제인연합회, “국민 과반(58.2%) 한류 열풍, 20여년 간 40배 이상 커졌다 인식”, 2023. 4. 17. 보도자료

전경련, “한류 확산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2023. 4. 17. 보도자료

특허청,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력 강화로 한국 출원인 편의 향상 기대”, 2023. 7. 6. 보도자료

특허청, “APEC에 지식재산(IP) 정책을 수출한다”, 2017. 2. 20. 보도자료

특허청, “한-사우디, 지식재산협력 동반 관계(partnership) 협정 체결”, 2022. 1. 9. 보도자료

최진원, “일본의 해외저작권 보호 정책”, 가천법학 제3권 제1호,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최푸름, “영국 지식재산청, 2022-2027의 새로운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전략을 발표”, 저작권 동향 2022 제6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4. 27.

KOTRA, [기고] 필리핀 전자상거래 내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2022. 11,

KOICA, “KOICA 민관협력사업 제안서 작성 및 사례 발표자료”, 2005.

- 공공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해외 저작권보호 기관현황 및 공동대응체계구축 연구」, 2014. 8.

지식재산위원회·경상국립대학교, 「지식재산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2023.

한국국제문화교류원, 「2023 해외한류실태조사 요약편」, 2023. 03.

한국저작권보호원, 「2022 저작권 보호 이슈 전망 보고서」, 2022. 1.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 효율화를 위한 방안 연구」, 2022. 12.

한국저작권보호원, 2022 하반기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Vol.38, 2023. 2.

한국저작권보호원, 「인도 법원의 최근 온라인 저작권 침해 관련 판례 동향」,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2023. 7. 21.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센터뉴스, 마닐라사무소, 제2020-079호.

한국저작권위원회, 「미국 저작권청 인공지능 창작물 관련 저작권 등록 안내서 검토보고서」, 2023-02 저작권 산업 현황 보고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위조상품 역제를 위한 정책방안을 중심으로 -, 2006. 11.

컴퓨터프로그램조정위원회, 「IT지재권 연주자료집」, 조2006. 12.

2020 KCA Media Issue & Trend, 트렌드 리포트, 동남아시아의 콘텐츠 불법 유통 현황과 규제 2월호.

KOTRA, 「2022 IP-DESK 백서」, 2023. 09.

KOTRA, 「2021 IP-DESK 백서」, 2022. 07.

특허청·Kotra, 「인도 지식재산권 침해 가이드」, Kotra 자료 22-076, 2022.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한국수출입은행·KOTRA, 2022 Knowledge Sharing Program 연차보고서.

〈국외 문헌〉

- 공공보고서

EUIPO,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in the European Union: Films, Music, Publications, Software and TV (2017-2022), 2023. 9.

European Commission, Report on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ird countries, 2023. 5. 17.

EUIPO, Annual Report 2017.

International IP Index (11th ed.), 2023, U.S. Chamber of Commerce 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

해외 저작권 보호 협력 및 글로벌 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주관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

수행기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발행일 2024. 3

발행인 박정렬(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발행처 한국저작권보호원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1602), 4, 9, 10층
TEL : 1588 - 0190
FAX : (02) 3153 - 2719



본 연구보고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결과물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